

새로운 經濟秩序와 生産性 向上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지난 30여년 동안 눈부신 成長을 거듭하며 刮目할 成果를 거둬온 우리 經濟는 21世紀를 눈 앞에 둔 지금 重大한 轉換期에 처해 있다. 對內外 經濟環境의 급격한 변화는 國家經營의 새로운 優先順位와 새로운 經濟發展 戰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持續的인 發展을 이루면서 국가간의 치열한 競爭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韓國經濟를 이끌어 왔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經濟秩序를 創出해야만 한다. 새로운 經濟秩序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민주적인 합의 과정의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共同體의 利益과 福祉增進을 위해 민주적인 정부나 단체가 市場機能을 補完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經濟體制, 즉 '共同體의 市場經濟'라고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本 報告書는 이러한 개념을 보다 具體化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經濟秩序 摸索의 背景, 政府의 役割과 機能, 새로운 企業像의 定立, 金融機關과 企業과의 關係, 分配正義와 協調的 勞使關係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즉, 정부가 효율적인 指導力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經濟政策이 立案, 協議, 決定되는 過程에서 민간기업 및 관련 이해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收斂되어야 하며, 기업은 社會的 責任을 가진 主體로 인식될 수 있도록 自己革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동안의 成長中心 政策으로 疎外되어온 근로자의 위치를 再點檢하여 分配的 正義를 확립하고 韓國的 勞使關係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의 논의들은 각각의 주제들에 대하여 細細하게 논의했다기보

다는 21世紀를 준비해야 할 韓國經濟를 全體적으로 眺望하고 있다. 이러한 主題들에 대하여 앞으로도 繼續的인 論議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論議를 바탕으로 하여 「共同體的 市場經濟」의 구체적인 모습을 조금씩 具現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本 研究는 韓國租稅研究院의 연구용역 의뢰로 中央日報社의 張鉉俊 部長에 의해 執筆되었다. 言論界 一線에서 바쁘게 활동하면서도 研究에 參與해 준 데 대하여 感謝드린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著者 개인의 意見을 반영한 것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10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宗淇

目 次

序論：問題認識과 分析視角

- 第1節 새로운 經濟秩序 摸索의 問題意識 5
- 第2節 報告書의 構成과 內容 15

第1章 새로운 經濟秩序의 摸索

- 第1節 序 論 17
- 第2節 對內外的 狀況變化와 새로운 經濟秩序의 必要性 19
- 第3節 새로운 經濟秩序의 哲學 21
- 第4節 要約과 結論 28

第2章 政府의 役割과 產業 發展戰略의 方向

- 第1節 政府의 役割과 機能 30
- 第2節 發展戰略과 政府 32
- 第3節 政府規制의 緩和 36

第3章 새로운 企業像의 定立을 위한 考察

- 第1節 序 論 43
- 第2節 現代社會에 있어 企業은 무엇인가? 47
- 第3節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관한 論議 55
- 第4節 日本式 企業主義의 構造 69

第4章 金融機關과 企業과의 關係：所有構造를 中心으로

第1節	序 論	95
第2節	歷史的 眺望	98
第3節	金融改革의 巨視經濟的 背景	105
第4節	外國의 金融機關과 企業間의 關係	109
第5節	金融機關과 企業間 關係의 바람직한 方向	128
第6節	要 約	140

第5章 協力的 市場秩序를 위한 勞使關係

第1節	序 論	143
第2節	分配正義에 관한 論議	144
第3節	勞動市場의 構造變化	150
第4節	勞使關係에 대한 새로운 接近視角	159
第5節	韓國的 勞使關係模型의 模索	163

第6章 要約과 結論

參考文獻	191
------	-----

〈附錄 1〉 不健全債權 管理에 대하여	195
----------------------	-----

〈附錄 2〉 戰後 日本의 財閥解體와 金融機關	199
--------------------------	-----

表 目 次

〈表 4-1〉	6大 企業集團이 日本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	117
〈表 4-2〉	日本の 法人에 대한 株式所有 規制 現況	119
〈表 4-3〉	6大 企業集團 全體의 株式 相互保有 關聯統計	122
〈表 4-4〉	6大 企業集團의 企業集團別 相互株式所有 比率	122
〈表 4-5〉	日本の 株式所有 構造 推移	122
〈表 4-6〉	金融機關의 株式所有 比率 推移	123
〈表 4-7〉	20大 株主의 株式所有 分布	124
〈表 4-8〉	6大 企業集團所屬 銀行들의 融資 1位 企業에 대한 株式保有 現況	125
〈表 4-9〉	美國의 株式과 負債의 所有構造	127
〈表 4-10〉	5個 市中銀行의 年度別 株式保有 現況	129
〈表 4-11〉	市中銀行 不實債權 規模 推移	133
〈附表 1〉	日本の 所有者別 株式分布狀況	203
〈附表 2〉	日本の 所有株式數別 株式分布 狀況	204
〈附表 3〉	日本 200大 企業 10大 株主 持分率別 分布狀況	205
〈附表 4〉	日本 200大 企業 10大 株主 分布狀況	205
〈附表 5〉	日本 200大 企業의 第1位 株主 分布狀況	206
〈附表 6〉	日本 200大 企業의 最大株主 持分率別 分布狀況	207
〈附表 7〉	日本 200大 企業의 最大株主 主體別 分布推移	208
〈附表 8〉	日本 200大 企業 所有主體와 經營者 出身 構成 (1976年)	210

序論：問題認識과 分析視角

第 1 節 새로운 經濟秩序 摸索의 問題意識

2000년대 우리의 국가목표는 先進經濟를 달성하고 民族統一을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통념적으로 이해했던 量的 成長 외에도 선진적 經濟秩序의 構築이라는 質的 發展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형태로 統一이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의 經濟力이 지금보다 훨씬 확충되지 못한다면 統一의 효과는 극대화되지 못할 것이다.

최근의 韓國經濟는 構造的 轉換期라고 통칭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난 30여 년간 韓國經濟를 이끌어왔던 기본 패러다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反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國內적으로는 그 동안의 政治的 民主化로 형평과 의사결정 참여 및 배분에의 요구는 증대했으나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集團利己主義의 表出로 市場經濟의 효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¹⁾.

成長潛在力의 위축은 단기적인 景氣沈滯 외에도 장기적인 成長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構造調整이 늦어지고 政府와 企業間의 새로운 協力關係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낡은 經濟秩序가 정부주도의 권위주의적이고 자의적인 개입에 의해 가능했다면, 새로운 市場의 힘과 새로운 秩序는 정착되지 못하고 기존의 이득을 보호하려는 싸움

1) 集團利己主義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영역은 勞使間의 협상분야일 것이다. 勞使協商이 자신만의 이익을 앞세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勤勞者들의 勞動意慾은 저하되고 自發的인 參與의 誘導는 불가능하다.

이 과장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經濟秩序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反省하는 토대 위에서만 구축될 수 있다. 우리 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高費用-低收益構造이며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결코 國際競爭力을 갖출 수 없다는 철저한 自己反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外樣的으로는 國際競爭力을 強化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생산방식도 합리화해서 技術開發을 통해 高附加價值商品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호들이 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政府는 구태의연한 지원책과 企業에 대한 각종 권한을 놓지 않으면서 여전히 政府主導로 경쟁력이 배양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주요 輸出商品의 핵심부품을 아직도 日本 등 선진국에서 모두 들여와 기본적으로 組立産業의 단계를 벗어나자면 企業人은 기업마인드를, 政府는 서비스마인드를, 國民은 合理的인 경제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아직도 量的인 외연적 확대만이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의 設備投資가 되지 않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合理的인 投資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市場秩序의 확립이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처한 現實을 제대로 反省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經濟秩序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國際化經濟에서 生存할 수 있는 강건한 經濟體質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國際化는 외부의 상황에 우리가 적응한다는 消極的인 次元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필요해서 우리 모습을 가다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積極的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國際化 추세는 그 동안 경제발전의 주된 動力이었던 輸出主導戰略을 다른 차원에서 제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輸出市

場과 內需市場의 구별이 사실상 없어지고 國內企業들은 차원이 다른 外國 先進企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 政府와 企業간의 관계 변화로 더이상 恣意的으로 國內企業을 보호하는 장치는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地球村經濟의 도래는 앞으로의 韓國經濟를 이끌어 갈 企業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새로이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經濟의 기본 패러다임이 이슈가 되는 것은 그것이 經濟成長의 기본전략을 관철하는 國家發展의 基本目標에서부터 政府와 民間部門과의 관계설정을 포함하는 經濟秩序의 再確立 및 기업내부의 所有와 經營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까지의 不均衡 成長이 가져온 부작용을 경제체제 내부로 편입시켜 內部的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經濟主體들의 참여의욕을 다시 한번 재유도하는 길이 競爭力 強化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經濟力 集中緩和이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만 보면 分配的 正義에 편중되는 영역이 포함되고 단순히 產業經濟的 側面에서의 市場競爭原理의 강화를 넘어서 所有의 集中이 야기하는 諸側面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

지난 5共和國과 6共和國의 經濟開發戰略은 3共和國과 4共和國에서의 전략의 이상, 즉 목표를 강력한 政府에 의한 市場介入에서부터 民間部門의 자율화 및 사회불균형의 시정이라고 내걸었던 것은 타당했으나 經濟秩序의 정립에 실패했기 때문에 經濟運營 方向에서 혼선이 왔고 政策의 일관성 결여로 國民의 不信이 가중되어 戰略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도 잘못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 이제까지 政府나 企業이 이 문제에 접근해 왔던 基本姿勢는 지난 30여년간 우리 經濟를 이끌어온 기본 패러다임을 穩存시킨 채 주어진 테두리 내에서 改善策을 찾아보려는 상당히 消極的이고 受動的인 자세

2) 趙淳, 「韓國經濟의 發展戰略: 過去와 未來」, 계간 『思想』, 社會科學院, 1992년 봄.

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즉 이제까지 政府가 크고 작은 모든 經濟的 意思決定에 개입하고 지시함으로써 自由市場經濟 자체를 定着시키기보다는 資源의 動員과 配分을 장악하는 형태는 止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의 經濟運營에 관한 基本哲學을 새로이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自由主義 市場經濟運營에 관한 理念的 基礎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市場經濟를 제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政府의 고유한 영역을 완전 도외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市場에 참여하는 모든 經濟主體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철저한 책임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政府가 市場에 깊숙히 개입하면서 實物資源을 비롯한 金融資源의 배분에 관한 결정권과 각종 사업의 認許可權을 쥐고 이른바 不均衡 成長戰略을 추구해 온 배경에는 기능할 만한 市場이 육성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離陸할 단계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했던 이 같은 經濟運營 方向은 충분히 市場이 기능할만큼 발전해 온 이후에도 여전히 뿌리깊게 우리 經濟를 지배해 왔고 이제는 政府 스스로도 자인할만큼 民間部門에 비해 生産性이 너무 뒤떨어지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經濟去來가 市場의 自律調整이라는 틀 속에서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이면에는 競爭과 利害를 조정하기 위한 더 좋은 기구를 人爲的으로 만들 수 없다는 資本主義 發展歷史에 기초한 반성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보편적인 타당성이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각 社會의 時代的인 혹은 空間的인 制約要件 때문에 구체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보면 自由主義 市場經濟의 기본 틀이 얼마나 견고하고 제대로 정립되어 있느냐가 長期的인 經濟發展의 관건이 된다.

우리의 경우 政府의 市場介入은 단순히 經濟原則에 의해서만 행해

져 온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軍事獨裁에 의한 經濟開發形式을 갖추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經濟論理는 항상 政治論理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특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 같은 歷史的 기초는 軍事獨裁가 청산되고 民主的인 政治構圖가 정착되어 가면서도 여전히 政治圈과 政府 內에 완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동시에 獨裁의 清算을 목격해 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民主的인 분위기가 곧 자신이 속한 小集團의 利益만을 고집해도 괜찮은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즉 民主的인 政治論理와 市場經濟論理의 적절한 調和보다는 둘을 혼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自由主義 市場經濟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은 國內外的 競爭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제기되는 國際競爭力의 強化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國際競爭力의 強化는 政府가 다시 한번 經濟運營의 전면에 나서서 인위적으로 民間企業에 대한 政策支援과 規制 및 交通整理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經濟 패러다임은 이 같은 普遍妥當性을 지닌 自由主義 市場原理를 어떻게 우리 文化的인 토양이라는 구체적인 現實에 자리를 잡게 하느냐이다. 흔히 市場의 失敗가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논리적 기초가 되어 왔으며 특히 형평의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는 公正한 競爭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정부역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 市場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이 資本主義經濟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資本主義經濟의 기초인 市場을 유지·발전시키려면 체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倫理的 基盤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불행히도 우리 歷史는 시장구성원들 간에 이 같은 倫理的 기초를 축적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해왔다. 물론 이 점에서 民主主義의 持續的인 發展은 꼭 필요한 과정인데 문제는 過渡期的으로 나타나는 利害集團의 이해조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대체적으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國民들이 經濟的 成就가 있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成長을 가져오는 데 동참했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社會를 구성하고 있는 國民들이 이 같은 開發獨裁式的 政府主導 經濟運用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 테두리 안에서 급속한 階層上昇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機會의 公平성 차원에서는 상당한 해결과제가 남아있지만 中産層이라는 중간개념으로 보면 이 같은 평가가 지나친 것은 아니다.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社會文化的인 特性인 것이다. 이 점은 지난 백여 년간의 韓國歷史를 통해서도 조명될 수 있다.

즉, 朝鮮朝 末期의 儒敎的 身分社會는 자생적으로 변화해 나옴대로 近代國家로 발전하지 못한 채 外勢의 침략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았다. 朝鮮朝의 崩壞는 社會의 身分秩序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자체를 根本的으로 흔들어 놓았고 日帝支配와 解放 그리고 分斷과 戰爭 등 혼란스러운 격변기를 통해 傳統的인 社會秩序나 價値觀을 무질서하게 수입된 外來價値, 概念과 혼재하게 만들었다. 특히 軍事政府의 등장과 그 이후 社會 指導階層의 급속한 교체는 많은 國民들의 思考 속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平等意識의 추구하고 신분상승 욕구를 가져왔다.

이 같은 國民의 정서 속에 가라앉아 있는 社會文化的인 特性은 아직도 財閥企業에 대한 國民의 여론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외적으로 높은 平等指向의인 特性은 상황에 따라서는 組織이나 社會發展을 위한 무한정한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狀況에 따라서는 폐쇄적인 小集團中心의 利己主義로 전락하여 機會와 參與에 대한 平等요구보다는 결과나 果實의 分配平等 요구로 시현되고 만다.

다시 말해서 政府가 權力을 일정한 범위 내 확고하게 잡은 테두리 안에서 여러 經濟主體들에게 階層上昇의 기회를 부추기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成就動機에 매달려 몰입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우리 주위에서 殘業이라고 불리던 超過勤勞를 勤勞者들은 長時間 勤勞에 따르는 身體的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所得을 올리기 위해 마다하지 않았고, 家庭도 모르고 人生의 잔재미도 모른 채 오로지 일에 중독되어 뛰어 다니는 모험적인 企業家들을 수도 없이 보아 왔으며 앞으로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政府의 官僚들도 使命感과 일을 만든다는 成就感에도 취되어 무슨 급한 일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다른 나라의 10년이 우리의 1년이 되는 양 夜間勤勞를 다반사로 여겨왔다. 경제기획원 어느 실무관료가 쓴 「과천청사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화제가 된 것도 다 이 같은 社會文化的인 특성을 배경으로 나온 한 단면이다.

國民들의 일반적인 平等意識 성향과 階層上昇이나 生活改善 欲求와 같은 社會文化的인 토양은 美國이나 英國에 비해 社會的 凝集力이 강하고 集團主義的인 문화에 익숙한 獨逸이나 日本과도 매우 다른 것이다. 우리의 경우 결코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래된 儒敎的 傳統과 農耕爲主의 社會價值觀이 여전히 혼재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個人主義的이라고 보이는 우리 社會는 실제의 경우 필요하면 극히 폐쇄적인 小集團 歸屬意識으로 변질되고 만다.

이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라고 한 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美國이나 英國의 경우는 基督教 倫理라는 비교적 同質的인 가치이념에 바탕을 둔 個人主義인 반면 우리의 경우는 자신의 階層上昇을 추구할 경우에는 小集團을 기반으로 하다가도 實利를 취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個人으로 돌아가는 다분히 利己的인 兩面性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1960~70년대의 政府主導下의 權威主義的 經濟運營은 이 같은 社會文化的 특성과 결합하기도 하고 서로 相乘作用을 하면서 제대로 효과를 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비교적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합이 계속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政府와 民間이 서로가

기본전제로 하는 조건들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즉 政府의 主導的인 역할이 民間이 보기에 階層上昇의 요구에 도움이 되어 社會文化的인 특성의 長點이 발휘되어 폭발적인 에너지가 응집되고 成長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 國民들의 입장에서는 階層上昇과 平等要求意識으로 얻을 수 있는 量的인 가치가 質的인 삶의 가치를 훨씬 상회하여야 하며 政府의 생산성과 관리능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이 같은 전제조건들은 內部的인 변화나 外部的인 충격에 의해서 거의 무너지고 말았다. 즉 政府의 주도적인 역할이 이미 民間의 階層上昇要求에 도움이 되는 측면보다 걸림들이 된다는 징후가 나타났고 政府 스스로가 몇 차례의 혼란을 겪으면서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구태의연한 權限만 고집하는 一貫性 없는 모습을 露呈시켰다.

政府뿐만이 아니고 民間主體들도 일단 衣食住의 위협에서 전반적으로 벗어나면서 삶의 質을 요구하게 되고 더이상 量的인 所得만이 質的 행복추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나친 平等意識과 혈연 및 지연 등 小集團 위주의 귀속성향은 다른 小集團에 대해 배타적이고 敵對的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신명나게 맡은 일에 몰두하는 신바람 분위기는 社會總體的인 相互不信과 權力에 대한 信賴性 喪失 및 集團利己主義의 극한적 대립으로 바뀌어 社會的 連帶感은 급속히 소멸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經濟秩序의 모색이라는 우리 몸에 맞으면서도 資本主義의 틀에 맞는 政府의 役割과 機能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市場經濟의 力動性和 效率性は 경제주체의 合理的 利己心과 自由競爭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市場機構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經濟主體들의 이익 추구가 최대한 장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市場經濟의 창달을 위한 政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經濟的 機會

均等과 公正競爭의 보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政府의 經濟運用 方式은 시장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政治的 分권화와 民主化 추세 속에서 民主的인 政治秩序의 확립과 效率的인 경제운용의 조화를 위한 관건은, 共同體를 구성하는 각 利益集團의 私益 追求가 國家 전체의 이익과 어떻게 調和를 이루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多元主義的 經濟운용을 일부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對話와 妥協, 自由主義, 個人主義를 기본원리로 하는 多元主義的 經濟運用은 토론과 타협의 전통이 빈약하고 權威主義的인 우리의 政治·社會·文化的 토양에서 順機能보다는 사회구성원간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의 증폭을 가져와 逆機能이 더욱 부각되었다.

位階秩序와 人和團結을 중시하는 우리의 傳統的 價値觀에 비추어 보면 國家가 권위를 가지고 能動的으로 利益集團의 이해대립을 조정하는 방식의 經濟運用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民主的 正統성을 가진 政府가 강력한 指導力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과거와 같은 강요된 협조와 통제가 아닌 自發的 協助에 의한 經濟運用이어야 한다.

政府가 효율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면서도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政策決定 過程에 있어 公開性과 客觀性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經濟政策이 입안, 협의, 결정되는 과정에서 民間企業 및 相關 利害集團의 의견이 充分히 개진되고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러한 과정이 要式節次로 끝나버릴 우려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대립과 방해로 인해 政策決定이 봉쇄되거나 政策 자체의 效率性이 저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政治社會的 합의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摩擦과 社會的 費用을 극소화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가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利益集團에 의한 영향력 행사가 國民經濟的 차원의 대원칙 아래 적절히 통제되고 이해·절충과정에서 黨派的 또는 政略的 고려

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制度와 慣行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권 정치, 즉 議會와 政黨의 政策機能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人氣主義, 煽動主義에 의한 無責任한 정책 남발은 억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태가 政治的 이득이 아니라 정치적 손실이 되도록 하는 牽制機能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牽制機能은 社會 각분야의 獨立的 專門家集團이 자발적으로 맡아야 할 것이다.

本 報告書에서는 이 같은 現實的 필요성에 기초한 經濟秩序를 “共同體的 市場經濟”라고 부르고자 한다. 共同體的 市場經濟에서는 經濟理念으로서 自由主義的 市場經濟를 발전시키되 우리가 갖고 있는 文化社會的인 제조건과 짧은 歷史 동안 이룩한 量的 成長의 후유증을 치유해 나가는 模型의 開發이 중요해진다. 즉 資本主義 전체의 일반적인 발전추세에 적응해 나가되 우리 나름대로의 구체성을 조화시키는 韓國的 資本主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經濟秩序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經濟秩序를 재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지난 수십 년간의 政府主導 성장전략이 根本的 한계에 부딪혔다면, 政府和 企業間 關係가 합리적으로 再調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상황변화에 맞추어 政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政府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과정은 당연히 새로운 企業像의 정립을 필연적으로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經濟秩序의 중심축으로서 企業은 지금까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우리 社會를 이끌어가는 社會的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自己革新을 꾀해야 한다. 그리고 政府主導 성장하에서 企業 發展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한편, 여러 측면에서 그 부정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 金融部門의 改革을 이룸으로써 企業과 金融間 關係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 중심 전략에서 소외되어온 勤勞者의 위치를 재점검하여 새로운 經濟秩序에 걸맞은 分配的 正義를 확립하고 韓國的 勞使關係의 모형을 개발하여 기업 내부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國際競爭力의 강화라는

지상과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새로운 經濟秩序를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한편, 政府의 役割과 機能, 새로운 企業像의 定立, 企業과 金融間 關係, 새로운 勞使關係의 定着이라는 네 가지 테마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테마들에 대한 고찰은 특정 논의주제에 대한 자세한 分析的 고찰이라기보다는 여러 측면의 연구를 포괄하여 논의하는 綜合的 考察이 될 것이다.

第 2 節 報告書의 構成과 內容

이러한 問題意識을 구체화하기 위해 本 報告書에서는 새로운 經濟秩序의 모색, 政府의 役割과 機能, 새로운 企業像의 定立, 金融機關과 企業과의 關係, 分配定義와 協調的 노사관계라는 다섯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本 報告書의 기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第1章에서는 對內外的 상황변화를 綜合的으로 진단하여 새로운 經濟秩序가 필요하게 된 배경을 살펴 본다. 여기서 새로운 經濟秩序의 구상은 단지 對內外的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社會文化的 측면과 先進國의 經濟運用 경험을 종합함으로써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새로운 經濟秩序 구상의 기저에 깔려야 할 새로운 철학적 비전과 발전전략의 구상이 이루어진다.

第2章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韓國經濟秩序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政府主導 成長戰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經濟秩序의 정립을 위해 핵심적인 과제로서 政府와 企業間 關係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즉 새로운 經濟秩序에 알맞는 政府의 役割과 機能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주도 성장전략의 副産物인 각종 政府規制를 合理的으로 完化하고 再調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산

업 발전전략의 방향과 관련하여 政府의 産業政策의 제반 측면에 대한 검토를 행함으로써 産業政策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제시할 것이다.

第3章에서는 새로운 企業像의 定立을 위해 企業에 있어 所有와 支配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論議들을 정리해 볼 것이다. 여기에서 고찰되는 주제들은 現代社會에서의 企業의 성격, 企業의 사회적 책임, 일본식 企業主義의 구조, 株式會社에 있어 소유와 지배이다. 이러한 論議들은 우선 우리나라 大企業의 所有構造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좀더 넓은 시각에서 企業의 경영방식과 社會的 위치의 再定立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第4章에서는 金融機關과 企業의 새로운 關係 정립이라는 문제를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章에서는 歷史的 조망을 통해 韓國金融이 경제발전에서 수행한 역할을 검토하고 최근의 상황 변화에 따른 金融改革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또 大企業集團과 金融이 현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金融改革에 대한 政府의 입장과 財界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것이며, 先進國에서의 金融機關과 企業間 관계를 분석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도출해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金融機關과 企業의 所有構造 改善을 중심으로 하는 金融機關과 企業間 關係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한다.

第5章의 주제는 바람직한 勞使關係를 위한 정책과제이다. 여기서는 우선 지난 성장과정에서 소홀히 여겨져 왔던 分配正義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다음 最近 勞動市場의 構造變化의 양상을 점점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接近視角을 제시할 것이다. 또 이러한 接近視角에 따라 韓國的 勞使關係의 모형과 그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해본다.

第6章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을 要約하고 綜合的인 結論을 내릴 것이다.

第1章 새로운 經濟秩序의 摸索

第1節 序 論

우리가 처한 對內外的인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經濟秩序는 市場經濟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自由主義의인 토대를 유지하되 統一이후를 지향한 社會全體의 連帶性을 조화시키고 주어진 제약조건을 民主的 타협에 의해 해결해 나가는 方向에서 定立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視角이다.

이 같은 새로운 經濟秩序의 구현체계를 이 글에서는 共同體的 市場經濟라고 정의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政府와 企業의 새로운 役割, 그리고 企業內部的 組織改革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갈 것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서구 여러 나라의 서로 다른 資本主義의 발전방향과는 다른 우리 나름대로의 秩序를 韓國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共同體的 市場經濟는 經濟理念으로서 自由主義的 市場經濟를 발전시키되 우리가 갖고 있는 文化社會的인 제조조건과 짧은 歷史 동안 이룩한 量的 成長의 後遺症을 치유해 나가는 模型의 개발이 중요해진다. 즉 資本主義 전체의 一般的인 발전추세에 적응해 나가되 우리 나름대로의 구체성을 조화시키는 韓國的 資本主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걸어온 經濟發展 過程은 넓게는 開途國의 발전모형 중에서 아시아 新興工業國의 공통적인 力動性을 지나면서도 비슷한 길을 걸은 대만이나 싱가포르와는 다른 점이 많다. 더 나아가서 政府의 역할

이나 企業의 발전양태 혹은 企業의 경영조직과 소유구조도 日本과 비슷한 점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점은 美國쪽에 더 접근해 있는 점도 많다. 한 마디로 다른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된 時間上의 궤적이 같은 시간대와 같은 空間에 혼재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資本主義의 여러 모습이 간혹 서로 상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과연 우리가 長期的으로 나가야 할 방향의 정립을 모색하면서 現實的인 한계에 직면한다. 그러나 普遍性的 측면에서 市場을 궁극적으로 여러 經濟主體의 利害調整機構로 신뢰해야 한다는 큰 테두리에는 합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점에서 1988년 이후 전개되고 있는 韓國經濟에서 우리는 아직도 市場과 價格機能의 의미를 제대로 정립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價格이 資源의 價値를 반영하지 못하고, 價値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勞力에 대한 價格機構가 正常的으로 작동하지 못한 채 物理的인 조직의 힘과 獨占的·排他的인 權利主張과 이에 따른 地代追求(rent-seeking)行爲에 지나치게 힘을 쏟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政府와 企業의 政策決定過程에서 외양적인 民主的 절차만이 강조되어 왔고 民主的 價値와 市場的 價値를 분리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¹⁾.

政府와 企業의 새로운 역할분담과 협조관계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실한 經濟運用的 哲學을 정립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 글은 이 같은 주제를 추구해가기 위한 노력의 시작에 불과하다.

人間은 經濟的인 동시에 政治的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文化의 同

1) 資本主義 社會에서 民主的 價値와 市場的 價値는 결코 獨立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民主的 價値의 실현은 市場的인 價値의 실현을 그 기초로 한다. 단지 외양상 民主的으로 보이는 절차를 따랐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民主主義的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市場的 價値 즉 공정한 경쟁과 가격기구의 정상적인 기능이라는 중요한 價値를 도외시한다면 民主的 價値의 실현은 不可能한 것이다.

質性에 따라 스스로의 存在價値를 인식하기도 한다. 따라서 世界的인 經濟統合의 進전 그 자체가 民族國家의 소멸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冷戰體制下에서처럼 개별국가의 안보를 내세운 國家權力의 우위는 사라질 것이고 中央政府와 아울러 작은 地方 중심의 다양한 政治體制와 文化公有單位의 중요성이 훨씬 부각될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經濟的 統合과 政治體制의 多樣性 追求의 조화는 많은 示唆點을 던져주고 있다.

第2節 對內外的 狀況變化와 새로운 經濟秩序의 必要性

2000년대에 대비한 우리 사회의 基本課題를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全人類社會의 전반적 變化방향에 대한 精確한 분석이 필요하다. 1900년대를 마감하면서 全世界的으로 일어난 가장 중요한 變化는 理念의 중요성이 급격히 쇠퇴했다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理念的 對立의 基礎 위에서 存在했던 모든 制度和 價値體系 및 經濟構造가 根本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를 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變化는 國際化和 自由化라고 볼 수 있고 企業으로서는 地球化, 政府로서는 機能의 複合化라고 요약할 수 있다. 理念의 쇠퇴와 國境 없는 經濟의 進전은 이제 舊時代의인 資本家와 勞動者의 대립, 政府和 企業의 관계, 議會民主主義를 통한 市民과의 관계를 革命的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즉 이제는 資本家 또는 그 대리인인 經營者와 勤勞者의 對立보다는 한 企業의 모든 구성원과 競爭企業의 모든 구성원 사이의 對立이 더욱 전면에 나타나게 되고, 서로 다른 民族國家의 企業들이라도 이해를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연합할 수도 있게 되었다.

未來社會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이미 많은 外國學者들에 의해 제

시되고 있어 이제는 우리에게도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競爭力 強化와 衡平性 提高間의 관계를 舊時代의인 對立關係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즉 企業의 競爭力은 그 企業 內部的 經濟的 참여 확대와 구성원간의 협조여부에 달려 있는 時代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社會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상 및 행복의 추구가 組織 혹은 社會의 目標 및 가치와 조화되기를 원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構成員들의 협조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않고서는 企業組織이나 社會가 경쟁에서 이기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世界經濟를 움직이는 기본축이 美國 중심의 브레튼우즈-가트체제에서 日本과 유럽합중국이라는 三角軸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競爭者가 나타나고 새로운 게임물이 서서히 정착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롭게 등장한 三角軸을 대변하는 國家들의 역할이 이전과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즉, 이제는 國家가 다양한 企業間 聯合을 지원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하는 기능이 강조되고, 政府 역할과 企業 역할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美國, 유럽 및 日本의 세 경제권은 서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협조하는 새로운 經濟秩序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새 秩序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유럽시장의 통합 이후 可視化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經濟게임의 본질은 한 마디로 競爭과 生存이며 여기서 중요한 명제가 企業과 國家間의 競爭力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서 自然賦存的 要因에 비해 人工的 要因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運送費 하락, 通信技術의 혁신, 그리고 經濟의 自由化와 開放의 가속화로 각국 市場을 둘러싸고 있는 經濟的 국경은 허물어져 가고 있다.

輸入自由化의 확대로 消費者의 선택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生産者는 國內外 市場을 구별하지 않고 생산과 투자활동을 계획하며 企業立地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게 된다. 先進國의 大企業은

海外投資를 통해 생산, 판매, 금융활동을 지역적으로 分散하기도 하며 外國의 다른 企業과 戰略的 提携를 통해 이른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는 比較優位를 최대한 가동하여 전통적인 비교우위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企業도 투자대상 부문과 규모, 시설의 입지, 자금동원, 판매망 등을 世界舞臺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며 이는 이미 部分的으로 現實化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企業이 차지하는 國家經濟的 위치나 政府와의 관계 혹은 企業內部的 조직문제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企業의 규모확대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혹은 企業의 소유구조나 의사결정구조, 즉 經營上 문제가 있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第 3 節 새로운 經濟秩序의 哲學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經濟秩序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共同體의 市場經濟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것은 특정한 制度나 生産體制를 일컫는 개념이라기보다는 包括的인 經濟秩序와 社會的 合意形成 과정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概念定義가 쉽지 않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논의전개를 위해 정의를 내려 본다면, “市場經濟에 바탕을 두고 民主的인 合意形成과 參與를 통해 共同體의 利益과 福祉增進을 꾀하고 公共善의 추구를 위해 民主적인 政府나 團體가 市場機能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경제질서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獨逸의 社會的 市場經濟나 日本의 企業主義的 協調主義體制와 상당히 비슷한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 실제로 현실상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外國의 체제를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

리 실정에 맞는 共同體의 市場經濟는 이제까지 韓國經濟를 떠받쳐온 經濟秩序보다 참여의 폭이 상당히 늘어나지만, 獨逸의 共同決定體와 같은 수준까지 나가는 것은 힘들다는 점에서 獨逸의 사회적 市場經濟와 구별된다. 더욱이 스웨덴과 같은 유럽의 작은 경제에서 효과적으로 자리를 잡은 組合主義的 經濟運營과도 구별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 企業別 노조체제에 기반을 둔 上位勞組團體의 보완이라는 구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共同體의 市場經濟는 유럽식보다는 日本式에 더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日本의 기업소유구조처럼 사회소유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특정가문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共同體의 市場經濟의 요체는 企業의 所有分散을 유도해 나가고 경영체제를 보다 民主的이고 參與的인 형태로 정착시키면서 企業從事員들의 조직에의 歸屬意識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經濟秩序의 마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經濟秩序에서는 經濟的 自由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個人의 經濟的 自由가 社會的 安定 및 社會的 公正성과 상치될 경우에는 民主的인 政府가 조종자의 역할을 하되 엄격하게 그 권한을 제한하고 항상 法律과 制度에 의거하여 恣意的 개입을 삼가야 한다. 共同體의 市場經濟를 구체적으로 시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제도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정비작업은 다음 몇 가지 基本原則을 갖고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市場經濟의 창달과 競爭의 촉진이다. 市場經濟의 역동성과 효율성은 經濟主體의 合理的 利己心과 自由競爭에서 발생한다. 아담 스미스 이래의 이 같은 시장에 대한 믿음은 市場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한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市場機構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한 經濟主體들의 利益追求가 최대한 보장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市場機構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政府는 經濟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公正競爭을 보장하여 獨寡占의 폐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 경우의 政府介入은 민주적인 節次와 制度에 의해 합리화되지만 어디까지나 환경의 조성에도움이 되는 일에 주력하고 실제로 經濟活動에 뛰어드는 일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앞으로 政府가 제대로 할 일은 바로 經濟의 安定이라는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가 명실상부한 國際化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안정의 중요성이 이제는 國家生存을 위한 열쇠가 되고 있다. 政府의 巨視經濟政策의 운용범위가 크게 줄어들면서 民間部門과 市場의 활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 安定이나 成長이나를 놓고 論難을 벌이던 때가 지났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經濟安定 基盤의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體質 強化 외에는 國際化時代에서 생존할 전략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經濟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 國際化에 동참할 수가 없고 오히려 國內經濟의 攪亂要因만 증대시켜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經濟安定基盤의 구축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정기반의 구축에 기반을 두고 政府規制의 완화와 企業經營의 效率化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성장시대에서 벗어나서 經濟의 基本體質을 바꾸어야 한다.

인플레이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物價變動에 따라 다른 價格指數가 조정되는 한 사람들이 큰 불만이 없다. 특히 인플레이성장 구조하에서는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나 企業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不動產

등 實物資產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큰 덕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韓國經濟가 굴러가려면 두 자리수의 성장이 바람직하고 安定成長이 좋기는 하지만 구조조정에나 필요한 과도기적인 의미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高成長 - 高物價 - 高金利體制下에서는 막대한 借金經營을 해온 기업이 별로 체질개선을 할 자극이 없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인플레이는 단순히 經濟的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 組織의 인플레이가 있고 機構 및 자리의 인플레이 있는가 하면 權力의 인플레이도 있다. 社會 全體의으로 虛張聲勢가 판을 치고 내뿜찾기에 바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는 것은 指導階層의 총체적인 권위상실이다.

經濟安定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는 認識下에서 이제 우리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家計도 합리적인 살림을 할 수밖에 없고 企業도 편하게 비용을 줄여주는 조치를 政府에 기대하지 말고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어려운 경영을 각오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야 政府가 시장의 역할관계에 맞추어 經濟를 運營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2차대전후 經濟가 안정된 나라치고 현재 體質이 강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經濟安定基盤의 구축이 국제화시대에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前提條件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셋째, 새로운 企業經營 및 所有構造 추진과 協調的 勞使關係의 모색이다. 규모의 經濟 또는 범위의 經濟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의 韓國企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新株公募를 통한 規模의 擴大가 불가피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앞으로 韓國經濟를 이끌어 갈 戰略產業, 다시 말해서 電子·機械·化學·自動車·通信 및 半導體產業 등은 이 같은 기업규모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환경의 변화이며 은행을 비롯한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대규모의 企業經營에

는 전문성을 갖춘 經營人의 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소유가 분산된 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大企業의 所有集中은 소득분배의 불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강한 社會的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소유집중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할 역사적 증거는 희박하다. 英國의 경우 분산을 회피해 企業規模를 확장하지 못해 企業의 활력을 상실했던 것이 좋은 예이다. 企業規模에 따라 所有經營人과 專門經營人의 성과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企業의 所有分散을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우선 大企業의 所有分散을 유도하는 것이 순서이다.

企業이 커짐과 동시에 企業 自體의 비효율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계층의 構成員들의 參與意識을 높이기 위한 制度的 保障이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從業員에 의한 경영권이나 인사권의 침해로 해석될 수는 없지만 成果配分制나 임금체계의 개선에서부터 의사결정과정과 승진 및 장기고용에 따르는 所屬感의 고양에 이르기까지 經營의 레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두되 權限의 移讓이나 共同決定형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생산성향상과 大企業의 소유분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과 연결될 수 있고 專門經營人 자체가 이 같은 조직문화 속에서 가장 良質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 조직윤리와 소속감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形式的이고 재산증식수단으로만 인식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과 같은 제한된 형태의 從業員持株制는 장기근속 및 능력개발과 연계시켜 본래의 目的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所有經營者라 해도 일정한 수준까지 소유가 분산된 환경 속에서 각 企業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최적의 인물이라고 평가될 때 얼마든지 最高經營者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전문경영인과 혼합된 형태로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바람직하다.

넷째, 福祉國家의 건설을 위한 政府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즉 앞으로의 經濟運營에 政府가 일선에서 지시통제는 하지 않지만 民間企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에 政府의 역할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교육·환경·교통 및 치안 등과 같이 정부고유의 업무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민간부문에 의한 개별적 효율성의 추구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태의 서비스공급을 가져오지 못하는 분야들이 속해 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政府役割의 증대는 필히 政府財政의 支出 擴大를 기본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國民擔稅率의 단계적인 확대와 동시에 財政 및 稅制改革과 이와 관련된 政府組織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다시 말해서 각종 금융, 재정 및 조세기능의 종합적인 역할 재분담이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예를 들어 金融改革 하나만 고려한다 해도 이 문제가 결코 金融部門의 제도정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政策金融을 줄이자면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政府 內에서 재정과 금융을 동시에 검토하고 租稅收入의 가능성까지 정책의 수립 및 계획단계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현재 經濟企劃院과 財務部 및 韓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주요 정책기능을 재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財政과 租稅機能 및 機構의 統合과 通貨信用政策의 中央銀行 移管과 金利自由化 및 金融產業의 自律育성과 金融實名制 등 제반 기반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金融實名制만 해도 그것이 단순히 金融去來의 實名화가 아니라 稅制와 稅政의 개혁을 수반하는 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社會가 福祉國家를 지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어떤 전달방법을 통해 社會構成員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느냐에 대해서는 실천단계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福祉社會 구현을 내걸고 오랫동안 각종 시행계획을

도입해 온 先進諸國의 경우 이른바 福祉病이라고 불리는 부정적인 측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아직도 競爭力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成長潛在力의 배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복지수준의 적정성과 근로의욕의 고취방안이 동시에 고려되는 우리 나름대로 적합한 福祉體系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아직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家族體系나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福祉補助的인 기능을 최대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政府나 地方自治團體가 담당할 부분과의 연계작업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늘어나는 福祉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國民 모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을 國民에게 널리 알려 참여하는 가운데 意思決定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동시에 혜택의 수준뿐만 아니라 지급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政府의 기능과 民間部門이 담당할 복지공급기능의 조화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점에서 앞에서 제기된 企業內에서의 협조적인 勞使關係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즉 대부분의 급여종사자들에게는 政府나 地方自治團體보다는 企業體가 공급할 수 있는 복지의 종류나 수준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가 할 일은 企業으로 하여금 구성원의 福祉供給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유도체계를 만들어 지원하는 消極的인 역할로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共同體的 市場經濟의 필요성을 일단 정리하고 나면, 企業의 競爭力 向上을 통한 國家競爭力의 증진과 衡平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第 4 節 要約과 結論

이제까지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재의 시점에서 韓國經濟는 量的인 면에서나 質的인 면에서 안팎으로 심각한 挑戰에 직면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새로운 經濟秩序의 창달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새로운 經濟秩序를 모색하려면 현재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韓國經濟는 質的인 轉換期에 처해 있음이 확실하다.

우선 國內的으로는 그 동안의 政治的 民主化로 형평과 의사결정 및 배분에의 要求는 증대했으나 그러한 要求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集團利己主義의 표출로 市場經濟의 效率性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成長潛在力의 위축은 단기적인 景氣沈滯 外에도 장기적인 성장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構造調整이 늦어지고 政府와 企業間의 새로운 협력관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낡은 經濟秩序가 政府主導의 권위주의적이고 자의적인 개입에 의해 가능했다면 새로운 市場의 힘과 새로운 秩序는 정착되지 못하고 기존의 이득을 보호하려는 싸움이 과장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해 보았다.

對外的으로는 우리가 그 동안 經濟를 발전시켰던 輸出主導成長을 다른 차원에서 제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의 구별이 사실상 없어지고 國內企業間의 경쟁을 넘어 차원이 다른 외국의 先進企業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政府와 企業間의 관계변화로 더이상 자의적으로 國內企業을 보호하는 장치는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地球村經濟의 도래는 앞으로의 韓國經濟를 이끌어 갈 企業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21세기를 내다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經濟秩序를 ‘共同

體的 市場經濟'라고 개념화해 볼 수 있다. '共同體的 市場經濟'는 "市場經濟에 바탕을 두고 民主的인 합의형성과 참여를 통해 共同體의 利益과 福祉增進을 꾀하고 共同善의 추구를 위해 민주적인 政府나 團體가 市場機能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경제질서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개념과 관련하여 競爭力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형평의 제고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 참고가 되는 外國의 經驗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현실적인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第2章 政府의 役割과 産業 發展戰略의 方向

第1節 政府의 役割과 機能

앞에서 우리는 對內外的 상황변화로 말미암아 21세기를 전망하는 새로운 經濟發展戰略은 새로운 經濟秩序를 기초로 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秩序를 共同體的 市場經濟로 이념화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새로운 經濟秩序로서의 共同體的 市場經濟는 당연히 지난 30여 년간의 政府主導型 成長第一主義에서 벗어나 政府의 역할과 政府和 企業間 關係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市場經濟의 力動性和 效率性은 經濟主體의 합리적 이기심과 自由競爭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市場機構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經濟主體들의 이익 추구가 최대한 장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市場經濟의 창달을 위한 政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經濟的 機會均等과 公正競爭의 보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政府의 經濟運用 方式은 市場機能을 더욱 강화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量的 성장이나 質的 발전을 함께 고려할 때 앞으로의 開發戰略이 민간 주도의 成長戰略이어야 한다면 민간의 自律性和 創意性을 극대화하는 한편 企業活動에 대한 政府의 規制가 가급적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政府의 역할이 무차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經濟가 개방될수록 政府의 역할에서 企業 및 산업 차원의 微視的

産業政策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民間이 담당하기 어려운 機能人力 양성, 基礎科學 연구, 情報通信 및 社會間接資本 投資를 政府가 담당해야 하고, 産業構造調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극소화하여 國家的 競爭力을 유지하도록 하는 産業政策 次元의 조정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정은 과거와 같은 거시적 통제보다는 誘引과 情報提供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 經濟가 국제화되고 世界經濟가 블록화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對外 通商政策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國際的 信賴性 유지뿐 아니라 국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통상협상 기능과 통상정책 기능, 대외경제정책 조정 기능 등을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통상정책과 순조로운 國際化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政治的 分權化와 民主化 추세 속에서 民主的인 정치질서의 확립과 효율적인 經濟運用의 조화를 위한 관건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利益集團의 私益 추구가 國家 전체의 이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多元主義的 經濟運用을 일부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대화와 타협,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多元主義的 經濟運用은 討論과 妥協의 전통이 빈약하고 權威主義的인 우리의 政治·社會·文化的 토양에서 순기능보다는 사회구성원간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의 증폭을 가져와 逆機能이 더욱 부각되었다.

위계질서와 인화단결을 중시하는 우리의 傳統的 가치관에 비추어 國家가 권위를 가지고 能動的으로 이익집단의 이해대립을 조정하는 방식의 經濟運用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民主的 正統성을 가진 政府가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과거와 같은 강요된 협조와 통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에 의한 經濟運用이어야 한다.

政府가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면서도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政策決定 過程에 있어 公開性和 客觀性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經濟政策이 입안, 협의, 결정되는 과정에서 民間企業 및 관련 이해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러한 과정이 要式節次로 끝나버릴 우려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대립과 방해로 인해 정책결정이 봉쇄되거나 정책 자체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政治社會的 합의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摩擦과 社會的 費用을 극소화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가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익집단에 의한 영향력 행사가 國民經濟的 차원의 대원칙 아래 적절히 통제되고 利害折衷 過程에서 黨派的 또는 政略的 고려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制度와 慣行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第 2 節 發展戰略과 政府

이제까지의 產業發展 戰略은 업종을 불문하고 대규모 생산설비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그로 인한 成長을 주도해 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기별로 새로운 競爭力 있는 商品이 출현하고 가격면에서의 競爭力 유지 전략이 이루어져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輸出增加를 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大量 加工組立型 생산구조는 부족한 生産設備의 도입과 당장 필요한 中低價商品 생산을 위한 생산기술의 습득에만 特化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高價品生産을 위한 技術力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핵심부품과 소재 및 자본재산업의 취약 등 장기적으로 競爭力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애로요인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產業發展戰略은 우리가 여하히 國際競爭構造下에서 低技術

陷穽(low technology trap)에 빠지지 않고 이제까지 유지해 온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政府와 企業의 새로운 協業關係가 필요하다는 論理的 當위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産業政策의 결정과정이나 企業의 활동과 관련한 기본풍토는 市場中心의 規制緩和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政府와 企業間의 전략적인 제휴를 바탕으로 戰略産業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의 新國際貿易論에서 이미 정형화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 MIT의 「폴 크루그만」 교수같은 이른바 신국제교역론(New International Economics School)그룹을 이끄는 사람들은 만약 한 國家나 地域經濟가 뚜렷한 대책이 없이 開放과 國際化의 물결에 휩쓸릴 경우 결과적으로 경쟁력, 즉 기술력이 약한 나라나 企業이 低技術産業에 特化하게 되는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國際化의 필요성에 직면하여 모든 노력을 國際化에 집중시키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先進國에서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재삼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國際化 자체가 스스로 조정능력이 있어 開放만 하면 경쟁력이 自生的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너무나 국내의 각종 제도와 經濟運營이 規制一邊倒와 政府主導下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開放만이 실질적인 제도개혁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이라는 게임의 주체가 우리 하나라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경쟁은 언제나 상대적인 힘의 우위에 의해 결정되는 2인 혹은 3인 이상의 게임이기 때문에 競爭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함축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급변하는 國際經濟環境은 韓國의 産業政策에 새로운 제약조건을 가할 가능성이 많다. 즉 産業別 支援이 不公正貿易 慣行으로 보

복의 대상이 되며 産業基盤政策도 國際化와 開放化 등 국가간 이해 갈등의 조정과정을 거쳐 국제적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약 자체의 완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불가피한 國際的 합의는 준수하는 産業政策의 시각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經濟發展 戰略’이란 ‘經濟發展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國家가 행사하기로 하는 政治, 經濟, 社會 및 그 밖의 제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趙淳, 1992). 經濟發展 전략의 내용은 크게 戰略의 理想, 經濟秩序의 定立, 經濟運營 方向의 選擇 및 전략을 成就하기 위한 手段의 選擇이라는 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앞 節에서 전략의 이상과 經濟秩序의 정립에 대해 논의했으므로, 이 節에서는 經濟運營 方向의 선택과 전략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에 대해 論議할 차례이다.

21세기를 내다볼 때, ‘共同體的 市場經濟’라는 새로운 經濟秩序를 창출해 나가지 않고서는 韓國經濟는 더 이상 발전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經濟秩序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經濟成長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새로운 經濟秩序를 창출함으로써 건전한 經濟成長을 도모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적절한 經濟成長을 이룰 수 있어야 새로운 經濟秩序의 창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經濟秩序의 定立과 적절한 經濟成長의 維持라는 두 목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로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둘 중의 어느 한 목표를 도외시하고 다른 한쪽만을 추구하는 經濟運營은 필연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經濟運營 방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國際經濟秩序의 變化過程이다. 韓國經濟가 單一市場化되는 세계경제 속에서 外國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아시아경제권에서 日本에 종속당하지 않으며 軍事大國 中國의 압력까지 이겨내어 독립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先進工業國으로 발전하여 경제력을 배양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이 先進工業國으로 발돋움하려면 급변하는 國際經濟秩序 속에서 韓國에 가장 알맞는 위치를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韓國經濟는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중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최근까지 韓國經濟는 美國과 日本에서 자본과 기계, 원자재를 들여와 단순가공 조립하여 수출하는 체제였으며 이 때문에 저임금체제가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형평에 대한 욕구증진으로 어느 정도 임금이上昇하였으며 이는 인위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자연스런 추세이다. 더욱이 최근 後發 開發途上國들이 과거 韓國과 같은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자꾸만 韓國이 차지했던 위치로 파고들어 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韓國經濟의 위치가 상승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고부가가치 尖端産業에 대한 진출은 技術開發 능력의 취약성 때문에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과거 韓國經濟의 주축을 이룬 상대적으로 勞動集約的인 産業들은 다른 産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技術移轉的 파급효과를 많이 창출하지 못했던 것이며 이런 노동집약적 産業에의 전문화가 後發 開發途上國들의 추격으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구규모도 그리 크지 못하고 天然資源이 거의 全無하며 投資財源도 부족하여 외국으로부터 빌려와야 했던 韓國의 경우에는 전문화할 수 있는 産業의 수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또 격화되는 國際競爭을 이겨내려면 규모의 經濟를 달성하여 생산비를 크게 줄여 競爭力을 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느 産業에 투자를 하든 그 투자규모는 世界市場을 겨냥하여 규모의 經濟를 실현할 수 있는 投資水準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재원조달의 한계, 개방에 따른 전문화의 필요성 규모의 經濟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發展戰略은 제한된 부문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된 부문에 投資財源을 집중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朴英哲,

1992).

韓國은 賦存資源이 없어 1次産業에 비교우위가 없고,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만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지난 30여년간 그랬던 것처럼 製造業의 輸出을 통한 공업화라는 기본전략에는 큰 변화가 오기 어렵다. 그런데 제조업 가운데서 어떤 부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몇몇 製造業 부문에 투자재원을 집중하여 한국이 적어도 이 몇 부문에 관한 한 世界的 生産國이 될 수 있도록 産業政策의 目標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製造業의 부문별 투자의 優先順位는 어떤 기준에 따라 누가 결정할 것인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經濟秩序下에서는 과거와 같이 政府가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궁극적으로 그 우선순위는 기업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政府의 역할은 間接的 政策手段을 이용하여 企業의 투자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民間企業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과학 연구의 발전, 기술개발능력 제고, 기능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첨단산업부문 투자지원,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 확충 등의 과제가 그것이다. 發展戰略의 수행은 企業과 政府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企業과 政府間 관계의 새롭고 바람직한 模型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第 3 節 政府規制의 緩和

政府와 民間部門의 시장간의 역할분담을 논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주제가 바로 政府規制의 완화문제이다. 規制緩和의 필요성은 일차적으로 2차대전 후 증대되어온 政府役割의 증대추세가 변하고 있다는

전세계적인 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라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과거의 발전전략상 의도적으로 政府의 市場介入이 증가해온 데 대한 반성이라는 이차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政府規制를 緩和해야 한다는 政策的인 관심은 政府規制의 증대에 따라 자본주의 經濟의 본래의 목적인 市場의 자유스러운 활동이 저해되어 經濟全體의 성과가 저하되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規制가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측면은 産業에 대한 개개 規制의 성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점이다. 規制의 본래 목적은 市場이 自體機能으로는 바람직스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 市場機能을 보완하고 그 성과를 바람직스럽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규제 자체는 市場機構처럼 자율적인 존재는 될 수 없고 여러 가지의 교란요인에 좌우된다.

예컨대 政治的 影響이나 情報의 不完全性 등의 外的要因에 의해서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가야할 방향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불충분한 시장기능을 보완하려는 규제가 逆으로 市場의 성과달성을 저해하고 막대한 社會的 費用을 발생시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規制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것에서 생기는 經濟活動의 歪曲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더 앞서가는 규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規制가 規制를 부른다」는 식이 되는 것이다. 잘못된 形態의 規制가 가져오는 社會的 費用에 대해서는 政府의 비대경향, 사회적 권리의식의 고양과 어울려서 그 負擔의 경중을 담보하는 수단을 재차 規制에서 구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으로 規制가 누적된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現代經濟의 상호의존성을 생각한다면 規制의 累積效果가 매우 크다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최근의 規制論議의 특징은 확대만을 거듭한 規制를 되돌아보고 經濟全體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가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規制(regulation)」라고 할 경우 그것이 갖는 개념영역은 매우 넓다. 「規制」는 기본적으로는 「規則」, 「規定」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의 수단과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 의미에 있어 「規制」를 「어떤 주체가 직접 참가 혹은 관계함이 없이 規則(rule)에 따라서 어떤 行爲의 目標의 선택을 통치(police)하는 것」¹⁾이라고 定義할 수도 있다.

個別産業에 대한 規制도 넓게 보면 經濟政策의 일부이다. 따라서 規制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 경우 전체적인 經濟政策의 目標와 일치하여야 한다. 통상 經濟政策이라고 할 경우 그것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는 개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미치는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 經濟制度의 틀의 형성과 유지 b) 資源配分の 효율화 c) 總需要의 관리 및 d) 所得再分配와 社會保障의 네 가지다.

a) 經濟制度의 틀의 형성과 유지는 經濟機構의 成立 自體의 전제가 되는 法制度의 확립부터 商去來의 공정, 財產權의 보호, 더 나아가 通貨制度의 유지와 유효한 경쟁의 유지를 내용으로 한 것이다. c) 總需要의 管理는 케인즈經濟學 이후 정립되어 현재의 市場經濟는 總需要 혹은 國民總支出의 조정망으로는 자동적인 回復能力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經濟의 안전성을 구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더욱 d) 所得再分配와 社會保障의 제공은 말할 필요도 없이 얻어진 과이를 어떻게 나누는가 그리고 또 最低水準의 유지 등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본 문제이다.

産業規制의 영역은 이 중 특히 b) 資源配分の 效率化에 관계되는 문제다. 經濟의 기본적 역할은 최소한 資源을 배분하여 생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經濟效率의 문제다. 요컨대

1) B.Mitnick,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New York: Columbia U.P., 1980.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生産하는가라는 資源의 배분문제이고 이 效率性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市場의 失敗에 의해서 資源效率性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政府의 施策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市場은 어떤 경우에 실패하는 것인가. 또 그 是正方策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厚生經濟學의 영역에 있어서 명확한 형태로 매듭지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소위 「市場失敗」의 요소인 것이다.

政府의 經濟關聯 規制를 크게 經濟的 規制와 社會的 規制로 분류할 때 經濟的 規制의 개선은 경쟁 촉진을 위한 進入制限 완화와 특히 認許可 요건의 객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社會的 規制의 경우 주요 論點은 달성하려는 사회적 목표의 적정성과 규제수단의 효율성이다. 社會的 規制에 대한 논의의 중점은 설정된 基準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規制手段의 合理化와 市場機能의 도입에 두어져야 한다. 과거 經濟政策의 方向이 소수 정책담당자의 개인적 소신에 크게 좌우되었다면, 이제는 政策決定의 民主化, 즉 소수에 의한 政策決定의 지양 및 다수 의견을 반영하는 政策決定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政策決定에서의 公開성과 客觀性的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효과적 정책운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政策에 대한 信賴性的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政策의 一貫性 維持가 필수적이다. 政策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政策의 조정기능이 확립되어야 하고 둘째, 조정담당자가 확고한 政策의 틀과 원칙을 가져야 하며 셋째, 政策擔當者가 실질적 조정권한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安定的으로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상의 論議의 핵심은 企業部門과 政府部門 사이에 새로운 協調關係가 새로운 경제질서를 위한 가장 중요한 政策課題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協調關係에서 政府는 직접적 개입방식을 지양하고 자원배분의 주도권을 民間

部門에 이양하게 된다. 民間企業이 이렇게 하여 누리게 되는 새로운 自由가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競爭的 環境의 강화, 즉 市場機能의 強化가 필수적이며 政府는 社會的 合議를 이끌어 나가면서 調整的 機能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 제기된 政策課題는 불가피하게 利害關係의 재정립을 수반하는 것들이므로, 새로운 政策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基本原理를 희생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經濟民主化의 과정이 특정계층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는, 소위 多元主義型 政府의 失敗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우리의 경우 상당기간 規制緩和는 역대정부의 懸案課題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첫째, 規制緩和가 즉각적인 權限喪失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規制機關의 종사자에게 規制緩和를 담당시킨 오류가 지적되어야 한다. 우리는 政府를 추상적인 團體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政府의 기능은 具體的인 개인과 개인이 소속된 特定集團의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는 規制緩和는 장기적으로 競爭의 촉진과 연결되지만 規制緩和로, 獨寡占的인 利益을 향유해 온 이익집단의 로비라는 저항에 부딪치고 政府關係者는 이를 현실의 어려움이라고 호도함으로써 실질적인 規制緩和를 어렵게 만들어 왔다. 마지막으로 規制緩和를 결정하는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시일이 지나면서 심도 있는 論議와 努力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과거의 실패를 돌아볼 때 政府主導의 規制緩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문제는 중립적인 심판기능을 맡아줄 기구가 필요한데 주어진 상황에서 이는 政府와 民間의 信賴와 協調가 전제되지 않는 한 實効性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政府規制의 緩和와 관련하여 현재 방만하게 확산되어 222개나 되는 각종 政府傘下機關의 統廢合과 公企業의 民營化는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새로운 상황에 걸맞는 政府의 위상을 위해서나 財政의 효율성 모두를 감안할 때 조속하게 정비되어야 할 일이다. 이는 흔히 표현하는 식으로 작지만 효율적인 政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수적이고 政府와 民間部門의 役割再分擔을 위해서도 긴요한 과제이다.

公企業 民營化의 당위성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일이고 世界經濟戰爭의 와중에서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政府의 역할이 과도하게 컸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公企業 民營化의 당위성이 광범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民營化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社會的 基準과 이에 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國鐵이나 韓電을 민영화하겠다고 방침을 정한다 해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民營化할 것인가의 문제에 들어가면 百家爭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일 손쉬운 대답이 아마 國民株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일반국민에게 소화시키고 이른바 經營도 國民企業式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實例로 보면 이는 現實性이 희박한 방법이라는 점을 곧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民營化의 요체인 주인 있는 責任經營을 보장할 수 없고 따라서 合理化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株式市場이 훨씬 성숙되고 심화되기 전까지는 國民株 方式의 公募도 쉽지 않다. 시장이 대량물량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投資者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市場 自體의 소화능력도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責任 있는 경영을 강조해 實質的으로 公企業을 大企業에게 引受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주인은

찾아줄 수 있지만 특정 大企業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經濟力集中 緩和를 기대하는 國民情緒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견딜 길이 없다. 많은 경우 우리는 여기서 論議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公企業 民營化의 핵심은 바로 金融產業發展의 핵심이 그러하고 大企業의 經濟力集中이 그러하듯이 소유구조의 문제이고 주어진 所有構造의 改善과 經營의 效率性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과제로 귀결된다.

이 核心을 비껴가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다. 이 문제는 金融 實名制 이상의 엄청난 制度改革을 하려는 社會的 합의와 政策意志가 없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超法的인 措置에 의해 하루아침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다시 말해서 社會構成員間의 합의도출이 중요한 前提條件이고 이 과정에서 고도의 政治力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第3章 새로운 企業像의 定立을 위한 考察

第1節 序 論

經濟의 기본틀이 변해야 한다고 한다. 企業도 변해야 한다고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過渡期的인 진통을 겪고 있으나 새로운 經濟패러다임에 대한 社會的 合議의 윤곽이 아직 잡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들 불안해 하고 韓國經濟의 장래에 대한 自信心을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企業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새로운 思考에 의한 새로운 韓國經濟의 틀을 짜기 위해서는 꼭 잡고 넘어가야 할 核心的인 의문이다. 近者에 들어와 競爭力 強化와 經濟力 集中 緩和의 調和 必要性이 제기되고 같은 맥락에서 企業과 政府의 역할 재정립이나 企業 內의 의사결정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新政府의 新經濟政策에서도 그렇고 企業의 自己變身 노력에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과연 企業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본 흔적은 별로 안 보인다.

企業概念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또 변해야 한다는 근거도 충분하다. 지난 30여 년간의 壓縮成長過程에서 企業의 개념은 利潤追求의 극대화를 위한 前衛組職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틀 속에서 所有의 集中이 야기되었고 企業을 보는 많은 國民들의 눈이 부정적이었음은 企業의 概念 自體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企業이 社會와 共生하고 같이 繁榮해야 한다는 인

식이 높아지고 있고 企業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이제는 工場을 하나 지으려 해도 地域住民들의 동의나 협조가 불가결한 과정이 되고 公害나 環境問題가 부각될수록 이 중요성은 더해진다. 다시 말해서 이제 企業은 단순히 利潤追求의 極大化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社會 自體를 구성하는 기본조직이고 따라서 社會 全體의 번영에 같이 책임을 지는 社會 속의 構成員으로 바뀌고 있다.

企業의 目標를 利潤追求에만 두고 보면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논의하는 傳統的인 사고방식은 고작 企業이 번 돈을 社會事業이나 文化事業에 지출하는 일 정도에 그치고 만다. 그러나 社會와 共生하는 企業개념을 통해 보면 企業과 社會와의 關係는 이보다 積極的인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즉 企業活動 자체가 社會의 발전과 직결되게 하고 구성원인 個人的 幸福增進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前者의 개념이 事後治療의인 태도라면 後者의 발전적인 개념은 事前豫防的인 것이다.

日本에서는 이 같은 企業에 대한 社會批判과 企業改革에 대한 논의가 1984년부터 본격화되어 1985년에는 日本 전역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이 같은 全 社會的인 토론과 지혜의 결집을 통해 日本은 보다 日本的인 企業風土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경우 이같이 기본적인 토의가 부족한 채 바로 企業을 규제하는 것이 좋으나 아니냐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態度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별로 意味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企業經營은 市場이라는 資本主義의 일차적 調節機能을 가지고서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다. 資本主義가 발전할수록 企業은 이제 단순히 利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가 아니라 公器化되었기 때문에 大衆의 意思를 反映하는 감사와 통제를 적절히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經營者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權力 기반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權力이 행사하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된다.

企業의 目標을 장기적인 시장확대에 둔다면 人力에 대한 投資는 무엇보다 중요한 企業의 經營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入社 初期부터 停年退職까지 끊임 없이 계속되는 敎育과 훈련을 통해 新技術의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종업원의 평생에 걸친 組織에 대한 忠誠心의 開發은 組織의 成長을 통해 個人의 成就感이 일치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企業의 從業員은 한 企業의 종사자인 동시에 한 사람의 消費者이고 市民이며 이들이 느끼는 個人的 행복감과 성취감은 企業目標의 달성과 成長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企業活動 자체가 社會 속에서 共生할 수 있는 기반이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것이다. 企業이 從業員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敎育을 통해 個人은 社會가 요구하는 平生敎育機能을 충족시키게 되며 企業이 제공하는 각종 文化事業과 福祉事業 및 住宅의 제공 등은 바로 社會活動의 일부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企業概念의 방향은 企業內部的 변화와 企業과 社會와의 관계에서의 변화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한 마디로 경제의 기본 틀이 바뀌어야 하듯이 敎科書的인 經營學의 개념 자체도 다시 쓰여져야 한다.

개인도 조직의 구성원으로 평가되고 企業內에서의 成功者가 인생의 승리자로 평가되는 企業풍토가 조성되면 個人은 企業에 매여 있는 會社人間이 아니라 企業社會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우리는 企業의 所有問題의 해결과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世紀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21世紀를 준비하면서 우리 社會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民主的 先進經濟의 달성, 對內的 葛藤構造의 극복을 통한 福祉社會의 구현과 이 두 가지 과업을 바탕으로 한 韓民族의 分斷構造의 극복, 즉 統一國家의 회복에 있다.

우리를 둘러싼 世界環境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社會主義理念의 쇠퇴와 計劃經濟의 붕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地球經濟

의 도래와 그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競爭의 深化로 國內經濟와 國際經濟의 구별은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競爭力 強化와 經濟力 集中의 緩和라는 두 가지 歷史的인 과제는 兩者가 대립된다고 보는 시각, 다시 말해서 지난 30여 년간 韓國經濟를 이끌어 온 패러다임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왜냐하면 兩者는 대립되는 측면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企業主義 혹은 協調主義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調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업의 自己革新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면 여기에는 당연히 企業에 대한 觀念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企業은 社會가 공유하는 기본가치에 저해되는 해악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社會를 유지시키면서 그 構成員의 공존번영을 위한 共同善의 전위조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經濟 패러다임이 단순히 이제까지 富를 축적해 온 既得權層을 단죄해야 한다는 다분히 보복적인 차원에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그야말로 나약하게 문제를 보는 시각이다. 산적한 問題를 해결하는 길은 社會構成員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같은 社會的 合議를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 그 결과의 중요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政治的 리더십의 구조나 經濟的 난제의 해결방법에 있어 다시 옛날의 패러다임으로 회귀할 수는 없다. 현재의 우리 모습이 다소 혼란스럽다해도 根本的으로 이 시기가 그만큼 전환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작업은 政府, 企業所有者, 上位經營層, 中間事務職 및 生産職 勤勞者 모두의 의지가 반영되고 이해가 조정됨으로써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競爭力 強化와 經濟力 集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변화된 상황에 걸맞는 政府와 企業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처해 있는 世界經濟의 현실은 매우 준엄하다. 이러한 世界的인 挑戰을 극복할 주체는 바로 企業이다. 그런데 우리 社會는 企業에 대한 올바른 이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 企業人은 단지 이윤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企業에 대한 國民一般의 不信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이제 企業은 무엇이고 企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再檢討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만이 ‘共同體的 市場經濟’라는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현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第 2 節 現代社會에 있어 企業은 무엇인가?

1. 企業概念을 보는 視角

資本主義 경제체제에서 株式會社 制度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각 個人的 ‘私的 所有權’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株式會社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制度的인 裝置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결과 株式會社가 크게 번성할 수 있었다(예컨대 株式市場의 발달과 제반 法的 制度의 정비). 그러나 現代에 와서는 私的 財產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株式會社를 경영하는 데 발휘하게 되는 統制權의 성격은 間接的이고 名目的이 되었다. 즉 株式會社를 소유한다는 사실과 株式會社를 경영한다는 사실은 엄연히 구분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株式會社의 經營構造는 거대한 株式會社를 경영하는데 安定성과 持續性, 그리고 自律性의 제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株式會社의 주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회사의 정책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統制手段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資本主義가 그 역사적 발달에 따라 ‘資本家’를 企業經營에서 분리시

키는 것에 발맞추어 現代의 企業經營家들은 부분적으로는 資本家의 위치에 서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企業의 所有에서 분리된 自律的인 經營者의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기초로 政治家와 經營者 각각의 위치를 서로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投票’와 ‘市場’이라는 政治領域과 經濟領域의 기본적인 대개체제가 서로 대응해서 존재해 있는데, 이에 따라 行政官僚機構와 經營管理機構라는 대응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즉 政治에 있어서 權力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行政專門家의 분업에 따른 협력을 기본원리로 하는 位階秩序(hierarchy)가 있는 官僚機構를 활용하여 그 협력을 구하고 그 활동을 자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經濟 權力者도 똑같은 관리절차를 거쳐 經營管理機構를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企業經營은 市場이라는 資本主義의 일차적 조절기능을 가지고서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다. 資本主義가 발전할수록 企業은 이제 단순히 利潤을 追求하는 경제주체가 아니라 公器化되었기 때문에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監査와 統制를 적절히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있다. 물론 이것이 經營者가 갖고 있는 基本的인 권력 기반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된다. 따라서 企業을 改革한다는 말은 ‘巨大株式會社에 대한 사회의 적절한 統制’로 요약할 수 있다. 즉 經營者 권력에 대해 사회가 유효하고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는 方法을 도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세 가지 方案이 있다.

① 公的 規制 方式: 일반 대중의 의사를 政治過程에 대응시켜 표현한 것으로서 中央政府나 地方公共團體 등의 公共機關에 의해 企業活動을 규제하는 것이다. 즉 市場機構의 한계와 결함을 公共機關이 개입하여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장치이다.

② 市民參加 方式: 企業活動에 의한 否定的인 影響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大衆의 自主的인 組織을 통해, 그들의 의사를 기업

경영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을 일차적으로 ‘否定的 影響’에 국한시킨 것은 그 문제가 긴급하고도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大衆들에게 주는 企業活動의 肯定的 影響은 주로 市場이라는 본래의 資本主義 機能에 의해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구체적으로 住民組織 또는 消費者組織 등의 經營參加라는 의미가 있지만 公的 規制 방식과 다른 점은 全住民 또는 全國民의 의사를 公共機關을 통하지 않고 직접 經營過程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③ 從業員參加 方式 : 이 방식은 시민참가 방식에서와 같이 參加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논점은 經營參加의 實質的 內容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이것은 오늘날 企業의 反社會性이 논의되는 경우 勞動問題라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불량상품물이라든지 투기문제, 또는 공해문제 같은 企業活動에 대한 大衆들의 監査와 統制라는 차원에서 從業員들의 경영참가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기한 세 가지의 經營規制 방식은 물론 三者擇一의 性格을 지닌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효용을 고려하여 서로 결합시키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위의 세 가지 사회적 규제 방식이 갖는 問題點을 서로 相殺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각 방식이 갖는 問題點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① 公的 規制 방식의 이용을 생각해 볼 때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權力集中 문제에 관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企業經營에 대한 규제행위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룰(rule)을 설정하여 가해짐으로써 가능한 최대한으로 企業의 自律性이나 企業管理者의 責任이라는 分權行爲를 전제로 해야만 한다. 즉 그 규제의 정도가 市場機構의 결합과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政治過程의 유입이라는 시각에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② 市民參加 방식의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할 때 가장 큰 기술적 問題點은 시민적 요소를 대표하는 構成員을 經營에 참가하도록 선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또 선출된 小數集團의 의사가 얼마나 모든 社會構成員의 의사를 대변할 것인가의 一般民主主義 原理도 생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위해 주민대표나 소비자 대표의 企業經營에의 직접참가는 먼저 經營의 실태를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시켜 經營管理者側의 능동적인 자세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절실한 관심이나 이해를 갖고 있는 소수대중의 意思表示를 경영혁신 과정에 새로운 原動力으로 받아들임으로써 大衆의 관심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③ 從業員參加 방식은 시민참가 방식과는 달리 參加者의 범위를 확정시키거나 정형화된 수단을 도입하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이 방식도 나름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갖고 있는바, 從業員參加 方式의 가장 철저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從業員 自主管理型의 기업체제는 企業目標가 市民的 價値보다 우월하다는 전제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즉 企業經營과 統制가 해당 기업을 구성하는 從業員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生産者 利己主義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를 자본에 대한 私的 所有問題와 결부시켜 보면, 從業員 參加가 經營의 管理者 선임이나 企業經營上의 중요한 결정, 예를 들면 利益配分이나 豫算承認 등의 決定過程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기업이 적어도 從業員 자신들의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企業을 둘러싼 여러 가지 問題

현재 韓國企業에 대한 批判 내지 企業과 社會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① 社會가 그 동안의 성장과정에서 大企業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막대한 大企業의 經濟力 축적과 이의 산물로서 누리고 있

는 집중된 '經濟的 權力'을 일반 국민의 이익에 反하게 행사하고 있는 점

② 大企業이 집중된 '政治的 權力'을 一般 國民의 이익에 反하게 행사하고 있는 점과 政治權力과 癒着되어 있다는 점

③ 大企業이 자신이 所有한 地位는 유지하되 소유자로서 가지는 責任을 지지 않으려는 「과위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점

④ 大企業이 勤勞者의 人間的 權利를 존중하지 않고 中小企業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經濟民主化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과 消費者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

⑤ 大企業이 環境을 破壞하여 一般國民이 누려야 할 생활의 質을 열악하게 하고 있는 점과 民主社會가 요구하는 非經濟的인 가치기준 혹은 국가의 長期的인 목표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은 微視的으로 보면 大企業 자신의 문제로 간주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資本主義 經濟의 內的 矛盾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석적이고 실증적으로 논의하는 데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現代社會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기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自動車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은 분명히 大企業이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消費者의 需要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연관지어 自動車에 의해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생각도 自動車에 대한 公的 規制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그 책임을 公共部門에 돌릴 수도 있다.

또 都市에 큰 建物を 짓는 것은 企業이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都市問題와 연관되는 것은 都市計劃이 잘못되어 일어난다는 생각도 가능하다. 따라서 요약하여 말하면 우리 사회가 企業活動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問題(外部性)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체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뿐이다. 즉 現代企業과 우리가 안고 있는 社會問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論議될 수 있다.

첫째는 아주 단순한 論理지만 企業도 外部性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는 예를 들어 公共機關에 의한 公害規制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면 企業 스스로 자주적으로 規制方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것에서부터 企業活動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都市問題·人種問題·教育問題 등과 같은 社會問題에도 공헌할 바가 있다는 積極的인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둘째는 企業投資의 私的 部門과 公的 部門의 均衡에 관한 문제이다. 앞에서 지적된 外部性의 처리나 公共財의 配分 등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社會가 갖고 있는 체제는 너무나도 빈약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現實과 理想에는 커다란 괴리(the real-ideal gap)가 존재할 뿐더러 現代 產業社會의 根本問題가 되어 버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公共部門에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資源의 투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셋째는 보다 巨視的인 문제접근 방식으로서 資本主義 經濟制度의 歷史的 矛盾에서 企業의 社會的 意味를 파악하려는 接近方法(radical approach)이다. 즉 資本主義가 가져다 준 經濟的 滿足을 企業이라는 經濟活動이 가져다 주는 福祉라고 생각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다 근본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人間이 갖는 人間性(personality)이나 選好度 등은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社會的 脈絡에서 형성되는 內生的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갖는 消費者 主權 따위는 企業이 판매촉진 활동이나 다양한 社會的 문맥을 통해 조작한 虛構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企業이 갖는 社會的 意味가 중시됨은 물론이다.

3. 最近의 企業批判 論議의 초점

최근의 企業批判의 논의에서 일보 진전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實證的 分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大企業의 經濟的 權力을 「經濟的 構造와 成果를 전체적으로 잘 형성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러한 능력은 도대체 무엇을 토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經濟集中은 어느 정도 진행하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市場 支配力으로 되는 것인가?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現代의 政治體制가 大企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政治的 影響力은 다른 社會的 集團, 예를 들어 勞組·農業團體·醫師會 등의 政治的 壓力과 어느 정도 다르며, 따라서 實質的으로 어떤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

앞서 요약한 企業批判에 답하는 형태로서 現在의 大企業을 논하려면, 이러한 基本問題에 있어서의 實證的 論議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企業 權力의 원천이라고 생각되는 產業의 集中에 대해서 말하자면 美國·日本과 같은 나라에서도 모두 수년 전부터 集中度에서 약간의 상승경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資本主義 最近 百년의 경향을 보면 특히 최근에 들어서 企業의 集中이 진행하여 獨占化가 촉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企業集團의 政治的인 힘에 대해서도 다른 壓力團體의 강화나 소비자집단·시민집단 등의 새로운 힘이 등장하는 가운데에서 企業의 힘이 특히 강화되어 왔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企業의 政治的인 힘은 相對的으로 저하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市場經濟에 있어서는, 市場에서의 消費者의 選好가 나타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利潤動機를 유인으로 하여 생산물을 만들고, 價格을 지표로 하는 市場機構에 의해 需要와 供給을 조절한다. 이러한

資源配分の 방법은 그것이 파레토 最適의 의미에서 최적의 資源配分을 결과한다는 면에서, 또 價格이라는 指標에 모든 정보를 집약시킨다는 情報效率의 측면에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앞서 언급한 비판들 속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市場機構를 經濟體制 속에서 어떻게 위치시키고,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제어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市場機構를 제외한 經濟體制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가능한 체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그것 자체를 직접 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市場機構의 役割을 재평가하고, 그것을 통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企業의 存在方式을 밝힐 것이다.

市場 失敗가 발생할 때, 市場을 대신하는 기구로서 등장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組織」이다. 「組織」이라는 것은 「애로우」(K.Arrow)에 따르면, “價格體制가 失敗한 상황에서 共同的 行爲의 利益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마치」(March)와 「사이몬」(Simon)류의 組織論에 의거해서 말하자면, “어떤 특정의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誘引과 貢獻의 체계”이다.

企業도 분명히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市場機構라는 바다 속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섬과 같은 企業이라는 組織에게도 市場의 失敗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社會問題의 해결은 본래 企業 이외의 組織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영역에 企業의 힘이 미치는 것은 基本的으로 부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大企業 속에 포함되어 있는 醫療, 保健, 厚生, 住宅, 教育 등의 社會的 활동은 그것이 企業의 본래의 活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特殊한 의료보건 서비스, 特有한 기술교육 등을 제외하고는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 3 節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관한 論議

1.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贊成論

企業이 社會的 責任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이러한 태도가 社會는 물론 企業에게도 결국에는 이익이 된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 이러한 관점은 企業이 취할 수 있는 '세련된 利己主義'라고 할 수 있겠다¹⁾.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具體的 논거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한 여러 구체적 논거들은 우선 國民의 慾求와 期待의 變化라는 時代的 狀況을 배경에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公衆의 욕구(public needs)가 변화함으로써 企業에 대한 社會的 期待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企業을 社會와 調和시키기 위해서는 社會的 責任意識의 증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자체가 깊고 광범위한 社會的 變化의 결과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배경 위에서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正當化하는 논리를 크게 세 類型 즉, 1) 道德的 次元 2) 企業의 利益 3) 社會 內의 相互依存性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道德的 義務를 強調하는 見解

이 견해는 企業의 책임 있는 행동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므로 社會的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이 주장은 企業이라는 組織이 個人과 마찬가지로 倫理的 行動의 主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즉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社會의 構成員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企業도 社會構成員이므로 당연히 그 社會의 도덕체계를 지키고

1) 이하의 정리에 대해서는 金正泰, 「企業은 社會的 責任을 負擔하는가」, 『企業法의 現代的 課題: 熊索 李兌老 敎수 회갑기념 논문집』, 1992 參照.

다른 構成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責任 있는 行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社會的 責任이 企業에게도 利益이 된다는 見解

이것은 長期的 利潤追求의 관점에서 보면 社會的 責任을 부담하는 企業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견해이다. 비록 社會的 責任의 수행 때문에 短期的으로는 높은 費用을 부담할지 모르지만, 長期的으로는 그런 費用을 훨씬 능가하는 여러 이익이 企業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런 長期的 利潤을 가능케 하는 要因으로는 첫째, 社會的 責任을 부담하는 企業에 대해 社會的 이미지가 제고됨으로써 훨씬 많은 顧客을 確保할 수 있고 보다 良質의 勞動力을 雇用할 수 있으며 資金의 貸出이나 株式의 販賣 등에서도 유리하게 되는 등 그 企業의 營業活動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 둘째, 스스로 社會的 責任을 적절하게 부담하는 企業에 대해서는 政府에 의한 企業自由의 規制가 緩和됨으로써 政府規制에 의한 각종 經濟的 費用과 의사결정의 非效率性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企業들이 社會的 責任을 積極的으로 부담하여 그 사회가 건전하게 發展해나가는 데 기여한다면, 社會發展의 자연스런 결과로서 企業들의 生存과 成功의 可能性은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결국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따르는 이익이 企業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 社會的 相互依存性의 增大를 強調하는 見解

企業이 社會的 責任을 부담함으로써 그 社會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때, 기업 자신에게도 長期的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위 견해는 결국 現代社會의 相互依存性의 增大에 따라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견해를 근거로 삼게 된다.

過去 社會는 社會 全般의 生活의 質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고서

도 企業이 독자적 行動方式을 택할 수 있는 단순한 체제였지만, 現代 社會는 각 분야의 相互依存度가 매우 크고 더구나 産業化의 進展에 따라 企業이 社會生活의 여러 측면에 너무나 깊게 연관되어 있어 다양한 社會問題에 대해 企業의 책임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企業이 그 원인을 제공하는 社會問題들에 대해서는 企業이 직접 責任을 져야만 할 것이다.

첫째, 企業活動의 결과에 따라 심각한 環境問題가 발생할 수 있다. 企業은 많은 自然資源의 개발과 사용의 주체이므로 企業이 社會的 責任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資源을 濫用할 때 지구 전체의 資源 사용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生産活動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많은 汚染物質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방출할 때 地球全體의 생활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企業은 社會的 責任을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 企業은 自然資源뿐 아니라 유능한 經營者와 專門技術者, 財務專門家 등 막대한 人的 資源을 가진 社會의 선도기관이므로, 이러한 훌륭한 人的 資源을 여타의 社會問題를 해결하는 데 提供하여야 한다는 論理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 오늘날 産業社會의 企業은 社會의 主導勢力 중의 하나이므로 社會의 여러 영역에 막강한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企業이 이러한 影響力에 상응하는 만큼의 社會的 責任을 져야만 影響力과 責任 사이의 균형이 성립하여 公共의 利益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企業이 그러한 社會的 責任을 부담하지 않을 때, 社會는 企業으로부터 社會的 影響力을 박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企業의 자유로운 權限 行使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넷째, 企業이 이러한 社會的 責任에 입각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많은 社會問題들을 사전에 豫防하고 기존의 문제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社會生活의 全體의인 質이 향상

될 수 있다. 社會生活의 全體的 質이 향상된다는 것은 企業의 經濟的 營業活動의 전체적 與件이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원에서도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 최종적으로는 企業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가능해지게 된다.

요컨대 現代社會의 相互依存性의 증대는 企業의 社會的 責任聯關性의 증대를 가져왔으므로, 企業은 社會的 責任을 적극적으로 부담하여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贊成論의 要旨라 할 수 있겠다.

2.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反對論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反對論도 오랜 세월에 걸쳐 대단히 강력하게 주장되어 왔다²⁾. 反對論의 논지는 贊成論의 논지와 정확히 정반대의 내용을 갖는다. 즉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 企業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社會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반대론의 요지이다.

이하에서는 反對論의 主要 論據를 크게 세 가지 즉, ① 責任主體性에 대한 의문 ② 利潤極大化에 대한 요구 ③ 社會的 責任聯關의 費用이라는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가. 責任主體性에 대한 疑問

이 견해는 企業이 社會的 責任을 지기에 적합한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 가장 근원적인 倫理學的 차원에서 볼 때, 企業의 組織이란 그 본질상 도덕적 선택이 不可能한 구조라는 견해가 있다. 組織이 아닌 個人들만이 倫理的 行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

2) 이하 反對論에 대해서는 金正泰, 前掲書와 『企業倫理』 第4章 「企業의 責任에 대한 挑戰」 참조.

에 의하면, 現實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은 個人들이 道德的 選擇을 하고 책임 있게 행동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企業은 國民에 대해 직접적인 社會的 責任을 지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公共에 까지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개발될 때까지는 企業은 社會的 行動을 삼가고 단지 市場을 통해 直接的 責任이 있는 利潤追求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견해는 企業指導者들이 사회문제를 인식,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社會는 企業과는 다른 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經濟的 利潤追求를 전문으로 하는 企業家 集團에게 社會問題의 解決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企業의 影響力이 과대하게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기업은 이미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社會的 責任까지 맡으면 社會에 대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져 社會에서 가장 強力한 制度의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이다. 社會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제도, 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企業에게 이렇게 큰 影響力이 집중된다면 企業이 社會 全體 위에 君臨하는 거대한 社會制度가 되어 중국에는 社會 全體에 큰 危險要素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 利潤極大化에 대한 要求

1) 利潤極大化를 正當化하는 經濟思想

企業에 社會的 責任을 부과하는 데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논거는 私的인 利潤極大化를 찬양하는 古典經濟學說이다. 이 학설은 企業이 利潤을 극대화하기 위해 費用을 줄이고 效率性을 增大시킴으로써 公共의 利益이 도모된다고 설명한다. 企業經營者들은 利潤追求의 유인에도 불구하고, 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격렬한 경쟁하에서 費用과 價格을 낮춤으로써 결국에는 公益을 위한 行動을 하게 된다는 것이

다. 즉 企業은 오로지 經濟的 利害關係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여타의 社會問題는 다른 社會組織에 맡겨둘 때, 社會的으로 가장 責任 있는 行動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主張을 전개한 가장 영향력 있는 經濟思想家들로는 「아담 스미스」, 「요셉 슈페터」, 「밀턴 프리드만」을 들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論議를 통해 自由市場에서의 自己利益의 추구가 社會 全體의 利益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스미스」에 따르면 社會는 ‘보이지 않는 손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즉, 社會는 獨占이나 政府의 干涉과 같은 自由市場의 窒息狀態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理論이 단순히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스미스」는 私的인 利潤追求에 총체적으로 찬성했지만, 예컨대 企業이 自己利益을 위해 獨占을 추구하게 되면 自由市場 秩序를 침해하여 公共의 利益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이지 않는 손’조차도 道德的이고 公民的인 기초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企業의 社會的 責任은 自由市場的 질서하에서 公正한 게임규칙에 따르는 利潤極大化 行動을 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슈페터」는 市場均衡의 상태를 깨뜨리고 새로운 商品, 새로운 生産方法을 채택하거나 새로운 市場을 개발하려는 企業家の ‘革新’ 意志를 강조했다.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資本主義는 進歩의 源泉을 잃게 될 것이며, 進歩도 利益도 없는 均衡상태의 惡循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슈페터」의 모델은 純粹競爭에 대한 고전적이고 정태적인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것, 즉 어떻게 순수경쟁의 상태와 資本主義의 推進力이 兩立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이러한 면에서 企業家에 대한 「슈페터」의 思想은 「스미스」의 思想을 더욱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밀턴 프리드만」은 利潤動機를 옹호한다는 점에서는 「스미스」와 닮았지만, 「스미스」가 일차적으로 個人에 대해 적용한 이론을 企業에 까지 적용한다는 점, 그리고 企業이 社會的 責任을 거부하는 利潤極大化 政策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미스」에게 經濟學과 倫理學이 하나였다면, 「프리드만」에게서 그 둘은 엄격히 分離된다. 이런 강한 結論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만」의 主張의 대부분은 「스미스」의 假定과 연결되어 있다. 企業經營者는 道德的 責任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는 企業의 效率性을 저하시키고 결국 企業을 破綻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自由經濟下에서 企業에게는 공정한 게임규칙에 따라 資源을 활용하고 自己利益을 증진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社會的 責任은 없다는 것이다.

2) 效率性的의 低下

利潤極大化의 요구를 내세워 企業이 社會的 責任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논의는 企業을 社會的 責任과 연관짓게 될 경우, 企業家의 關心이 分散되어 혼란을 가져오고 효과적으로 經營活動을 遂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제적 利潤追求와 社會的 目的을 한 데 묶음으로써 企業內部的 葛藤과 目標의 混沌으로 인해 效率性이 크게 低下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대를 갖게 되는데,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企業 이미지가 손상되어 企業이 效果的 機能을 발휘하는 데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논지는 贊成論에서 이야기한 長期的 利潤極大化에 대해 다른 側面을 보여준다. 앞에서는 社會的 責任의 부담이 長期的으로 企業에 이익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企業活動의 效率性을 저하시켜 長期的 利潤極大化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3) 自由와 所有權의 保護

利潤極大化 요구를 이유로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해 반대하는 論議 중에는 自由와 所有權의 保護에 대한 義務論的인(deontological)

주장도 있다. 첫째, 企業家가 社會的 責任을 이유로 어떤 제품을 生産, 販賣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消費者의 選擇의 自由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企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結社의 權利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러한 結社의 權利에 따라 企業을 構成하는 株主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企業政策을 추구할 수 있다. 企業에게 社會的 責任을 부담하라는 요구는 이러한 結社의 權利에 대한 제한이므로 부당한 것일 수 있다. 셋째, 어느 企業은 그 株主들의 所有物이므로 그 企業에게 어떤 社會的 責任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企業株主들의 所有權에 대한 侵害라는 것이다.

다. 社會的 責任聯關의 費用

기업이 社會的 責任을 부담하게 될 때, 그러한 부담에는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 비용이 순수하게 企業이 부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이 되면, 실제로는 企業이 製品價格을 인상함으로써 결국 消費者에게 그 비용을 轉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反對論者들은 만약 사람들이 社會的 責任에 따르는 비용의 크기를 알고 그 實質的 負擔者가 자신들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아마 企業에 대해 社會的 責任을 요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社會的 責任을 부담하는 企業이 별반 社會的 責任을 지지 않는 다른 나라의 企業과 國際市場에서 경쟁한다면, 당해 企業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國際收支 惡化, 雇傭 減少 등 社會的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企業倫理의 基本的 問題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贊成과 反對 논의는 각각 나름대로의 合理的인 論據를 갖고 있다. 이것은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라는 문제가 매우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어서 一面的인 判斷과 一面的인 解決策을 가지고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앞 序論에서 우리는 社會의 發展에 따라 企業이 단순히 私的인 利潤追求의 狹隘한 觀點만이 아니라 社會構成員으로서의 積極적 責任意識을 자각해야 하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일면적 강조가 오히려 企業과 社會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위의 論議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贊成이나 反對나 라는 틀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企業과 社會 양자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적절한 限度를 정하고 企業의 社會的 活動의 올바른 方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方向摸索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본적 문제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³⁾.

가. 法律에 의한 政府規制와 그 限界

法이 企業의 倫理性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현존하는 法的 規制의 수단들은 확실히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제고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政府는 企業이 자기이익만을 추구하여 汚染물질을 방출하는 데 대해 法律으로써 제한을 가하여 環境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自由市場的 秩序를 침해하는 不公正 去來를 방지하기 위하여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 있고 公正去來委員會라는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法律에 의한 政府規制는 企業의 倫理性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法律에 의한 規制는 그 한계를 벗어날

3) 이하의 논의에 대해서는 『企業倫理』 第8章 「企業倫理의 提高: 基本的 問題들」, 第9章 「企業의 倫理: 提案」을 參照.

수가 없다.

첫째, 法은 標準化된 一般的 規則에 의해 적용된다. 그런데 標準化된 規則이란 모든 사안들, 모든 경우들에 대해 정확히 들어맞도록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非道德的 행위가 법망에 걸리지 않고 許容될 가능성이 常存한다.

둘째, 法은 보통 否定的 言語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고 規定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形式性 때문에, 法은 용납할 수 있는 行爲의 최소기준은 규정할 수 있지만 결코 진정한 倫理性을 적극적으로 提高할 수는 없다.

셋째, 法은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 非正常的인 環境을 미리 豫想하여 措置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法은 사건들을 예상하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뒤따라 나타나고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問題의 發生과 그 問題에 대한 法的 통제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시간 차이가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規制와 效率性 사이에 葛藤이 존재할 수 있다. 企業活動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企業活動을 규제하려면, 규제를 하는 사람이 企業의 問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적절한 規制原則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상에서 말한 法的 規制의 한계가 法的 規制가 사라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法的 規制는 적절한 한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그러한 規制의 限界를 補完해줄 수 있는 다른 裝置가 필요한 것이다.

나. 企業內部로부터의 變化

法的 規制가 企業 外部에서 企業에게 규칙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企業 內部에서 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倫理性을 적절히 제고할 수 있도록 企業內部를 변

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組織構成員들간의 權力移動 方案

企業組織에서 構成員들간의 권력을 이동시킴으로써 또는 權力의 相對的 比率를 변화시킴으로써 企業行爲上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상이한 위치에 있는 組織構成員들은 상이한 이해관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權限을 서로 다르게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계층의 사람들 사이의 權力이 移動되면 企業의 意思決定과 활동이 수정되게 될 것이다. 企業 內에서 이런 방식으로 利害關係를 調整하기 위한 방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企業民主主義

이것은 현재 企業改革運動에서 가장 일반화된 운동 중의 하나인데, 그 내용은 經營者에게 集中된 권한의 일부를 株主들에게 이전시킴으로써 企業 全般에 걸쳐 倫理的 統制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小數株主들이 大企業들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모든 大企業의 倫理的 基準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議決權을 지닌 株主들이 민주적으로 기업을 통제해야 한다는 思想은 企業이 政治的 시스템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한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政府의 權力構造와 같이 기업의 權力構造도 民主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株主들에 의한 企業統制와 民主主義的인 政治統制가 유사하다는 이러한 가정은 과거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政治的 民主主義는 1人 1票를 의미하는 것이지 1株 1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 民主制度에서 시민들은 全體 社會의 富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하려고 투표하는 것으로 가정될 수 있지만 동일한 假定이 企業에도 適用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企業民主主義에서 株主들은 기업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중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株主들이 복잡한 管理的 意思決定까지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企業

民主主義에 대한 이런 비판들 때문에 企業民主主義의 지지자들은 株主統制의 修正된 形態를 모색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 理事會 構成員들간의 權力移動

經營者로부터 株主들에게 權力을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집단에게 權力을 이전시켜 좀더 바람직한 代案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理事會 構成員들 사이에서 權力을 이동시키고 理事會 構成員이 아닌 사람들에게 理事會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등 여러 제안이 제시되고 있다. 즉 經營者도 株主도 아닌 '外部理事'들의 수를 증가시키자는 제안이 있었고, 從業員·消費者·政府, 그리고 一般大衆의 代表者에게 理事職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있다.

이런 방안에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企業의 理事會가 企業 전반에 걸쳐 最小限의 統制權限만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재구성된 理事會가 企業行爲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理事會에 주어진 名目的 權限이 實際的 權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外部理事들은 企業의 經營活動에 門外漢으로 남아 있으며 단순히 內部理事로부터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外部理事들은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專任 外部理事를 두는 것은 어떠한가? 법률학자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Stone)은 公共理事로서의 專任 外部理事를 두는 방안, 公共理事의 역할에 대해 상세한 제안을 했다고 한다⁴⁾. 公共理事의 역할은 企業 內外部에서 倫理的으로 민감한 情報를 蒐集하고 政府와 企業間 接觸을 주선하며 기업의 행위가 法에 抵觸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스톤」의 제안은 앞에서 말한 外部理事의 문제점을 일정하게 개선하는 長點을 갖고 있지만, 公共理事制度에 따르는 不利益의 창조 가능성, 生産的 效率性的의 저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또 公共理事制度上 公共理事

4) Christopher Stone, *Where the Law Ends*, 1973.

는 政府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래의 이상이 모두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企業의 經營過程에 모든 利害關係者 集團을 참여케 하자는 제안도 있다. 즉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株主의 資格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理事會에 參與하게 하자는 것이다. 즉 企業 理事會에 종업원, 소비자 및 일반 공공대표자 이외에도 시민, 특별한 이해관계자 집단, 공급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의 장점은 企業의 모든 利害關係者 집단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어느 한 集團의 利益이 다른 集團의 利益에 우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企業 理事會에 참여하는 代表者들을 선출하는 제도, 절차를 확립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서술한 모든 방안들은 지금까지 인식되지 않았던 利害關係者 集團들을 인식하는 면에서 企業의 現存 權力의 배분을 통해 명백한 윤리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제안들은 동시에 非效率性과 誤用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企業內部規定의 確立

企業改革의 또 다른 방안으로는 企業內部的 규정, 즉 개선된 企業 行爲를 수행하기 위한 政策이나 規則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 시도는 개인들간의 權力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企業側에서는 규칙·정책·준칙 및 지침들을 제공하려 하고 企業의 종업원들은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內部規定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다.

가) 指 針

成文化된 指針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成文化된 指針이 공식적으로 意思疏通될 수 있고 具體化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行動을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바람직하지 못한 行動이 발견되었을 때 쉽게 制裁措置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지침은 個別企業들이 경제적 불이익 때문에, 倫理的 행위를 장려하고 낮은 收益性을 요구하는 지침을 실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美國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1950年代 이래 모든 競爭企業들이 공유하는 產業別 指針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행해져 왔다고 한다. 政府가 많은 종류의 企業의 營業行爲를 統制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統制를 산업계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產業別 指針은 장점을 갖는다. 즉 產業別 指針은 政府에 의한 規制보다도 企業들에 의해 선호될 것이다.

그러나 產業別 指針은 企業들이 그 指針에 복종하게 하기 위한 誘引을 提供해야 하고 倫理的 共感帶를 형성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으며, 종종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또한 產業別 指針은 자기 산업의 이해관계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全體 產業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직면할 경우 그 客觀性이 약해지는 면도 있다.

나) 政策報告書

企業內部規定을 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업의 政策報告書를 작성하는 것이다. 指針에 비해 政策報告書는 막연한 경향이 있으며 특정 원칙보다는 企業의 이미지나 기풍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解釋上의 問題點이 존재할 수 있지만, 政策報告書 자체만으로도 企業의 經營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政策報告書의 문제점은 指針의 문제점과 유사하다.

다) 指針이나 政策報告書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 企業의 倫理的 行爲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節次가 시행될 수도 있다. 그러한 절차로는 ① 定規化된 公示政策의 실시, ② 社會的 監查政策의 실시, ③ 새로운 報告政策의 실시, ④ 倫理的인 美德에 대한 補償시스템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3) 經營構造의 變更

企業倫理를 개선하기 위한 세번째 제안은 企業構造를 變更시킴으로써 企業의 行爲를 변경시키려는 시도이다. 이 제안은 企業의 意思決定過程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조직구성원들간 權力移動 방안과 비슷하지만, 意思決定構造 자체를 변경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이런 方法 중의 하나는 표면화된 倫理的 要求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部署를 設立하는 方法이다. 예컨대 製造過程에서 방출되는 汚染物質을 處理하기 위한 安全部署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 다른 方法으로는 단순히 社會的 責任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립하는 것이다. 企業의 權力 中心인 理事會를 재조직하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理事會에서 勞動委員會를 分離시키고 이 委員會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企業의 倫理的 行爲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이상에서 정리한 모든 제안들이 企業의 倫理性을 提高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先驗的이고 抽象的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具體的 事例를 통해 경험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第 4 節 日本式 企業主義의 構造

1. 株主支配로부터의 企業의 獨立

株式會社의 주인이 株主라는 것은 日本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단순한 法律上의 概念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社會적으로 일본의 企業은 從業員의 結合體라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가. 적은 同族企業과 株式의 相互保有

다른 나라들과 달리 日本의 경우, 大企業에 관한 한 일부의 업종을 제외하면 同族會社는 극히 적다. 美國이나 유럽과 비교하여 그 비율

은 뚜렷이 적고, 株主로서는 年金基金, 商業銀行의 信託部, 投資銀行·生命保險 등의 소위 機關投資家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동안 年金基金은 오일머니를 능가하여 세계최대의 투자가로 되었고, 1980年 末 總額은 7천억 달러를 넘어 美國産業 주식자본의 3분의 1 내지 5분의 2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다.

美國企業은 오로지 投資收益率 등의 財務的 觀點에 의해 그 업적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美國企業은 資本의 合理性이라는 관점에 투철한 경영정책을 편다고 할 수 있다. 日本에 있어서도 대개 발행주식의 70%는 기관인 法人에 의해 소유되므로, 표면적으로는 美國企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의 株式의 法人所有에서 보여지는 특색은, 거래관계에 있는 事業會社나 金融機關의 관계에서 서로 株式을 보유하는 소위 「株式의 法人相互保有」이다. 이것은 美國의 機關投資家에 의해 企業이 資産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관점에서 他企業의 株式을 취득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른 企業에 自社의 株式을 취득시키는 것이 「安定株主工作」 혹은 「(주식)을 끼워넣기」라고 표현되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듯이, 相互保有의 실태는 「끼워넣어 합하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래는 株主가 企業을 選擇하는 것이지만, 日本에 있어서는 반대로 企業이 株主를 선택한다. 게다가 法人株主는 株主總會에서의 議決權 행사에 있어서도 100% 가까이 백지 위임장을 제출한다. 이처럼 相互保有關係에 있는 法人株主는 經營의 내용이나 配當에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企業의 經營意思에 충실히 따른다. 安定株主工作을 진행시키는 企業의 주관점 동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自社의 發行諸株式의 과반수가 그 같은 株主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經營이 資本의 의사로부터 사실상 獨立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의 日本 企業의 실태인 것이다. 이 같은 (日本)기업의 실태는, 경영자의 책임 관념이 주로 株主에게 향해지고 높은 투자수익률을 실현하지 않으면

그 지위를 보전할 수 없는 美國企業의 상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 株式會社 諸制度의 形式的 機構化

株式會社에는 所有와 經營의 분리를 전제로 하면서, 株主가 企業을 컨트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株主總會, 取締役會, 公認會計士制度, 監査役制度는 모두 企業經營을 株主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株主의 이익에 반하는 經營者의 행위를 체크하고, 株主의 의사를 經營에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들의 어느 것도 日本에 있어서는 法律이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능하지 않는다.

歐美的 그것과는 달리 日本에서의 株主總會는 주지하는 바대로 거의 무기능화되고 있다. 總會의 소요시간을 보더라도 東京·大阪·名古屋의 각 證券取引所 上場會社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4분의 3의 기업이 總會를 20분 이내에 끝내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거기에 30분 이내에 종료하는 企業을 합하면 95%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委任狀 出席株主의 持株總數가 全出席株主의 持株總數에서 접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회사는 全回答會社の 80%를 넘고 있다.

理事會도 또한 형식적인 기구화되고 있다. 美國企業의 약 80%에서는 대주주인 기관투자자가 보낸 社外重役(Outside director)의 수가 사내중역의 수보다 많다. 美國의 사정에 대해서 과도한 단순화는 피해야겠지만, 日本과 비교한다면 經營者(엄밀히 말하면 소위 「受託經營者」= 理事會와 구별되는, 經營을 집행하는 經營者)의 株主로부터의 獨立性이 몹시 낮다고 할 수 있다. 美國에서는 理事會가 經營에 개입하는 경향이 근년에 이르러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또한 근년에 經營者의 經營政策上의 과실 또는 태만에 대해 株主로부터의 經營者에 대한 訴訟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때문에 미국 大企業의 1천 개 社의 重役의 95%가 賠償金支拂에 대비하여 「企業役員責任保險

(Office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美國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株主의 압력을 받는 정도에 있어서 日本의 經營者는 매우 다른 환경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日本에서는 理事는 일상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社長의 부하에 지나지 않고, 인사권도 실질적으로 사장이 장악하고 있다. 본래 代表理事는 理事會의 감독을 받고 그 결정을 충실히 실행하는 存在에 지나지 않지만 現實에서는 그렇지 않다. 日本의 企業社會의 상식으로는 그들은 사장의 부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監査役 또한 사장의 부하에 지나지 않는다. 監査役의 기능이 거의 有名無實化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日本에서는 商法上에 어떤 규정도 없는 社長, 副社長, 專務, 常務 등 소위 「企業內 官僚機構」상의 지위가 社內에 있어서 압도적인 重要性和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株主의 利益을 지키기 위하여 企業內部로부터 經營을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諸機關들은 '株主支配의 消失 = 所有의 無機能化'가 진행됨에 따라, 內部的인 지위를 보이는 稱號와 같은 것으로 轉化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 株主支配로부터의 企業의 獨立

日本의 大企業은 株式會社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서로간에 株式을 보유하고 있는 企業間에서 企業과 株主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본래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 ① 株主가 企業을 選擇하는 것이 아니라 企業이 주주를 선택한다.
- ② 株主가 企業을 支配하는 것이 아니라 企業이 주주의 의사를 지배한다.
- ③ 企業이 資本의 所有에 기초한 支配로부터 거의 완전히 獨立하는 데 이르고 있다.

④ 그 결과로서 日本의 企業은 株主의 利益을 경시하고 配當을 단순한 자본코스트로 고려한다.

⑤ 내부적으로도 株式會社 諸制度는 거의 완전히 형식적 기구화되고 있다⁵⁾.

日本의 大企業은 제도적·법률적으로는 株式會社이지만 그 經濟的 實體에 대해서는 도대체 株式會社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世界的으로 보더라도 日本의 企業은 資本主義 企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日本企業은 法制度和 經濟的 實體가 상당한 괴리된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특이한 日本企業과 그 같은 企業을 중핵으로 하는 특징적인 日本의 經濟體制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概念이나 說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西山忠範氏인데, 그는 企業의 支配構造에 대한 分析 위에서 日本經濟體制는 이미 資本主義는 아닌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日本의 企業은 安定株主工作이나 法人相互保有가 진행됨에 따라 그 결과로서 資本主義 企業과는 다른 것으로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시도하기 이전부터 이미 달랐던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資本主義 企業이라면 株主支配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동력은 다른 데서 찾아져야 마땅한 것이다. 적어도 그 背後에 있는 것이 질문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日本의 체제가 본래적인 資本主義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되었다는 것, 즉 이미

5) 日本企業의 經營이 大株主의 강력한 支配를 받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英國과 美國의 경우 지배주주가 없고 株式所有가 分散되어 있으므로 經營이 사실상 더욱 자유롭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經營의 自律性의 척도는 단순히 支配株主의 존재유무에 의하기보다는 株式保有者들과 經營者 사이의 相互關係에 의존하는 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日本의 경우에는 株式의 相互保有는 특정기업의 지배와 經營권 획득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統合에 더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상호 감시체제가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상호의 自律性의 인정이 매우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資本主義가 아닌 것으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는 그 특이한 체제의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다이나믹스」(dynamics)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內在的으로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2. 勞動者의 變質

株主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發言力도 작은 데 비해, 기업의 從業員(社員)은 완전히 반대이다. 從業員 集團은 歐美企業의 株主를 대신하는 日本大企業의 根幹的 部分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의 企業에서는 從業員을 한번 採用하면 倒産 등의 최악의 사태가 예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상 55세부터 60세 사이에 정해진 停年에 이르기까지 해고하지 않는 소위 終身雇傭制와 勤續年數에 따라 從業員의 급여 및 지위의 면에서 처우가 후해지는 소위 年功處遇制가 관행으로 되고 있다. 終身雇傭制는 勞使 모두에서 일치하여 유지하고 있다.

終身雇傭制와 年功處遇制는 그 어느것도 法律에 의해 정해진 제도도 아니고 企業과 從業員間에 계약에 의해 정해진 사항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慣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 관행이 대개 그렇듯이 오늘날에는 일종의 社會的 規範性을 가지는 데 이르고 있다.

두 가지 雇傭慣行이 초래하는 직접적 효과와 그것이 광범하게 社會一般에 보급됨으로써 생기는 2次的인 規範意識에 의해, 日本의 企業과 從業員의 사이에는 長期的으로 安定的인 關係가 생기는 것이다.

가. 從業員에 의한 企業리스크(risk)의 負擔

企業과 從業員의 사이에 기본적인 이해의 일치가 생긴다. 企業側

으로부터 본다면, 토지·원재료와 같은 다른 생산요소와는 달리 從業員은 간단히 交替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나 모랄(moral)의 유지, 향상에 중대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從業員側으로부터 본다면, 企業이 발전한다면 給與나 포스트(post), 福利厚生의 면에서 소위 企業의 對外이미지의 상승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메리트(merit)를 누릴 수 있다. 年功處遇制는 일정 정도 처우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것에 의해 企業의 運命을 개인의 운명에 直接的으로 결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從業員에 의해 企業이 존속한다는 것은 그들의 財産인 「年功」이 보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從業員側에서 본다면 企業의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從業員에 의한 企業리스크의 부담은 그 외의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 가중되고 있다. 退職給與充當金은 그 중의 하나이다. 또한 日本의 企業은 大企業으로 되는 만큼 社員에 대해 풍부한 福利厚生對策을 갖추고, 社員은 단지 그 企業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社外의 사람이 향유할 수 없는 생활상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보너스는 經營成果의 分配로서 夏季와 年末에 從業員에게 지급되는데 그 총액은 平均 定期給與의 4개월분에 달하고 있다. 보너스는 從業員의 리스크부담 기능을 給與制度上에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의 從業員은 지위의 면에 있어서도 企業經營上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企業이 발전하면 役職者의 地位가 올라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日本企業에서는 지위가 올라가더라도 外部의 人材를 스카우트하여 그 자리에 앉히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

日本의 社員의 企業에 대한 충성심, 즉 歸屬意識이라는 실체는 그러한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企業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社員이 스스로의 이해관심의 연장선상에

서 그러한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歐美의 勞動者와 日本勞動者의 企業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그러한 양자의 객관적 조건의 차이, 즉 企業리스크를 부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인데, 따라서 누차 말했던 바와 같이 歐美人의 「個人主義」, 日本人의 「集團主義」 등의 精神的인 特性을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나. 從業員 集團에 의한 企業支配

從業員이 企業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에 의해 企業經營에 주체적 關心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日本企業이 企業經營의 여러 가지 국면에서 社員의 광범한 參與를 인정하는 기반으로 된다. 우선 日本企業에서는 經營者 자신이 從業員 出身인 경우가 많다. 世界的으로 보더라도, 日本의 大企業처럼 일개사원으로서 그 會社에서 캐리어를 시작하고 장년의 근무 후에 선발되는 社長을 위시하여 幹部職員의 지위에 오르는 이러한 선임방법이 일반화되고 반면 外部로부터의 人才의 영입이 현저히 드문 나라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日本의 經營者는 企業의 所有者를 겸하는 開發途上國의 經營者와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株主에게 얽매어 있는 美國의 經營者와 비교해서도, 一般從業員과의 사이에 그 경험이나 이해관계의 기본적인 단절이 없다.

두번째로, 經營上의 리더십이 광범위하게 사원집단 사이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日本企業에서는 從業員 자신이 企業內部에 존재하여 企業經營에 주체적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광범한 從業員에 대하여 政策決定上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從業員의 광범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가는 事務部門뿐만 아니라 工場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後述하겠지만 거기에는 광범한 工場勞動者가 生産管理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도 있다.

세번째로는, 勞使協議制의 보급이다. 노사협약의제는 生産라인의 組立에서부터 工場의 新設, 海外進出 등 크고 작은 經營政策上의 문제와 직장환경, 안정위생, 복리후생 등 勞使間에 비교적 이해가 일치하기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는 제도이다. 日本의 경우가 制度가 經營者 자신이 勞動者의 의견을 흡수하여 經營政策에 반영하는 場으로서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日本에서는, 株主「社員」에 의한 經營參加가 法制度上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기구화되고 있는 데 반해, 從業員「사원」에 의한 經營參加가 외부로부터의 強制에 의하지 않고도 관행으로서 자연히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從業員의 結合體라는 日本企業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制度上의 외견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日本企業의 지배권은 株主로부터 從業員集團으로 移行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日本企業과 「正統的」인 資本主義와의 상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後者は 리스크를 부담하는 資本(리스크·캐피탈)의 제공자인 資本家·株主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데 반해 日本企業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勞動의 提供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 「勞動者」로부터 「企業人」으로

西山忠範氏는, 日本企業의 지배구조의 분석에 입각하여 일본의 經濟體制는 이미 勞動者 혹은 管理勞動者가 支配하는 「勞動主義」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日本의 經濟體制를 무엇이라고 부르건 간에 日本의 經濟體制의 특징을 「勞動者에 의한 지배」라고 단언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그것은 「企業리스크를 부담하는 勞動者」는 이미 본래 의미에서의 勞動者와는 동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大企業에 한정해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資本家は 사실상 企業에의 지배력을 상실했지만 그러한 상황

을 단지 「資本家が 支配力を 喪失했다」라고만 묘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西山忠範氏가 주장하는 것처럼)資本家は 企業을 지배하기 때문에, 혹은 所有에 基礎하여 權力을 보유하기 때문에 資本家인 것이고 지배력을 상실한 資本家は 資産家 혹은 投資家에는 포함되더라도 본래의 의미에서의 資本家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勞働者도 企業의 외부에서 企業에 勞動力을 販賣하기 때문에 勞働者인 것인데, 企業리스크를 부담하고 그것에 의해 사실상 企業經營의 責任을 부담하고 동시에 企業을 지배하고 있는 日本의 「노동자」는 이미 본래의 의미에서의 勞働者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분명히 日本의 노동자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다. 歐美의 勞働者는 그들의 이론상의 개념인 勞働者에 상응하는 실체가 있지만, 日本의 勞働者는 그러한 성격은 거의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勞働者는 취직에 있어서 勞動力의 판매조건보다도 企業의 經營狀態에 훨씬 더 비중을 둔다. 日本과 英國의 대기업 노동자의 就職動機를 비교하는 資料에 의하면 영국의 노동자가 賃金, 勞働條件에 가장 비중을 두는 반면 日本의 勞働者는 企業의 安全性에 가장 큰 배려를 한다. 게다가 歐美에서는 노동자가 받는 報酬는 산업별·직종별 勞働組合과 企業과의 交渉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데, 그 수준은 個別企業의 업적의 良否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日本에서는 歐美와는 반대로, 중요한 것은 기업이지 직무가 아니다. 日本의 從業員은 취직함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적어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을 하는가는 職장에 配屬된 후에 처음으로 결정되고 더구나 職種은 자주 변한다. 때때로 이전의 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을 맡기도 한다. 특히 「事務勞働者」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로부터도 日本에서는 이미 勞動力은 商品이 아닌 것, 요컨대 勞働者는 勞働者로서의 실체를 상실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勞働者의 意識形態도 그러한 상황에 상응하는 것이다. 電機勞聯 등에 의한 組合員의 意識調査分析에 기초하여 稻上毅氏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일본의 「풍요한 勞働者」는 그 照準을 블루칼라 勞働者를 합한 경우에도 역시 「手段主義的」인 勞動指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단언한다면, 블루칼라 勞働者 또한 화이트칼라 勞働者에 가깝게 「官僚制的」 勞動指向을 보다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手段主義」라는 것은 勞働者의 중심적인 생활관심이 일어나 직장에 있지 않고 勞動은 주로 經濟的 報酬를 얻기 위한 苦役으로 본다는 것이고, 「官僚制的」이라는 것은 「중심적인 생활관심이 노동에 있다라는 것」, 「地位 昇進이 사회적 아이덴티티의 원천으로 된다는 것」, 「組織에의 奉仕 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본래는 화이트칼라층에 속하는 노동지향」을 가리킨다.

이처럼 客觀的인 條件이나 意識에 있어서도 日本의 勞働者는 그다지 勞働者답지 않은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日本의 「勞働者」는 企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勞働者가 아닌 것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日本의 從業員을 勞働者라고 간주하는 것은 現實로부터 유리된 관념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資本家が 企業을 지배하고 勞働者는 企業의 외부에서 勞動力을 企業에 판매한다는, 전통적인 資本主義 企業의 構造를 전제한다면, 日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리스크부담과 지배의 기능이 資本側으로부터 勞動側으로 이동하고 資本家が 企業의 外部에 위치하고 반대로 勞働者가 企業의 中心에 위치하는 상황하에서는 이미 資本家は 資本家が 아니고 勞働者도 勞働者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하에서 「기업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에 의해 내부화된 종업원」 요컨대 社員을 「企業人」이라고 한다. 社員이라는 것이 일상용어로서는 이미

정착된 것이지만, 보통 그 말은 특정의 企業에 所屬하고 있다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거의 相應하는 말인 企業人이라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3. 企業人の 企業

日本企業은 결집된 從業員 集團이 주체적으로 그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그것을 위해 여러 단계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종업원의 광범한 참여를 인정하고, 반면 企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投資家 등의 介入을 排除하는 존재이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간략하게 사태를 표현한다면, 日本企業은 「從業員이 支配하고, 종업원을 위해 존재하는」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日本企業은 企業人の 결함체라고 할 수 있다.

가. 從業員 集團의 同質性

日本企業의 독특한 특징은 從業員 集團 내에 있어서 同質性·平等性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권의 광범위한 분산, 캐리어의 공통성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급여와 그 외의 처우면에 있어서의 평등성도 높다. 外國의 企業과 비교한 경우에 日本企業內部的의 그러한 평등성, 균질성은 정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특이한 企業體制가 形成되는 것에 의해 창출된, 말하자면 企業概念의 變化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基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나. 企業概念의 變化

歐美와는 달리 日本에서는 블루칼라 勞動者는 企業의 완전한 일부이고 臨時工·社外工을 제외하면, 企業構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블루와 화이트의 차이는 고작해야 職場의 차이, 學力の

차이로부터 생기는 장래의 승진가능성의 대소 등이고, 歐美와 같이 근본적인 단절은 없다. 블루칼라 勞動者가 企業의 內部에 위치함에 따라 企業 內에서 資本의 利益을 본래 대표해야 하는 기관도 그 실질을 상실하고 동등하게 企業리스크를 부담하는 從業員 集團에 융합되어 버린다. 日本에서 勞動組合과 經營側이 對立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勞資」로서가 아니라 「勞使」로서의 대립을 표현할 뿐이다. 「使用者」에 정확히 상응하는 표현은 歐美에서는 없다. 그것은 그 같은 대립이 실제에서는 同質인 기업인의 사이에서 관리적인 意思決定을 하는 사람들과 執行部門에 있는 사람들간의 대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日本 企業體制下에서는, 資本의 利益이 기업에 응집되고 勞動者의 利益이 勞動組合에 결집되어 양자가 대항한다는 資本主義 경제체제의 특유한 圖式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보다도 企業에 결집된 從業員 集團이 결속하여 그 집단적이익을 위협하는 가능성이 있는 外部의 존재에 대항한다는 도식이 보다 실제에 가깝다. 일본기업이 株主의 經營에 대한 介入을 극력 배제한다는 것도 企業人의 결합체로서의 본질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經營權을 지키려고 하는 企業의 행위가 從業員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株主에 대한 경계로 향하고 있는 것도, 株主의 기업으로부터 企業人의 企業으로라고 하는 企業概念의 변화를 전제하여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다. 變化된 經營責任의 觀念

株式의 相互保有에 의해 株主의 권리가 空洞化되고, 자본으로부터의 경영의 통제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日本의 企業經營은 無責任體制에 근거하고 있다는 說이 있다. 그러나 日本의 經營者가 經營에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責任觀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방향이 다를 뿐이다. 日本의 經營者는 일반적으로 從業員에 대한 책임을 株主에 대한 책임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느끼고 있고,

無配인가 解雇인가라는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면 日本의 거의 모든 經營者는 後者를 택하는, 혹은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실정이다. 責任觀念은 制度的인 책임추구의 시스템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說은 제도적인 분석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經濟社會의 현실이 반드시 제도에 의해 표현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日本企業에서는 확실히 從業員이 경영자의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지만 經營者는 경제적·사회적 관계로부터 생기는 압력을 항상 받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企業은 단순한 抽象的인 經濟機構에 지나지 않는 歐美의 企業과 비교하여 企業人이라는 人間集團의 結合體이기 때문에 훨씬 더 社會的 制度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企業에 그 같은 성격이 결핍되어 있고 유달리 다수의 기업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은 美國의 經營者에게는 제도적인 책임추구의 장치가 없으면 책임의식 자체가 생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日本을 그러한 나라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論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企業人的 組合

歐美의 勞動組合은 產業別·職種別로 조직되어 있지만, 日本의 勞動組合은 企業單位로 조직되어 企業別 組合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기업별 조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歐美의 組合은 組合員이 기업을 떠나더라도 혹은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組合員 자격을 가지고 組合員으로서의 권리를 잃지 않는 데 비해 日本의 組合員은 退職하면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잃고 또한 臨時工·社外工은 組合員이 될 수 없다. 두번째는 歐美에서는 화이트칼라는 대체로 組合에 가입하지 않지만, 日本에서는 企業의 정사원인 한 직종에 관계없이 똑같이 組合에 가맹한다. 셋째로 歐美에서는 組合社員은 개개의 企業으로부터 완전히 獨立한 專業者인 데 반해 日本에서는 企業從業員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면서 一時的으로 그 지위에 머

물 뿐이다. 넷째로 歐美의 산업별 조합은 組合費를 일괄적으로 徵收하고 그것을 각 공장이나 지방의 지부에 교부하지만 日本의 企業別 조합은 조합비의 징수방법 등 일체의 처리를 스스로 행한다.

「企業別 組合」은 終身雇傭, 年功處遇와 병행하여 日本의 雇傭慣行을 떠받치는 「三本의 主」의 하나로 생각되는 것이 一般化되어 있지만, 企業別 組合은 독립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企業이 企業人의 企業으로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日本의 「勞動組合」의 일련의 특징은 확실히 본래의 勞動組合의 방향으로서는 이상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勞動者가 결성된 조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고, 企業人의 組合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것 같다. 그렇기는 하지만 日本의 勞動組合은 일정의 지위 이상의 管理職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지만 그것은 편의적인 것이고, 日本의 組合의 본성으로부터 본다면 그들이 組合에 가입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것은 日本의 組合이 특이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職制」의 내부에 管理職과 事務勞動者를 구별할 수 있는 단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理事, 部長, 次長, 課長, 係長, 主任 등의 일련의 職位의 連鎖 중에 어떤 직책 이상이 「기업측」에서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日本의 企業 內의 실정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질문인 것이다.

組合의 行動樣式도 또한 당연히 歐美의 그것과는 다르다. 歐美의 조합은 임금을 위시하여 勞動條件에 관심을 집중하는 반면, 日本의 조합은 從業員의 이해가 소속기업에 응집되어 있음으로써 당장의 賃金보다도 企業의 盛衰에 많은 관심을 쏟기 때문에 企業의 經營政策에 중대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日本의 조합은 경영의 발전에 전반적인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경영자측과의 근본적인 이해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歐美에서는 勞使의 對立은 企業과

勞動組合의 대립을 의미하지만 日本에 있어서는 동일한 企業의 테두리 내에서 經營者와 「內部化」된 勞動者의 對立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있는 일부의 사람은 日本의 勞動者 및 勞動組合의 본래의 자세와는 동떨어진 행동양식이나 의식형태를 「企業主義」라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일본의 「노동자」가 본래의 노동자다운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企業主義」에 의한 것이건 다른 무엇에 의한 것이건 이데올로기에 의한 意識의 歪曲이 행해졌기 때문은 아니다.

마. 人의 結合으로서의 企業

日本의 企業에 있어서는 「人」의 要素가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企業은 위험부담 자본에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 企業인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본이나 여러 가지 要素를 結合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企業인은 결합되는 요소가 아니고 주체인 것이다. 企業의 내부구조에도 행동양식에도 전통적인 資本主義 企業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이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1) 人事의 重視

企業內部的의 관리수단으로서 人事管理가 탁월한 중요성을 점하고 있는 것도 그 같은 日本企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日本企業에서는 인사관리는 적어도 財務管理와 동등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이상으로 중요성을 가지며, 인사담당중역은 어떠한 企業에서도 대개 중요한 지위이다. 子會社에 대해서도, 반드시 資本的인 結合에 의하지 않고 소위 「人脈」에 의한 지배가 매우 유효하게 행해지는 것도 人의 結合으로서의 日本企業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美國의 多國籍 企業이 해외진출시에 海外 子會社의 100% 혹은 그것에 가까운 압도적인 자본소유의 우위성의 확보를 요건으로 하는 데 비해, 日本의 企業은 資本的 지배에는 그리 구속되지 않고 組織의 要所에 일본

인을 배치하여 「經營의 占有」에 의해 실질적으로 經營權을 확보하는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러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2) 過當競爭體質

日本企業 구조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企業의 政策選擇의 목적은 賣上高 등에 의해 표현되는, 企業의 長期的인 發展에 관계되는 것에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企業人으로서의 당장의 給與額보다는 오히려 生涯所得의 향상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日本の 企業體制下에서는 어떤 企業이 신기술이나 신생산방식 등을 채택하여 費用條件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勞動力은 보다 유능한 기업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 불리한 비용조건하에 있는 企業의 從業員은 마치 물질적으로 열세인 군대가 정신력의 우위에 의해 싸우는 것처럼, 예를 들면 勞動時間의 연장이나 定期昇給의 정지나 그 率의 감소 등, 勞動條件의 惡化 등을 감수하면서도 능률적인 기업에 대항하는 것이다. 企業人 集團으로서의 경쟁 상대방의 企業의 企業人 集團은 자신의 이익을, 실질소득의 저하나 勞動條件의 惡化, 승진가능성의 감소 등을 통해 위협하는 정확히 直接的인 對立關係에 있는 存在인 것이다.

3) 企業 歸屬意識의 發生

日本社員의 기업에 대한 歸屬意識도 그러한 企業體制下에서 말하자면 2차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해의 共通性, 企業人 集團內部에서의 同質性, 긴 직장생활을 같은 기업에서 함으로써 생기는 행동양식의 유사성, 이러한 것들이 같은 배에 탔다는 감각을 키운다.

4) 企業의 買收 合併의 困難性

4. 各國 企業과의 比較(資本主義企業과의 比較)

企業리스크를 부담하는 從業員이 企業을 지배한다는 독특한 체제 하에서 日本의 企業은, 歐美企業처럼 株主나 橫斷的 勞動組合에 의

한 企業外部로부터의 經營權의 拘束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企業 經營의 거의 완전한 自由를 확보하고 있다.

가. 美國企業의 經營政策

所有와 經營의 分離가 진행되고 있는 美國에서도 株主의 企業經營에 대한 압력이 크기 때문에 재무적 감각이 우월하고, 短期的으로 高配當을 추구하는 결과 경영자는, 短期的인 이익에는 결부되지 않지만 長期的으로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는 設備投資나 이노베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 美國企業의 설비투자의 소극성은 Ei 벨형 投資關數를 日本과 美國 양국에 비교한 분석에 따르면, 장래에 대한 企業家의 主觀的 割引率은 日本이 14.4%인 데 비해 美國은 19.2%이고, 설비투자의 限界 q (marginal q ratio)比率(\langle 企業價値/資本設備의 再取得價額 \rangle 의 증분)에 대한 彈力性은 日本이 14%이고 美國은 0.6%이다. 日本의 한계 q 비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기회의 발생에 대해 보다 민감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설비투자나 이노베이션 수행의 소극성은 美國企業의 「ROI중시」의 經營哲學의 폐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美國 內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美國企業이 중시하는 ROI(賣上高利益率에 資本回轉率을 곱한 것으로 각 사업에 있어서의 投資金額에 대한 年間粗利益率로서 표시된다) 그 자체는 건전한 개념이지만, 그것이 經營의 업적을 평가하는 유일한 것 혹은 至上의 것이 될 때 문제가 된다.

첫째로, 대규모적이고 장기적인 이노베이션에는 매우 높은 「不確實性」이 따른다. ROI를 投資計劃의 사전평가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하는 企業은 당연히 그러한 事業을 시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필연적으로 經營의 視野를 短期에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ROI指向에서가 아니라, 經營上의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全體經濟의 활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매우 높은 위험성을 지닌 이노베이션의 실시에 있어

서 美國企業은 企業 內의 철저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위험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企業單位 자체로서는 현명하지만, 全體經濟의 革新의 가능성 혹은 創造的 破壞의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 세번째로는, 다수의 事業戰略의 適否를 오로지 ROI라는 財務的 指標를 궁극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숫자의 배후에 가려진 生産技術, 市場開拓 등의 면에 있어서의 可能性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다. 經營은 財務뿐만 아니라 생산·기술·판매·노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현재 美國에서는 재무의 전문가가 經營分野에 군림하고 있다.

나. 經營의 制約

美國企業에서의 재무 우선의 경영자세, 근시안적인 經營哲學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美國 經營者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美國企業이 資本의 利益에 從屬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정책 이상의 體制의 問題인 것이다. 오늘날 美國企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배로부터의 자율은 아니더라도, 단기적 이익을 구하는 투자가의 강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년 美國에서는 社外 重役이 과반수를 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社外 重役의 비중이 매우 큰 監督委員會, 指名委員會 등의 重役會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美國經濟가 自由主義 經濟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국의 經濟가 自由主義 經濟體制라는 것과 기업이 經營上의 自由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政府의 統制로부터는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株主에 의한 統制로부터도 企業經營이 자유롭다는 것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所有와 經營의 分離는 기업의 활력과 자유라는 관점에 입각하면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작용을 한 면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株主로부터의 통제

에 더하여 歐美의 企業은 또 하나의 외부세력인 産業別·職種別 勞動組合의 구속을 받는다. 오늘날 勞動組合은 본래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勞動力 供給의 統制에 의해 생긴 힘을 배경으로 하여 신기술의 도입, 설비투자의 실행과 같은 경영상의 內部的인 意思決定에까지 강한 구속력을 미치고 있다. 勞動組合이 기업경영의 내부로 들어와 즉, 權力에 상응하는 責任을 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歐美의 勞動者는 企業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자신들의 特殊利益만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企業外部로부터 기업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歐美의 企業은 資本과 勞動이라는 企業의 외부세력의 특수이익에 의해 경영정책이 좌우되고 구속된다.

日本의 企業은 內部화된 企業人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經營權의 自律性, 기업의 자유가 생기는 것이다. 日本의 企業體制는 初期 資本主義에서의 企業家가 그 자신의 몸에 體現하고 있었던 「權力과 責任의 所在의 一致」를, 매우 광범한 「대중적 규모」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日本企業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의 배후에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企業은 그것을 지배하는 권력이, 客觀的인 이해상황으로부터 싫든 좋든 그 행사에 수반되는 責任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의 손에 있을 때, 더 한층 잘 관리될 터이기 때문이다.

다. 日本企業에서의 「經營의 自由」

日本의 企業은 이노베이터(innovator)로서의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創造的인 技術開發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과 日本의 企業이 우수한 이노베이터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日本企業은 우수한 창조자이고, 왕성하고 약동적인 産業的 精神의 소유자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왕성한 企業의 活力의 대부분은 日本企業이 가진 고도의 「經營上의 自律性」에 귀착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日本企業은 주주에 의한 외부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橫斷的인 産業別·職業別 組合의 壓力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리고 다음에 볼 것이지만,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정도로까지 높아진 國家의 統制로부터도(적어도 다른 많은 선진공업국에 비해서) 자유롭다. 일본기업은 그러한 自己完決的인 經營權에 기초하여 다른 利害集團의 압력을 받는 경우가 극히 적고 자유롭게 기업자신에 내재한 목적, 즉 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은 資本主義國이나 社會主義國을 막론하고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라. 從業員의 企業目的에의 結集

日本企業은 企業을 구성하는 從業員의 에너지를 企業目的에 結集시킨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진다. 그것도 從業員이 企業리스크를 부담하는 企業 内部의 사람이고 기업의 주체적인 담당자라는 日本特有의 기업체제의 산물이다. 企業리스크의 부담은 두 개의 측면이 있다.

우선 終身僱傭制는 企業의 성쇠와 個人的 직업생활상의 운명을 결부시킨다. 그리고 年功處遇制는 처우의 일정한 평등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 個人的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企業의 운명과 個人的 운명을 직접적으로 결부시킨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企業人은 스스로의 이해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체적인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日本 從業員의 勞動特性的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日本의 作業者の 노동특성의 본질적인 특징은 企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것을 主體的으로 추진하는 自發性에 있다. 규칙이나 명령에 구속되어 受動的으로 노동하지 않고 現場의 作業者 자신이, 말하자면 기업적 입장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生産의 管理에 참여하고 技術革新의 擔當者로 되기에 이른 것이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歐美의 勞動者와 비교한

日本の作業者の 특징은 그러한 主體的 參加意慾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자발성의 차이는 큰 分岐點이다. 일본의 기업인 品質의 作業者責任—제조의 과정에서 품질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라는 사상을 일반화하고 검사공정의 대폭적인 간략화에 의한 生産의 효율화와 不良品 發生率의 현저한 저하를 실현할 수 있는 것도 從業員의 自發性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歐美와 日本의 企業內 勞動特性의 차이의 배후에는 勞動하는 人間과 企業과의 관계, 요컨대 그 人間이 企業人으로서 企業의 分身으로서 勞動하는가, 企業에 대하여 勞動力을 販賣하는 勞動者로서 勞動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차이가 가로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歐美의 勞動者는 매뉴얼(職務記述書)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직무의 내용은 매뉴얼에 엄격히 규정되고 노동자는 매뉴얼에 충실히 따를 것이 요구되고 그것에 의해 勞動의 組織化가 이루어진다. 日本의 勞動者는 작업팀을 중심으로 노동한다. 從業員에 대한 교육도 많은 경우 팀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많은 작업팀에서 기능을 교육시키고 교육받은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 濃密한 人間關係가 형성되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融通性 있는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팀을 통솔하는 것은 職長이지만, 職長은 歐美의 작업반장이 非組合員의 말단관리자이고 工場 內에 별실이 주어져 上意下達式의 역할을 하는 데 비해, 管理者라기보다는 다른 노동자와 같이 현장에서 노동하는 경우가 많다. 日本의 工場의 生産現場을 支配, 혹은 支配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다면 사실상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從業員 集團이다. 日本에서는 또한 현장의 작업자가 매일 자발적으로 作業方法이나 기계의 개량에 힘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 日本의 作業者는 생산관리상의 이리저리한 개선을 提案制度나 QC써클활동을 통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현장의 작업자로부터의 제안은 日本의 대부분의 大企業에서 制度化되고 있고 그 채용률은 東證, 大證의 일

부 上場企業의 91.9%에 달하고 있다.

제안제도는 작업자로부터 일의 개선안을 모집하고 좋은 것에는 會社가 얼마간의 포상을 하는 제도인데, 戰後의 日本에서 作業者의 자발성을 조장함과 동시에 공장의 生産管理의 改善에 결부시키는 제도로써 광범하게 정착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동일한 직장에서 勞動하는 사람들이 소그룹을 만들고 자발적인 토론을 통해 품질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QC써클 등의 小集團活動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것도 단순한 테크닉의 문제는 아니며, 勞動者의 자발성에 의거한 직장집단 전체의 運動인 것이다. 이러한 운동으로부터 여러 가지 現場의 勞動者가 아니면 발상하기 어려운 생산관리면의 개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日本의 機械工業의 強點의 하나는 대량생산에 의한 효율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위에 需要의 多樣化에 대응하여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준다고 하는 生産管理上의 柔軟性에 있다. 이것이 多品種少量生産의 효율성에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처럼 IE도 예전에는 大卒의 엔지니어가 담당하였지만 現在의 日本 공장에서는 그 역할이 점차 현장의 작업자에게로 옮겨지고 엔지니어의 직무는 오히려 研究開發部門에 特化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日本의 「勞動者」는 그 일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歐美의 勞動者와는 企業과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日本의 「勞動者」는 企業 內에서 生産의 管理者로서의 역할이나 歐美企業에서의 技術者의 역할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겸하고 있고, 그 같은 기초 위에서 공장의 現場 레벨에서의 이노베이터로서의 기능마저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생산현장 자체가 자발적·주체적으로 生産管理의 改善을 담당한다는 것, 이것이 日本의 産業이나 企業의 「活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하나의

源泉이다.

마. 日本과 歐美의 「經營參加」의 比較

기업리스크의 부담, 작업의 조직화, 이노베이션의 실시, 이러한 것들은 「企業家職能(Entrepreneurial Function)」이라고 불리는, 본래는 資本家を 겸한 經營者인 企業家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日本에서는 그러한 기능은 광범한 從業員 集團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日本의 從業員은 기능적으로 본다면, 歐美企業에서의 기술자의 역할의 일부를 대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企業家도 겸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從業員이 企業內部的 存在로 되고 企業이 「企業人의 企業」으로 된 일본의 상황하에서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같은 것이 日本의 企業經營의 특징으로서 자주 말해지는 「全員參加의 經營」⁶⁾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물론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경영참가 노력은 있지만 그러한 형태의 참가는 日本企業에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日本의 「參加」가 그 특유의 企業構造下에서 經營의 合理性의 추구하고 결부되어 그것에 의해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실현된 것인 데 비해 유럽의 經營參加는 立法에 의해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法的 強制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資本과 勞動의 二元的인 對立關係가 극복되지 않은 유럽의 기업구조하에서는, 勞動者의 경영참가는 勞動側에서는 좋은 것이라도 經營(즉 資本)側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經營의 合理性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해가 대립하는 資本과 勞動에 동일한 발언권을 인정한다면 經營政策上의 意思決定은 필연적으로 兩者의 妥協의 산물로 되고 政策上의 整合性과 一貫性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곤란에 직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

6) 이것은 다소 슬로진으로서의 뉘앙스는 있지만 日本의 現實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된다. 유럽적인 經營參加가 經營政策에 관한 결정권을 勞動者에게 分有시킴으로써 社會集團으로서의 企業은 보다 民主化되고 社會化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企業의 본래적인 방향에 비추어 合理的인 선택인가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남는다.

문제는 權力配分의 不平等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다. 資本과 勞動의 이원적인 對立構造를 그대로 둔 채, 가령 어떠한 공평한 의사결정기구를 만들더라도 서로의 抗爭을 制度的인 場所로 옮기는 것만으로 끝나고 經營의 統一性和 自律性を 잃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유럽적인 經營參加는 勞動者에 대한 企業의 專制的인 管理方式과 그것에 상응한 勞動者의 受動的인 勞動態度를 그대로 두고서 「톱매니지먼트」(topmanagement)에 집중된 權力에 集團으로서의 勞動者가 「참가」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조직으로서의 勞動組合의 權力과 地位를 높인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개개 勞動者의 현실의 職場에 있는 하루하루의 作業의 過程에서 自由를 진정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經濟活動이라는 가장 日常的인 행위에 있어서 勞動者의 倫理觀에 호소한다는 것은 永續的인 效果를 가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企業經營에 대한 主體的인 관심이나 責任感은 윤리의 문제라기보다는 事實의 問題이다. 責任感은 기업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에 의해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생기는 것이다.

日本의 勞動者가 責任感을 가지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自身이 損害를 보는 관계가 근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責任感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견상 그렇게 보일 뿐이고 내면적인 심리는 실질적으로 이해관심이 기초된 打算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어라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內面心理가 아니고 「行爲」이다. 日本的인 經營參加는 權力에의 참가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企業리스크를 勞動者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의해 우선 主體的인 참가의식

을 가진 소위 「內部化」된 기업인을 만들어 내고 그것으로부터 責任意識에 상응한 사실상의 決定權에의 참가가 자연히 실현되는 것이다.

第4章 金融機關과 企業과의 關係 : 所有構造를 中心으로

第1節 序 論

최근 國內外 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金融產業 改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金融改革次元에서의 金融產業 개편, 그 중에서도 金融機關과 企業과의 관계나 所有構造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金融部門의 개편차원에서만 다를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金融, 財政 및 租稅機能 사이의 조정뿐 아니라 金融政策과 產業政策間의 논리적 연결이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銀行의 所有構造를 포함한 金融產業 改編, 銀行의 大企業株式所有 가능성, 企業의 財務構造改善 및 所有分散을 위한 銀行의 역할 등의 문제는 모두 종합적으로 취급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여러 가지 제약여건 등을 감안하여 經濟主體들이 합의할 수 있는 現實的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 政策代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金融產業은 자금의 원활한 순환과 공급을 담당함으로써 實物經濟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金融產業 改編 論議는 지난 40여 년간 韓國의 經濟發展과 金融產業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이른바 官治金融이라고 불리면서 總體的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우리의 金融產業은 政府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自生力

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官治金融'은 經濟成長戰略의 副産物이며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양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綜合的 評價를 내려야 할 것이다.

金融市場 開放에 즈음한 金融産業 改編에서는 金融機關의 競爭力 提高,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制度的 裝置의 보완, 人力 資源의 양성 등이 구체적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보다 巨視的인 안목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細部的인 개편을 수행할 주체, 金融産業의 運營主體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官治金融' 체제하에서 金融産業의 주체가 政府였으며, 그로부터 갖가지 金融産業의 비효율성이 과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國際化 시대에 걸맞는 金融産業의 發展方向을 위한 올바른 자율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문제이다.

1980년대의 市中銀行 民營化(엄격히 말하자면 民有化) 措置 이후, 주요 市中銀行들은 일정한 제약 아래에서이긴 하지만, 大企業集團에 의해 寡占的으로 소유되게 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地方銀行들과 第2 金融機關들은 이미 大企業集團의 소유하에 있었다. 金融自律化 措置가 아직 갖가지 제약 아래 놓여 있어 이들 銀行의 經營은 주로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금융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所有構造下에서는 大企業集團이 金融産業을 獨寡占的으로 지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大企業集團에게 金融特惠를 집중적으로 베풀어온 과거 '官治金融'의 폐해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마저 있어, 大企業의 金融機關 所有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한편 金融機關 所有가 분산될 경우 소위 '주인 없는 銀行'의 문제, 즉 경영 통제력의 부재, 책임경영의 부재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것이므로 大株主의 출현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金融機關의 所有를 大企業이 과점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분산하면서도, 金融經營人 市場의 육성을 통해 '주인 없는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여

市場經濟의 경쟁 메커니즘이 최대한 발휘되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¹⁾.

이번에는 최근 新經濟計劃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金融機關에 의한 大企業集團 株式所有의 문제를 살펴 보자. ‘財閥 解體’의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大企業集團의 소유 분산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널리 퍼져 있는 가운데, 특정 自然人에 의한 大企業 所有集中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 機關投資家들에 의한 대기업 株式所有가 그 대책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財界, 즉 大企業側에서는 책임 경영의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大企業이 銀行을 소유할 것인가, 銀行이 大企業을 소유할 것인가. 金融產業과 大企業集團의 새로운 관계 설정의 문제, 이것은 한국 경제발전의 功過에 대한 엄정한 평가 위에서, 새로운 經濟環境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經濟秩序의 창출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하리라 본다.

본 論文의 목적은 金融產業 改編問題와 관련된 제반여건에 대한 역사적, 종합적 검토를 행함으로써, 金融機關과 企業間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第2節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韓國經濟의 발전과 金融部門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評價를 내리고, 第3節에서는 금융개혁을 불가피하게 하는 對內外的인 상황 변화를 검토하며, 第4節에서는 金融部門과 大企業集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행할 것이다. 第5節에서는 金融部門과 大企業集團 사이의 관계와 관련되는 政府의 產業政策 方向과 財界의 입장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第6節에서는 여러 先進國, 즉 獨逸·日本·美國에서 금융부문과 기업간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일정한 示唆點을 얻고자 한다. 第7節에서는 이상의 歷史的·綜合的 검토

1) 左承喜, 1990, pp. 35~37.

토 위에서 金融部門과 企業間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具體的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일정한 해답을 내릴 것이다.

第 2 節 歷史的 眺望

1. 韓國 經濟發展의 基本的 特徵

지난 40여 년간 韓國의 經濟發展은 ‘壓縮成長’과 ‘不均衡構造’라는 두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壓縮成長’이란 韓國이 成長率, 產業構造 변화, 生産性 향상, 國際化의 진전이라는 現代 經濟成長의 네 특징(쿠즈네츠)을 압축한 형태로 나타냈음을 의미한다. 1960년대 이후 30여 년간 韓國은 日本과 臺灣을 제외하고는 全 世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高度成長을 기록했다. 이러한 高度成長을 產業構造의 면에서 살펴보면, 韓國은 農業 등 1次 產業 중심의 產業構造에서 鑛工業,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불과 20~30년만에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급속한 經濟成長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輸出主導型 工業化로서, 韓國의 경제발전은 수출 및 수입의 급격한 증가, 즉 경제의 對外依存度의 증가를 수반하였다. 그러나 韓國의 經濟成長은 물가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日本, 臺灣과는 달리, 1960~70년대 사이에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였다는 또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不均衡構造’란 위와 같은 ‘압축성장’이 ① 大企業集團, 소위 ‘財閥’의 過剩肥大, 이에 수반하는 中小企業 萎縮現象 ② 단순한 농업 비중의 감소만이 아닌, 農村經濟의 피폐와 농촌사회의 와해 ③ 높은 인플레이 및 所得分配의 不均衡 등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

다.

韓國經濟의 고도성장과 구조적 특징을 가져온 요인들로는 흔히 ① 동아시아적 문화전통 ② 그로부터 비롯되는 人的 資源에 대한 높은 투자 ③ 유리한 國際經濟環境 ④ 開發指向的인 政府의 강력한 政策 遂行 등이 지적되고 있다²⁾. 그런데 이런 여러 요인 가운데서 韓國의 經濟構造에 가장 직접적이고 可視的인 效果를 미친 것은 開發指向的인 政府의 政策이라는 요인일 것이다. 특히 韓國 金融의 특징들이 형성됨에 있어 政府의 役割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金融改革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經濟成長過程에서 金融이 차지했던 역할을 이러한 政府의 政策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왜 이제까지 우리 政府가 官治 金融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低金利의 政策金融에 의존하는 政府 主導의 資金配分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 韓國 金融의 基本的 特徵과 大企業集團과의 關係

韓國의 政府가 開發指向型 政策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60年代 이후이다. 그리고 開發指向型 정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바로 金融政策이었다. 1961년 5·16직후 군사정부는 經濟開發計劃의 추진을 위한 國家資源의 효율적 동원체제를 구축하고자 金融制度의 大改革을 단행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운영 전반을 완전히 장악하였다³⁾. 1980년대 들어서 어느 정도의 金融自律化 措置가 취해지긴 하였으나,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는 政府에 의한 금융장악의 현실은 지속되고 있다.

2) 趙淳, 1988, pp. 12~17; 宋丙洛, 1992, pp. 206~217, 379~389.

3) 5·16 이후 금융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간략한 정리로는 朴英哲·金秉柱·朴在潤, 1986, pp. 11~16; 李根植, 1989, pp. 325~337.

따라서 1960년대 이후 韓國金融의 특징은 흔히 ‘官治金融’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한국 ‘官治金融’의 核心은 經濟成長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불균형 개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國內資金의 동원과 배분을 中央執權化하는 것이었다. 成長政策으로서의 금융정책은 低金利政策과 政策金融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다⁴⁾.

先進國의 低金利政策이 通貨供給의 증대를 통해 利子率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율이 均衡利子率인 반면, 2차 대전 이후 日本과 開發途上國의 低金利政策은 政府가 대출이자율을 직접 규제하여 시장 實勢金利보다 낮은 수준에 묶어둠으로써, 經濟成長을 위한 투자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필연적으로 자금에 대한 超過需要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韓國의 경우, 예를 들면 1965년 金利現實化 조치 이후 1971년까지의 이른바 ‘高金利 政策’시기에서조차도 銀行 貸出金利는 私債金利의 절반 이하로서 銀行에서 貸出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특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80年代 중반까지 계속된 低金利政策은 政策金融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政府는 經濟成長을 主導할 수 있는 특정한 부문, 특히 輸出產業 분야에 대하여 은행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다른 경우의 貸出金利보다 훨씬 낮은 金利를 적용케 함으로써, 政策金融의 혜택을 받은 產業들은 높은 투자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결국 高度成長을 선도하는 부문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초기 經濟成長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外資導入도 政府가 銀行들로 하여금 支給保證을 하게 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과 같은 과거의 官治金融이란 수출드라이브에 의한 압축성장을 가능케 한 金融의 積極的 역할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즉 政府財政이 충분한 기능을 못 하는 현실에서 經濟成長을 위한 政府의 정책수행을 위한 주요 수단은 저금리 위

4) 李根植, 1989, pp. 337~343.

주의 정책금융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貸出金利와 預金金利間的 상대가격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던 것이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또 하나의 상대가격이 換率이다. 즉 輸出業者와 輸入業者間的 相對價格이 왜곡된 것이다. 輸出業者의 수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換率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輸入業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낮은 換率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대외부문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關稅를 인하하고 輸入을 自由化하는 정책을 택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對內的으로는 압축성장을 위한 중점지원을 위해 對內的인 금융부문의 억압이 계속되었지만 對外的으로는 貿易部門에서 과감한 自由化라는 二重의인 政策이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對內的 自由化와 對外的 自由化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金融의 세번째 특징은 금융의 초점이 消費者金融보다는 生産者金融에 맞추어져온 점이다. 즉 成長을 가속시키기 위해 消費者金融을 가급적 억제하고 가용자금을 가급적 企業에게 몰아주는 패턴을 밟은 것이다. 그 결과 企業들은 단기적인 運轉資金만 金融機關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長期的인 設備金融까지 金融機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는 資本市場의 역할을 金融機關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러한 사정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企業 입장에서조차 차입금에 대한 利子支給은 일정한도 내에서 損費處理가 인정되고, 無有償增資를 통한 직접금융에 대해서는 별다른 稅制上的 誘引이 없는 상황에서는 間接金融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企業 財務構造가 불건전하게 되고 金融機關의 貸出比重이 大企業에 집중된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다. 金融의 發展過程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經濟發展의 필요성, 부족한 자원, 특히 財政機能의 취약성, 資本市場의 未發達 때문에 官治金融이라고 불리

는 跛行的인 政策金融 중심의 金融市場 運用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0여 년간의 이러한 金融介入에는 나름대로의 正當性도 있다. 經濟發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미비했던 과거 韓國의 상황에서 金融機關의 운영을 순수한 市場競爭에 내맡겼다면, 經濟社會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金融支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한 事業들은 상당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적인 政府의 간섭이 없다면, 社會經濟적으로 덜 바람직한 부분에 더 많은 信用配分이 일어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輸出産業의 성장에 결정적이었던 外國技術의 획득과 개발, 그리고 그러한 기술이 요구하는 규모의 經濟를 달성하기 위한 大規模 投資를 가능케 한 것은 政府의 개입에 의한 정책금융이었다. 둘째로 金融介入은 情報의 부족, 政治社會의 불안, 事業의 위험도 등의 이유 때문에 銀行들이 회피하기 쉬운 長期 投資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결국 成長政策으로서의 金融政策은 금리간 격차와 특정 부문에 대한 우선적 자금배정을 통해 불균형 발전을 현실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官治金融이 經濟의 高度成長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문제는 그것이 각종 對內外的 不均衡構造의 형성이라는 또 하나의 극복해야 할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韓國經濟의 불균형구조의 핵심으로서 大企業集團에 의한 經濟力 集中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난 經濟發展의 결과, 소수 大企業集團에 경제력이 집중되었다면, 그것은 低金利와 政策金融이라는 金融政策 特惠가 경제의 고도성장을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經濟主體인 大企業集團에 집중적으로 베풀어졌기 때문이다.

大企業集團에 대한 집중적 金融特惠가 企業과 産業의 大規模化를 가져왔다는 것, 그 자체가 부정적 측면은 아니다.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고, 國際市場에서 韓國企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企業의 대규모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金融政策의 효과는 긍정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重化學工業化의 추진과정에서 보여지듯, 이러한 金融特惠는 일부부문에서 무리한 重複, 過剩投資를 가져와 자금 배분의 심각한 非效率性을 초래하였다. 많은 大企業이 끊임 없는 革新과 效率의 經營戰略으로 經濟發展을 추진하기보다는 더 많은 特惠措置를 얻기 위해 政治圈과의 癒着에 힘을 기울이고, 특혜조치로 인한 이익을 과신하여 무리한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많은 企業들이 부실화되어 198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 經濟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었다. 大企業에 대한 政策金融 특혜의 집중과 일부 大企業의 부실화에 따른 부담으로 말미암아, 건실한 經濟構造의 형성에 필수적인 中小企業의 적절한 育成을 위해 필요한 資金配分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또한 政府에 의한 金融運營 전반의 장악은 ① 貯蓄－投資 仲介機能의 비효율성 ② 投資配分과 經濟運營에 있어 金融産業의 調整者的 역할 미비라는 金融産業 自體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다⁵⁾. 金融産業에 이러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금융산업의 경영능력이 취약하며, 金融機關 자체가 부실화되었음을 의미한다. 官治金融下에서 지난 수십 년간 資金配分의 주요 결정을 정부가 내려온 탓에, 銀行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은 金融産業 자체의 利潤 極大化, 效率의 경영보다는 政府의 지시에 順應하는 經營에 쫓겨 있어, 人力資源의 양성과 각종 制度的 裝置의 구비에 매우 소홀하였다. 또한 金融特惠下에서 이

5) 金融産業의 이러한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朴英哲·金秉柱·朴在潤, 1986, pp. 135~141 참조.

루어진 企業 不實化의 부담을 銀行들이 떠맡고 있어 효율적 經營體制로의 이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요컨대 金融產業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그것은 金融部門이 實物經濟에 비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⁶⁾. 지난 30여년간의 政府主導에 의한 經濟發展 모델하에서 金融部門과 實物部門은 서로 짝을 맞추어 성장해 왔으며, 양 분야의 非效率性 문제는 하나로 얽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市場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政府의 개입이 놀라운 속도의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지만, 동시에 政府의 失敗라는 요인 때문에 갖가지 불균형, 비효율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金融產業의 改編이란 사실상 大企業集團 중심의 韓國經濟構造 全體의 개편 문제, 결국 새로운 經濟秩序의 確立問題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1980년대 이후 간간히 실시되어 온 金融自律化가 실질적인 自律化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⁷⁾, 金融市場의 개방을 앞둔 오늘의 시점에서 金融產業 改編問題는 커다란 國家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金融政策 및 규제시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이므로 과거와 같은 官僚의 감독보다는 制度改革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政府가 大企業集團을 인위적이고 직접적으로 통제하려 하는 것은 相互不信을 가져올 우려가 크며, 향후 產業政策 추진과정에서 양자간의 協力을 어렵게 할 것이다.

6) 이에 대한 지적으로는 朴英哲·金秉柱·朴在潤, 1986, pp. 131~135; 鄭雲燦, 1991, pp. 27~28.

7) 1980년대 금융자유화와 그 한계에 대해서는 鄭雲燦, 1991, pp. 40~49쪽 참조.

第 3 節 金融改革의 巨視經濟的 背景

金融改革에 관한 논의는 企業 財務構造의 改善, 產業競爭力, 經濟力集中, 金融自由化 등에 관한 논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產業競爭力의 強化 및 經濟力 集中의 완화와 관련하여 대규모 大企業集團의 所有構造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大規模 大企業集團의 所有집중이 經濟社會發展을 추진하는 社會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系列企業群의 집권적 集團經營이 經營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財務構造의 취약성이 經濟活動 후퇴국면에서 金融費用 부담을 가중시키고 經營不安을 증폭시키며 장기투자자를 제약하여 產業競爭力의 回復을 지연시킨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새로운 企業環境을 대표하는 地球化經濟라는 구도하에서도 비교적 국경이동이 잘 안되는 요소는 바로 훈련된 專門人力과 社會의 基盤施設이다. 여기서 社會의 인프라스트라ക്처가 중요하다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인력이 중요하다하는 사실은 비교적 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應變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하버드大學의 「라이시」 교수의 논리는 地球村經濟에서 國家를 구성하는 다양한 階層間의 연결고리는 희박해지고 오히려 비슷한 일을 하여 全世界의 富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묶여지는 연대감이 강조되고 富의 分配도 이 과정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같이 國家가 福祉 移轉支出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國家가 해야 할 일은 그 構成員이 全世界를 대상으로 하는 富의 創出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教育하고 訓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人力의 전문적인 자질이 우수하기만 하면 다른 나라에서 技術과 資本은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外國經營者가 國內經營者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여 附加價值가 늘어난다면, 國家經濟라는 범위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환경을 맞고 있는 것이다.

MIT대학의 「서로우」 교수나 「크루그만」 교수는 여기서 잘 훈련된 專門人力 스스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附加價值 極大化 過程에 참여하였는가 하는 동기부여 문제와 조직적인 배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必要人力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어떠한 環境 속에서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약간의 시각차이에도 불구하고 外國의 영향력 있는 學者들이 生産性和 技術問題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主要先進國이 이들의 의견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주시할 만한 사실이다.

결국 全世界的인 스케일로 진행되는 富의 創出過程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간의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이며 이의 궁극적인 해결은 동참할 수 있는 專門的인 能力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

그러자면 投資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 즉 良質의 專門人力과 社會基盤施設의 구축이 매우 중요해진다. 동시에 訓練된 人力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環境의 조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인다. 技術과 資本의 중요성은 오히려 부차적이다. 왜냐하면 國內에서 조달이 안 되면 이윤기회가 있는 한 外國에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념의 쇠퇴와 國境 없는 經濟의 進展은 이제 舊時代的인 資本家와 勞動者의 對立 혹은 政治的 엘리트의 지배와 企業엘리트의 관계와 議會民主主義를 통한 市民과의 관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全世界的인 企業經營의 글로벌화의 진전과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은 舊時代的인 편가르기 구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즉 이제는 企業 內에서도 資本家 혹은 이의 대리인으로서의 經營者와 勤勞者의 대립이 아니라 競爭會社 組織의 모든 從事員과 대립이 중요해지며, 民族國家의 相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같이

한다면 國家가 달라도 얼마든지 聯合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 점이 우리가 競爭力 強化와 衡平을 調和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즉 앞으로 점점 더 社會 構成員들은 자신의 이상과 행복의 추구하고 조직 혹은 社會의 目標나 價値가 일치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이 점은 우리 社會가 목표를 어디다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지만 구성원들의 協助와 자발적인 參與를 유도하지 않고서는 企業組織이나 社會나 競爭에서 이기기 힘들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世界經濟는 몇 개의 블록으로 급속하게 통합되고 있고 先進資本主義 모습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變化를 가져오는 동인은 무엇보다도 競爭과 여기서 生存하는 데 필요한 革新 및 生産性 增加의 필요성이다. 이 점에서 先進各國이 다투어 자기 체제를 반성하고 있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축은 자못 비장할 정도이다.

世界經濟의 기본틀이 바뀌면서 EC와 NAFTA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先進國이 원하는 대로 經濟의 基本構圖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安保上의 聯合으로 후진국의 협조를 구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막연하게 유지해왔던 友邦國 概念을 포기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生存을 위한 經濟戰爭과 競爭의 치열함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世界環境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社會主義 理念의 쇠퇴 및 計劃經濟의 붕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地球經濟의 도래, 그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쟁의 심화로 國內經濟와 國際經濟의 구별은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美國, 유럽 및 日本의 세 經濟圈은 서로 치열한 接戰을 벌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협조해야 하는 새로운 經濟秩序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유럽시장이 統合되는 1993년부터 가시화될 것

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제게임의 본질은 한 마디로 競爭과 生存이며, 여기서 중요한 명제가 企業과 國家間的 競爭力을 결정하는 요인이 自然賦存的인 要因에서 이미 人工的인 要因들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다.

운송비의 하락, 통신기술의 혁신, 그리고 經濟의 自由化와 開放의 加速化로 각국의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經濟的인 國境은 허물어져 가고 있다. 輸入自由化의 확대로 消費者에게는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生産者는 國內外市場을 구별할 것 없이 生産과 投資活動을 계획하게 되며, 기업입지도 世界市場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된다.

先進國의 大企業은 海外投資를 통해 生産, 販賣, 金融活動을 地域的으로 分散하기도 하며 外國의 다른 企業과 전략적인 提携를 통해 이른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간에 서로 이용할 수 있는 比較優位를 최대한 가동하며 傳統的인 比較優位 자체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企業도 투자대상부문과 규모 등을 결정함에 있어 施設의 立地, 資金動員, 販賣網 등을 결정할 때 韓國이라는 政治的 單位를 뛰어넘어 세계무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미 부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環境에서 企業이 차지하는 國家經濟的 위치나 政府와의 관계 혹은 企業內部的 조직문제를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發想의 大轉換이 필요하며 政府와 企業間 關係, 기업 규모확장에 따른 規模의 經濟問題 및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問題들을 다룰 때 보다 폭넓은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企業의 規模擴大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지 혹은 企業의 所有構造나 意思決定構造 즉 경영상 문제가 있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對內的으로 볼 때 새로운 經濟秩序의 모색에 대한 필요성은 韓國 經濟의 競爭力이 상실되고 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1990年代 以前에, 벌써 1980년대 말부터 다른 각도에서 제기되어 왔다고 봐야 한

다. 다시 말해서 1987년 중반 이후 일기 시작한 政治的 民主化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그 흐름의 역동상 經濟的 民主化 혹은 分配的 正義의 實現이라는 명분을 갖고 대내적 갈등구조의 완화를 바라게 되었다.

第 4 節 外國의 金融機關과 企業間的 關係

美國과 日本의 產業競爭力에 대한 最近의 한 研究(MIT의 보고서, Made in America)는 日本의 경쟁력이 우세한 원인으로서는 양국간 企業 金融慣行의 차이를 들고 있다고 한다⁸⁾. 美國企業들은 일반적으로 너무 短期的인 성과에만 몰두하는 경향, 즉 ‘짧은 投資眼目’을 갖고 있다. 이렇게 美國企業들이 ‘짧은 투자안목’을 갖게 된 원인은 첫째, 美國의 資本費用이 日本보다 훨씬 높다는 점 둘째, 日本企業들은 투자재원 조달을 주로 金融機關으로부터의 長期融資에 의존하고 있고, 金融機關과 기업간의 持續的·長期的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美國企業들은 투자재원을 株式市場을 통한 直接金融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식의 대부분을 短期的 안목으로 투자하는 信託基金, 年金基金 등이 소유하고 있어 경영자들 역시 ‘짧은 투자안목’을 가지게 된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연구에 의하면, 美·日間 경쟁력의 차이는 企業의 財務行態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무행태의 차이는 다시 企業의 所有構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經濟力 集中 緩和와 企業 競爭力 強化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產業政策 논의에 커다란 示唆點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經濟秩序의 創出이라는 큰 틀 속에서의 經濟發展이라는 新經濟의 성

8) 三星經濟研究所, 「企業財務側面에서의 美日 競爭力 差異의 原因 및 이의 示唆點」, 1992. 7.

때는 金融機關과 企業間 關係와 그 각각의 所有構造를 어떻게 정립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金融機關과 企業間 關係와 所有構造의 문제를 여러 先進國들이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獨逸, 日本, 美國의 경우 金融機關과 企業間 關係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獨逸의 銀行과 企業間的 關係

獨逸 經濟體制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銀行이다. 한 마디로 銀行은 기업수준의 문제가 政府의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社會的 裝置인 셈이다. 「앤드루 손필드」(Andrew Schonfield)는 獨逸에서는 은행이 經濟的 意思決定이 중앙집권화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社會勢力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民間部門 經濟活動에 대한 銀行의 介入이야말로 조직화된 獨逸資本主義의 핵심적 부분이다. 이 같은 개입을 통해, 民間部門의 經濟活動에 대한 집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정부의 보호나 개입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企業과 銀行間的 타협과 교섭에 의한 自律的 문제해결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獨逸의 銀行들은 이른바 綜合金融(universal banking system)이라는 이름하에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금융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商業金融, 投資金融, 綜合金融, 不動產 등 資產運用業 및 保險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獨逸銀行에게 주어진 이러한 막강한 힘 때문에 獨逸經濟를 銀行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獨逸

9) Andrew Schonfield, *Modern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企業들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公募한다든가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지 않고, 우직스러운 정도로 은행으로부터의 借入에 의존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와는 달리 獨逸政府는 銀行信用의 배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政府에서 독립된 聯邦中央銀行은 불가수준의 안정을 위해 通貨量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하지만, 이는 신용배분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相對價格의 操作을 위한 개입은 아니다.

獨逸의 주요 市中銀行은 실제로 많은 獨逸 企業의 所有權을 갖고 있고 銀行 任員들은 수많은 기업의 監査會 멤버로 참석하고 있다. 監査會가 理事會보다 기능상 덜 중요하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아 獨逸 전체 산업계에서의 銀行의 비중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다.

銀行이 企業에 대해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경로의 하나가 기업의 監査會이다. 監査會는 당초에는 株式會社 형태의 企業에서 經營者가 취한 결정에 대해 株主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해 株主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制度的 장치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獨逸企業法에 따르면 公開企業은 두 개의 理事會 즉 1년에 4번 정도 財務結果와 일반적인 政策을 검토하기 위한 監査會와 수시로 소집되어 일상적인 企業經營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常務理事會를 두도록 되어 있다. 常務理事會가 경영층의 의사결정기구라면 감사회는 株主의 의견이 대변될 수 있는 企業 內의 기구다. 一般株主가 경영자 측에 경영에 관해 책임을 묻거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年次總會 말고는 監査會밖에 없다.

監査會는 年 4회 열리고 계획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一般의으로 經營者側에게 實質的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經營者側이 주요한 投資에 관한 결정과 간부직원의 任用に 관해 監査會의 최종재가를 받아야 하고, 經營者의 보수와 임원의 選任權이 있기 때문에 監査會

는 결코 象徵的인 機構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監査會의 3분의 2는 株主들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被雇傭人, 즉 勤勞者 代表가 선임한다. 銀行은 주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實質的인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다.

獨逸의 企業法은 은행이 기업에 대해 影響力 行使를 하는 데 유리하게 되어 있다. 獨逸 企業法은 少額株主들에게 상당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銀行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가령 公開된 企業이 新株를 발행하거나 會社債를 발행해서 자본구조를 바꾸려면 75% 株主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25%의 株式을 은행이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같은 經營上의 중요한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獨逸의 委任制度가 銀行에게 또 하나의 유리한 무기를 제공한다. 銀行은 株式仲介人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어느 株主가 意思表示를 하지 않을 경우 銀行의 計定에 들어 있는 구좌만큼의 株式에 대해 代理人 資格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少額株主들은 株權行使에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종종 은행들은 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분량보다 훨씬 많은 投票株式을 보유하게 된다.

專門株式仲介人 외에 銀行職員만이 유일하게 株式去來를 증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株式去來를 위해 銀行에 가야 한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자신보다는 銀行職員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職員에게 폭넓은 裁量權을 주고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銀行은 자신이 소유한 株式 외에도 顧客이 위임한 株式에 기초한 代理人으로서 投票權을 행사할 수 있다. 銀行에 預託된 株式이 總民間保有株式의 85%이며 總發行株式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은 銀行의 企業支配力을 실감케 하는 수치이다¹⁰⁾.

10) John Zysman, *Governments, Markets, and Growth*,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그러나 獨逸銀行들이 많은 獨逸 企業의 株式를 갖고 있고 監査會에 앉아 있다는 것은 銀行의 影響力을 반영한 결과일 뿐이지 그 같은 힘을 사용하는 수단은 아니다. 銀行이 갖고 있는 影響力과 힘의 실제 근원은 보수적인 獨逸人들이 企業을 하면서 자금수요가 있을 때나 돈을 맡길 때 다른 방법보다는 직접 銀行窓口를 찾는다는 평범한 사실에 있다.

聯邦銀行은 철저히 獨逸 마르크貨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을 주목표로 삼고 있고 엄격한 反인플레이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일반 國民들은 인플레이로 인해 銀行에 맡겨 놓은 預金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銀行은 이 預金들에 대해 매우 낮은 이자를 지급한다. 銀行이 投機的 동기로 貸出할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같이 獨逸聯邦銀行에 의한 매우 엄격한 反인플레이적인 金融慣行은 外國人에게는 항상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나 獨逸人들은 매우 당연시하는 일이다.

다른 유럽國家들이 경기자극을 목적으로 金利引下를 서둘러도 獨逸의 中央銀行은 統獨에 따른 인플레이를 우려해 金利를 인상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인플레이를 진정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유럽國家들의 불평은 아무 소용이 없다. 外國人들은 왜 獨逸이 그토록 反인플레이적인 安定政策에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獨逸人들이 경험한 1923년의 하이퍼인플레이와 1948년의 通貨改革 직전의 초인플레이는 그들이 왜 聯邦은행의 독일병정식 안정정책을 지지하는가를 설명해준다.

企業의 直接金融方式에 의한 자금조달원인 證券市場은 國際的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國內證券(株式와 채권을 합한 규모)이 國內總生産(GDP)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1975년 현재, 美國이 102%, 日本이 70%인 데 비하여 당시 西獨이 43%에 불과하였다.

이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株式市場도 銀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1975년 현재 西獨 國內總債券發行의 75%가 銀行이 발행한 것

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債券發行의 기본목적은 政府財政을 위한 것이고 企業資金調達 등 다른 목적이 3%에 불과했다¹¹⁾.

獨逸人들은 오랜 동안 검약과 저축을 美德으로 알아왔고 최소한 2次大戰 이후에는 거의 모든 家計餘裕資金을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銀行의 貯蓄預金口座에 집어 넣어 왔다. 오늘날까지 이 貯蓄預金에 대해 2.5%라는 낮은 利子를 주는 경우도 많고, 預金を 引出하려면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獨逸人들은 銀行을 신뢰하고 複利利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동안 政府는 이 같은 利子所得을 所得稅 精算時 누락해도 눈감아 줌으로써 獨逸人들의 성실한 銀行去來가 계속 유지되는 데 일조를 했다. 獨逸政府가 최근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資本稅를 부과하려는 조치를 취하자마자 엄청난 규모의 돈이 인근 룩셈부르크로 빠져나가고 말았고 결국 獨逸政府는 이 조치를 취소하고 말았다.

獨逸은 기본적으로 商業金融의 나라이다. 최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어느 기업이나 한 銀行(house bank)과 거래를 시작하면 다른 색다른 資金融通方法을 시도하는 법이 없다. 심지어 大企業에서도 企業의 재무담당자는 商業어음(CP)과 같은 더 싼 상품보다 銀行借入을 선호한다. 企業들의 이 같은 金融은 銀行에 대출이자로 더 지불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保險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企業이 자금난에 봉착했을 때 去來銀行이 뒤를 받쳐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獨逸의 商業銀行이 一般企業의 公開促進을 막고 있다는 비난은 주목해 볼 만하다. 즉 비난의 초점은 銀行이 계속해서 貸出을 통해 利子收入을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銀行들은 이 같은 비난을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識者들은 진실이 두 개의 극단적인 견해 중간 어디

11) Dimitri Vittas(ed.), *Banking Systems Abroad, London*, Inter-Bank Research Organization, 1978

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大規模 銀行들은 商業金融과 동시에 投資金融까지 겸업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銀行들은 商業金融에서 다소 손해본 부분을 投資金融部分의 周旋手數料(underwriting fee)로 보충하는 것이 상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가 틀리는 경우도 많다. 대규모은행 내의 商業金融을 위한 지점관계자가 자신의 最優先顧客을 같은 銀行의 投資金融部署가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보낼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顧客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아 최상의 자문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다. 동시에 대다수의 小規模 銀行들은 投資金融業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顧客이 企業公募를 해서 자금조달을 한다면 이익은커녕 손해만 볼 것이 뻔하다.

그러나 獨逸의 企業들이 공개하지 않은 채 家族經營을 하고 있는 것을 모두 銀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부분의 獨逸 中小企業들은 가족의 전통을 이어받아 절대로 公開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公開하는 것을 마치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 銀行에서의 차입은 企業의 현재 經營狀態를 공개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또는 집안의 富가 공개되기를 꺼리는 中小企業의 所有經營者가 은행차입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덧붙여 많은 獨逸의 中小企業들은 有限會社의 형태를 띠고 있고, 獨逸의 세법이 이들 企業이 공개된 株式會社로 바뀌면 불리한 稅率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한 個人이 유한회사 소유의 빌딩을 상속받았을 경우는 稅率이 市場去來價格의 5 내지 10%에 불과하지만 공개된 株式會社의 소유를 상속받으면 財産의 총거래가격에 대해 稅金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獨逸國民들은 獨逸銀行의 힘이 막강하다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것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라는 데 동의하고 협조한다.

이 밖에도 獨逸銀行과 産業體間的 밀접한 結合關係는 銀行이 곤란

에 빠진 기업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더 촉진되었다. 資金難을 겪는 企業에 대해 銀行이 조치를 취하는 대신 銀行은 그 銀行의 株式을 수령했던 것이다. 企業으로서는 緊急融資資金보다 적은 費用으로 위기를 넘기고 호전될 때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獨逸 최대의 유통망 회사인 「칼슈타트」의 株式을 소유하고 있는 「도이체」銀行과 「코메르츠」銀行은 모두 1930年代의 大恐慌시절부터 이 企業과 거래를 해왔던 歷史가 있고 그때부터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이 流通會社는 거의 倒産 直前에까지 몰렸었다.

獨逸銀行들이 惡意的인 買收合併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즉 獨逸銀行은 保有株式을 短期賣買差益을 노리는 꾼들에게는 팔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동시에 銀行이 企業 株式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惡意的인 매수기도를 막는 좋은 방어책이 되고 있다.

獨逸式의 綜合金融業制度는 銀行들에게 너무 큰 힘을 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고 이 같은 장점은 獨逸 이외의 外國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美國에서는 한 銀行이 投資金融이나 商業金融 하나에만 영업범위를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각 銀行들은 주어진 분야에서 競爭力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점 더 細分化하고 專門化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投資銀行이 인수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銀行일지는 몰라도 만약 利率이 상승하게 되면 銀行이 보유하고 있는 資產運用計定の 債券이 묶일 경우 銀行의 자산 전체가 날아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獨逸의 銀行은 한 분야에서 세계최고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반적인 經營은 우리가 훨씬 양호하다. 왜냐하면 몇 개의 業務分野가 서로 완충역할을 해서 한쪽이 손실을 보면 다른 분야가 補填을 해주기 때문이다.”(올리히 카르텔리에리, 도이체 銀行理事會, 美 上院委員會에서의 證言, 1990년 봄)

獨逸 金融業體系가 더 우월한 또 하나의 이유로는 獨逸式의 제도가 銀行의 超過供給으로 인한 構造的 脆弱性에 대처하는 데 좋은 시스템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獨逸의 金融產業의 장점은 반드시 제도적 요인에 있다기보다는 獨逸의 銀行家들의 신중한 자세와 풍부한 경험에 입각한 運用方法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2. 日本의 銀行과 企業間的 關係

日本에서의 銀行의 株式保有는 日本 企業集團 소속 企業들 사이의 株式 相互保有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日本 企業集團은 6대 企業集團과 40여 개의 독립계 企業集團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나 6대 企業集團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銀行을 중심으로 한 株式의 상호보유도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대 企業集團을 중심으로 銀行의 株式保有를 살펴보자.

〈表 4-1〉 6대 企業集團이 日本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

(單位：%)

	從業員	總資產	資本金	賣出額	純利益
1986	4.41	13.73	14.36	14.23	12.44
1987	4.14	12.96	15.00	14.35	11.88
1988	3.95	12.84	15.54	13.62	12.27
1989	4.00	13.52	17.24	16.17	14.00
1990	4.05	15.03	17.35	15.16	15.13

資料：陳泰弘, 『銀行의 株式所有와 企業의 資金調達』, 韓國經濟研究院 研究調查資料 81-92-12, 1992. 10.

原資料：日本 東洋經濟新聞社, 「企業系列總覽」, 1992.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각 企業集團마다 主去來 銀行을 포함한 企業集團 所屬 銀行들이 있어 企業集團에 소속된 企業들은 銀行들을 통해서 상당부분의 資金을 조달하고 있고, 이들 銀行들은 企業集團 소속 去來企業들의 株式를 相互出資 형태로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

어 銀行들이 去來企業의 債權者인 동시에 大株主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企業集團 소속 銀行들이 去來企業에 임원을 파견하는 것이나 企業集團 內의 企業과 銀行들이 去來企業에 임원을 파견하는 것도 企業集團 內의 企業과 銀行의 株式保有에 관련된 중요한 特徵이다.

이제 이러한 日本에서의 銀行과 企業間 관계를 가능하게 한 制度의 현황과 변천과정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日本銀行의 주식소유 및 용자관계를 關聯統計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日本에서 銀行의 株式所有를 직접 규제하는 법은 日本 獨占禁止法 11條의 金融會社の 株式保有 條項이지만, 銀行의 株式保有가 企業集團 소속 企業들의 광범위한 株式 相互保有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株式의 相互保有에 관한 商法條項과 法人의 株式保有에 관한 독점금지법 조항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株式의 相互保有規制 측면에서 보면 <表 4-2>에서 알 수 있듯이 商法上 子會社가 自己株式의 過半數 以上을 소유하고 있는 母會社의 株式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제외하면, 25% 범위내에서 주식의 상호보유가 허용되고 獨占禁止法에서도 일정 去來分野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法人의 株式保有가 허용되어 企業集團 內의 企業들간, 따라서 企業과 銀行間의 광범위한 株式의 相互保有를 가능케 하고 있다.

銀行과 企業間의 株式 相互保有가 가능하지만, 銀行의 企業株式 소유에는 독점금지법 제11조에 의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즉 金融業을 영위하는 회사는 日本 內의 會社株式를 그 발행 총주식의 5%(보험업은 1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77年 獨占禁止法이 3次로 改正되기 전까지는 10%였으나 법개정으로 강화된 것이다.

金融機關의 企業支配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5% 所有制限이 있지

〈表 4-2〉 日本의 法人에 대한 株式所有 規制 現況

規制法	條 項	規制對象	規 制 內 容	備 考
商 法	第211條의2 第1項	株式의 相互所有	子會社에 의한 母會社(과반수 이상 출자회사) 주식소유금지	1981年 商法改正時 신설
	第241條 第3項	"	相互出資 관계에 있는 두회사 중 一方이 他方의 株式을 25% 超過所有時 그 他方 소유주식엔 議決權이 없음	"
	第211條의2 第2項	"	支分保有가 50%를 초과하면, 피보유 회사는 保有會社 株式을 처분해야 함	"
獨 占 禁止法	第9條	持株會社	持株會社의 설립금지 (持株會社란 주식소유에 의거 國內회사의 사업활동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함)	1947年의 獨占禁止法이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
	第9條의2	大規模事業會社의 株式保有總額	非金融 會社로 자본금 100억엔 이상 또는 순자산액 300억엔 이상인 회사는 그 自己資本 또는 純資産額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 소유(取得價額기준) 금지	독점금지법 3次 改正時(1977년) 신설
	第10條	會社의 株式保有	일정거래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엔 國內會社株式 소유불가 또한 不公正 去來方法에 의한 國內회사주식 소유불가	1974年의 독점 금지법：國內회사 주식의 원칙적 소유금지 1次改正(1949) ：경쟁회사의 주식소유금지 2次改正(1953) ：현 내용대로 개정
第11條	金融會社의 株式 保有	金融業을 영위하는 회사는 國內회사의 株式을 그 발행 株式 總수의 100분의 5(保險會社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1947年의 독점 금지법：保險會社도 5% 이하로 제한 2次改正：10% 로 확대 3次改正(1977) ：5%로 다시 강화	

만 실질적으로 日本의 銀行은 소유제한 범위 내에서도 企業의 意思決定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은 株式의 相互保有에 의한 광범위한 株式所有 分散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2차대전 이후 日本企業들이 戰前의 財閥과는 다른 형태로 企業集團化되는 과정에서 日本企業의 所有·支配構造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2次大戰 以前 日本企業의 株式所有는 재벌가족이 財閥本社의 株式를 대부분 소유하고 財閥本社는 지주회사로서 銀行이나 사업법인들의 株式를 소유하는 피라미드 형태로 사실상 財閥家族이 傘下企業들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財閥家族에 의한 企業의 소유지배는 2차대전 직후 美國 점령군에 의한 재벌해체로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財閥家族으로부터 沒收된 株式들은 일단 一般投資者들에게 분산, 所有되도록 방출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法人企業이나 金融機關에 株式所有가 集中되었다. 法人企業과 金融機關에의 株式所有 집중은 재벌해체 후 日本企業들이 企業集團化 또는 系列化되는 것을 촉진시켰다. 企業集團化는 재벌해체에 의해 흩어져 있던 財閥傘下 企業들이 戰前의 재벌형태가 아니라 所屬法人들간의 株式 相互保有에 의한 橫的 結合關係로 다시 재편성되는 것을 말하고, 系列化는 기업집단 내의 大企業 또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獨立系 企業이 株式所有를 통하여 산하에 많은 企業을 垂直的으로 거느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法人間의 株式의 相互保有를 가속화시킨 것은 資本自由化에 대비한 日本企業의 安定株主 工作이었다.

安定株主 工作이란 日本企業이 日本의 資本自由化에 따라 外國資本에 의하여 자기 기업이 買收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經營權 安定政策 차원에서 日本企業들의 株式所有를 安定株主에게 集中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安定株主란 동일한 企業집단이나 계열에 속하는 企業이나 金融機關 또는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企業들을 말한다. 安定株主에 대한 株式所有 移轉過程을 보면 우선

일본이 證券恐慌을 겪었을 때 日本共同證券과 證券保有組合이 보유하고 있었던 소위 凍結株式들이 安定株主들에게 인수되었고 流通市場에 거래되는 株式들은 發行會社가 매집하여 安定株主에게 引受하도록 하거나 有償增資時에 安定株主에게 우선적으로 新株를 할당하게 하였다.

安定株主들은 發行會社와 동일한 기업집단, 계열 또는 거래관계에 있다는 성격 때문에 發行會社와의 합의 없이는 취득한 株式들을 팔지 않았고 따라서 安定株主들이 特定企業 株式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게 되면 外部로부터의 주식매집에 의한 그 企業의 引受合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外國人이 日本企業을 引受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資本自由化에 대비한 日本企業들의 安定株主 工作은 그 자체로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넓게 보면 재벌해체 이후 日本企業이 企業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독특하게 만들어낸 企業集團 또는 계열이라는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다. 企業集團 또는 계열 내 法人間의 株式 相互保有는 구매,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과 같은 個別企業의 經營活動의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지만, 企業集團 內 특정기업의 株式保有를 다른 법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分散시켜 大企業의 所有와 支配側面에서 보면 小數의 個人大株主가 株式를 소유함으로써 企業을 支配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여 日本社會에서 大企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日本 6大企業의 株式 相互保有에 대한 다음 統計는 法人의 株式相互 所有에 의한 所有分散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表 4-3〉에서 平均 株式所有 比率이란 企業集團 所屬 企業이 동일 企業集團의 여러 다른 企業들의 株式를 소유하는 경우 주식 所有 比率을 평균한 것이고, 平均 株式所有 關係 頻度는 企業集團의 어느 한 企業이 株式를 소유하고 있는 同一 企業集團 內의 다른 企業들의

수가 企業集團 소속 企業들의 전체개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이다.

〈表 4-3〉 6大 企業集團 全體의 株式 相互保有 關聯統計

(單位: %)

項 目	年 度	
	1983	1989
平均株式需要比率	1.78	1.52
平均相互株式所有比率	25.47	22.65
平均株式所有關係頻度	50.64	53.81

資料: 日本東洋經濟新聞社, 「企業系列總覽」, 1992.

〈表 4-4〉 6大 企業集團의 企業集團別 相互株式所有 比率

(單位: %)

年 度	企業集團					
	三井	住友	三菱	芙蓉	三和	一勸
1986	17.10	24.22	27.80	15.61	16.47	12.49
1990	16.54	24.06	26.90	15.44	16.40	12.06

資料: 上掲書.

〈表 4-5〉 日本의 株式所有 構造 推移

(單位: %)

	政府·地方 公共團體	金融機關 (投信除外)	投 資 信 託	證 券 會 社	事 業 法人等	個 人	外國人 (法人個人)
1986	0.9	34.4	7.1	2.5	24.5	23.9	4.7
1987	0.8	36.2	8.4	2.5	24.9	23.6	3.6
1988	0.7	35.7	9.9	2.5	24.9	22.4	4.0
1989	0.7	35.7	10.3	2.0	24.8	22.6	3.9
1990	0.6	35.4	9.8	1.7	25.2	23.1	4.2

資料: 東京證券去來所, 「證券」, 1986~90.

우선, 6大 企業集團 전체의 平均 相互株式所有 比率이 25%에 이르고 있는 것은 6대 企業集團의 어느 企業이나 그 經營권이 企業集團內의 다른 企業들의 연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좌우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表 4-5>에서 보듯이 日本의 株式所有 構造上 個人에 의한 株式所有가 1990년도 말 현재 23%에 불과하여 金融機關을 포함한 法人所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개인이 大株主인 경우에도 주식소유가 미미하여 개인이 株式所有를 근거로 會社를 지배하는 경우가 日本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한 經營權 행사의 주요 측면이 任員의 選任이고 任員의 선임은 日本의 商法上 발행주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株主의 참석과 參席株主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發行株式數의 6분의 1 이상을 지배하면 特定會社의 經營權에 실질적 영향을 행사한다고 보면 25%의 株式所有는 會社를 지배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銀行의 去來企業에 대한 영향도 銀行을 去來企業의 經營權을 좌우하는 법인연합의 한 구성원으로서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다. <表 4-3>에서 평균 주식소유 비율이 1.52%라는 것은 株式 保有限度 5%에도 불구하고 銀行이 株式保有를 통하여 去來企業의 經營權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保有限度の 취지대로 銀行이 株式保有를 통하여 去來企業의 經營權에 절대적 영

<表 4-6> 金融機關의 株式所有 比率 推移

	株式所有比率(%)				
	1986	1987	1988	1989	1990
金融機關合計	43.50	44.58	45.58	46.01	45.23
上同(投信除外)	41.70	42.22	42.53	42.34	41.62
銀行·信託銀行 ¹⁾	20.50	20.96	22.16	22.15	21.62
投資信託	1.82	2.37	3.05	3.67	3.60
年金信託	0.92	0.96	0.99	0.89	0.91
生命保險會社	13.28	13.22	13.06	13.07	13.22
損害保險會社	4.42	4.32	4.21	4.08	4.09
其他	2.57	2.76	2.11	2.14	1.79

註：1) 投信·年金信託 除外.

資料：日本全國證券去來所協議會, 「株式分布 狀況 調査」, 1986~90.

〈表 4-7〉 20大 株主의 株式所有 分布

年度末	發行株式 總數 (100萬株)	20大 株主의 株式所有	長期信用 銀行	都市 銀行	信託 銀行	損害 保險	生命 保險	合 計
1981	277,733	42.5	2.64	7.96	2.45	2.81	11.62	27.48
1982	289,173	41.8	2.68	8.00	2.39	2.79	11.65	27.50
1983	299,435	41.5	2.75	7.95	2.43	2.76	11.68	27.56
1984	308,939	41.7	2.76	8.03	2.59	2.75	11.65	27.77
1985	318,291	42.0	2.74	7.90	3.71	2.62	11.44	28.42
1986	346,118	40.0	2.61	7.38	4.85	2.43	10.61	27.89
1987	359,259	40.5	2.59	7.36	5.91	2.35	10.65	28.85
1988	375,820	40.6	2.54	7.31	7.25	2.24	10.46	29.81
1989	395,065	39.3	2.51	7.29	7.41	2.15	10.47	29.82
1990	404,050	39.0	2.50	7.52	7.10	2.18	10.60	29.89

資料：陳泰弘, 前掲書.

原資料：日本東洋經濟新聞社, 「企業系列總覽」, 1992.

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5%의 한도 내에서도 다른 法人들과의 연합으로 去來企業의 經營에 간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日本의 銀行들이 所有制限 規制와 絶對所有比率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株式所有를 통하여 關聯企業의 經營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미 간단히 언급했듯이 日本에서 銀行과 企業이 안정적 관계를 갖도록 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은행이 同一企業의 株式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融資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하에서 6대 企業集團에 대한 몇몇 통계를 통하여 이러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銀行의 株式所有와 容자의 연계관계를 보기 전에 먼저 日本의 株式所有 分布上 金融機關의 株式所有 狀況을 살펴보자.

〈表 4-6〉은 全體株主를 대상으로 한 金融機關의 株式所有 分布狀況을 나타내고 있다. 金融機關이 전체 상장株式의 약 반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金融機關 중에서도 銀行과 保險會社의 所有比重

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表 4-7〉은 각 上場企業의 20대 株主만을 대상으로 株式의 所有 分布 狀況을 나타낸 것이다. 20대 주주가 전체 所有株式 중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金融機關의 株式所有가 약 30%에 달하고 있어 金融機關이 株式所有를 통하여 相關기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으로 銀行의 融資와 株式所有의 연계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企業의 최대 채권자인 銀行이 同一企業의 株式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表 4-8〉은 이러한 취지에서 6대 企業集團別로 소속은행들이 第1 融資關係를 맺고 있는 企業들의 株式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表 4-8〉 6大 企業集團所屬 銀行들의 融資 1位 企業에 대한 株式保有 現況

(單位：個)

	三井系 銀行	三菱系 銀行	住友系 銀行	芙蓉系 銀行	三和系 銀行	一勸系 銀行	合 計
第1大 株主	16	16	4	12	10	47	105
2~5大 株主	142	122	120	133	91	416	1,024
6~10大 株主	41	26	24	17	21	106	235
11~20大 株主	8	7	8	9	5	31	68
融資1位企業數	207	171	156	171	127	600	1,432

資料：陳泰弘，前掲書。

原資料：日本東洋經濟新聞社，「企業系列總覽」，1992.

〈表 4-8〉을 보면 日本의 銀行들이 제1용자 關係를 맺고 있는 企業들의 大株主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銀行이 제 1용자 關係를 맺고 企業의 5대 주주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각 조사 대상 企業의 80%이고 제1대 株主인 경우도 약 7%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日本에서의 銀行과 企業間 關係가 負債의 代理人 間

題가 완화될 수 있는 구조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日本 銀行들의 相關기업의 부채와 주식소유 비율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相關關係가 있고 銀行 이외의 大株主의 株式所有 比重이 크지 않기 때문에 銀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에 富를 이전시키려고 하는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3. 美國의 銀行과 企業間 關係

日本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銀行을 포함한 美國의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만큼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美國 企業의 株式과 負債의 所有構造를 나타내는 〈表 4-9〉를 보면 銀行과 保險會社의 株式所有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銀行과 保險會社의 株式所有가 미미한 것은 金融機關에 대한 전반적 규제가 金融機關이 相關기업의 經營權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요 金融機關別로 株式保有에 관한 規制의 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商業銀行의 자기계산하의 株式取得은 1933년의 Glass-Steagall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銀行은 信託計定을 통해 株式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특정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10%의 保有限度가 주어지고 計定에 따라서는 議決權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銀行이 信託計定の 株式을 통해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議決權 행사로 相關회사의 意思決定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게 되면 關聯會社 破産시 債權者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956년에 제정된 銀行持株會社法(Bank Holding Company Act)도 銀行持株會社의 활동을 銀行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만 국한하고 있다. 同法에 의하면 銀行持株會社는 銀行 아닌 업종에 속한 會社株式의 5%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고 銀行 아닌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

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生命保險會社의 경우는 株式投資가 가능하기는 하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特定會社의 經營權에 影響을 미칠 정도로 株式을 取得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뉴욕주의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全 資產의 20% 이상을 株式에 투자할 수 없고 특정회사 주식은 20%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셋째, 開放型 相互投資會社(Open-ended Mutual Fund)나 年金基金(Pensions)도 有價證券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關聯會社의 經營權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相互投資會社가 특정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게 되면 稅制上의 불이익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表 4-9) 美國의 株式과 負債의 所有構造

(單位：%)

	株 式	負 債
商 業 銀 行	0	45
生 命 保 險 會 社	3	18
損 害 保 險 會 社	2.2	2
年 金 基 金	14.5	17
金 融 會 社	—	8
他 法 人	11.1	2
個 人	59.9	4
外 國 人	5.0	5
計	100.0	100.0

註：1984年 현재임.

資料：陳泰弘, 前掲書.

原資料：Federal Reserve Board, *Flow of Fund Accounts, Assets and Liabilities*, 1987.

美國企業들은 오랜 기간의 資本市場 이용으로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소위 代理人 問題를 심하게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株主와 專門經營者 사이의 이해상충에 따른 經營效率性의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전문경영자를 감시할 유

인을 갖고 있는 大株主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¹²⁾, 金融機關이 大株主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 機關投資者의 하나라고 보면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經濟의 效率性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미국의 금융기관을 銀行에만 국한시킬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銀行이 업무의 성격상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와 같은 金融機關과 비교할 때, 거래하는 企業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있어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銀行의 주식소유 금지는 銀行이 이러한 비교우위를 이용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企業의 銀行負債 이용에 일정한 한계를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銀行의 주식 보유금지는 經濟 전체의 間接金融 이용 비중을 낮게 한다고 할 수 있다.

第 5 節 金融機關과 企業間 關係의 바람직한 方向

1. 金融機關의 企業株式 所有

가. 金融機關의 企業株式 保有에 관한 制度

우리나라에서 銀行의 關聯企業 株式保有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銀行法 第22條와 第27條 第1項의 10에서 銀行의 株式保有에 상한을 두고 있을 뿐이다. 銀行法 第22條에 의하면 金融機關은 주식의 引受 또는 償還期間 3년을 초과하는 社債 및 기타 有價證券에 대한 투자를 自己資本의 100%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고(國債와 通貨安定證券은 예외) 규정하고 있어, 關聯企業의 株式을 보유할 경우 保有限度가 자기자본의 100%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金融機關은 대출실행시 他株式會社의 發行株式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株式을 담보로 취

12) Demsetz and Lehn(1985) ; Morck, Shleifer, and Vishny(1988).

득할 수 없으며(銀行法 第27條 第1項 第5號), 銀行監督院長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他株式會社 發行株式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매입하거나 항구적으로 所有할 수 없다(銀行法 第27條 第1項 第10號). 前者는 金融機關 資產運用의 건전성 내지 危險分散이 주목적인 데 비하여 後者는 資本結合關係를 통한 金融機關의 他企業 支配를 방지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規制環境에서 실제로 銀行의 株式現況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1991년 11월 말 현재 5개 市中銀行의 株式保有總額은 약 1조 2,500억원으로 당시 시가총액의 2%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銀行은 保有株式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委任狀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는 株式을 保有한 會社의 經營權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기관투자자로서의 有價證券 運用 側面에서 株式을 保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法的인 측면에서도 銀行이 特定會社 株式의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上場 法人의 經營權 安定確保를 위한 證券去來法 第200條 第1項의 株式 大量保有制限規定(上場法人의 總發行株式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株主 또는 株主가 아닌 자는 總發行株式의 10%를 초과하

(表 4-10) 5個 市中銀行의 年度別 株式保有 現況

(單位：억원)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11
朝興銀行	937	941	952	1,422	1,855	2,460	2,915
商業銀行	674	768	681	1,453	2,277	2,735	3,000
第一銀行	777	898	879	2,257	2,189	2,594	2,715
韓一銀行	573	799	984	1,457	1,929	2,371	2,524
서울信託銀行	467	495	526	675	953	1,171	1,291
計	3,428	3,900	4,022	7,264	9,233	11,331	12,455

註：銀行計定 末殘基準임.

資料：陳泰弘, 前掲書.

原資料：銀行監督院.

여 소유하지 못함)과 法の趣旨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 기본적으로 銀行의 有價證券 所有는 허용하되 株式을 보유한 企業의 經營權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銀行들도 이러한 환경에 묵시적으로 순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나. 銀行의 株式保有 活性化를 위한 方向

앞에서 살펴본 日本과 美國의 경우에서 얻은 暫定的 結論은 日本의 경우 은행의 주식보유가 활성화되어 金融部門의 效率性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企業의 金融費用 부담을 완화시키는 반면, 美國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銀行의 株式保有가 허용되지 못해, 銀行이 생산성이 높은 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銀行과 企業의 關係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銀行의 株式保有가 活性化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銀行의 株式所有는 銀行으로 하여금 關聯企業의 負債와 株式을 동시에 보유하게 함으로써 企業의 負債使用으로 인한 代理人費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代理人 문제는 所有者-債權者 사이의 代理人 문제와 經營者-外部株主 사이의 代理人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銀行이 企業의 부채와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다면 이 양측면에 걸친 代理人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企業에 대한 事前的 監視體系를 작동시킴으로써 代理人費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銀行이 다만 債權者로서만 존재할 경우에는 銀行이 企業에 대해 수익성이 낮더라도 위험성이 적은 투자를 요구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問題點이 있어서 銀行이 효과적으로 企業을 감시하기가 어렵다. 또 경영자-주주 사이의 代理人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株式所有의 集中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企業의 부채비율

13) 물론 美國의 경우 直接金融市場이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 높을 때 생기게 되는 債權者 - 所有經營者 사이의 代理人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銀行이 相關기업에 부채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 기업의 株式을 대량 보유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사전적 감시체제를 작동시켜 代理人費用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代理人費用 감소효과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銀行의 株式所有가 關聯企業의 經營權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銀行이 거래하고 있는 企業들의 所有가 광범위하게 분산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겠다.

日本의 銀行과 企業間 관계는 이와 같은 조건에 가장 近似한 예가 된다. 銀行은 물론 銀行과 거래하는 企業들의 株式所有가 광범위하게 分散되어 銀行이 5% 미만의 株式保有로도 相關기업의 大株主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부채사용으로 인한 代理人費用 발생 가능성이 적고 결과적으로 不實債權 발생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企業에게 低利의 자금을 제공하여 企業의 競爭力을 강화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銀行의 貸出審査의 自律性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라도 銀行의 株式保有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스티글리츠」(1991)에 의하면, 은행이 企業株式을 보유하도록 허용될 경우, 주주로서 企業의 長期的 가치의 관점에서 投資計劃의 立案에서부터 經營行爲까지 감시를 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되고, 이때의 監視體系는 株式市場에서의 事後的 감시체계가 아닌 事前的 감시체계가 된다. 事前的 감시체계는 경영 실패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事後的 체계보다 효율적이며, 더구나 情報를 생산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이 주업무인 銀行이 감시기능을 담당함으로써 企業에 대한 監視體系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銀行의 株式保有가 順機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銀行이 自律性을 갖고 商業性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金融의 현실적 여건상, 銀行이 여전히 주인 없는 상태로 商業性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면, 銀行의 株式保有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銀行의 實質的 民

營化라 하겠다¹⁴⁾. 또한 自然人에 의한 企業의 과도한 소유집중이 우리나라의 現實이라면, 기업의 所有分散을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銀行의 株式保有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銀行과 企業 그리고 企業과 企業 사이에 所有分散을 전제로 한 자율적인 출자관계가 허용되어야 銀行의 주식보유가 활성화될 수 있고, 順機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負債 - 株式 轉換方案

우리나라 銀行의 不實債權 問題(〈表 4-11〉 참조)와 競爭力 弱化 問題는 근본적으로 貸出審査의 自律性 부족 결여 때문에 원천적으로 不實債權이 많이 발생하고, 不實債權이 발생한 후에도 費用과 責任이 銀行에 일방적으로 轉嫁되는 데서 비롯된다 하겠다. 銀行이 자율적인 대출심사 능력을 갖고 있고 私企業으로서의 責任經營 體制로 움직인다면, 銀行은 投資決定의 歪曲에 의한 富의 移轉(wealth transfer)문제로 압축될 수 있는 負債의 代理人費用(agency cost of risky debt)을 다른 곳에 전가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부담해야 될 가능성 때문에 企業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資金提供을 자발적으로 억제할 것이며, 企業의 입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負債利用은 金利의 上昇과 破産(bankruptcy) 가능성 때문에 가능한 한 억제하게 되어, 不實債權 發生의 可能性이 원천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⁵⁾.

14) 金融產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서 金融의 順機能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銀行이 스스로 經營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政府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더불어 銀行이 資本主義의 基本原則, 즉 낙후된 者는 도태된다는 냉엄한 원칙을 따를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15) 이러한 논의에 관한 理論的 基礎는 情報經濟學에서 비롯된다. 즉 現實經濟가 갖는 불완전성 중의 하나로서 情報가 非對稱的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불완전성이 主人과 代理人이라는 상호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양식을 유발시킨다는 이론이다. 위의 논의도 이것에 근거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表 4-11) 市中銀行 不實債權 規模 推移

(單位：億, %)

	1987	1988	1989	1990	1991(6月末)
總 與 信	337,043	365,570	469,131	791,131	869,598
不 實 與 信	27,693	27,156	20,045	17,484	20,006
不實與信比率	8.2	7.4	4.3	2.21	2.31

註：1989年 以後의 不實與信 比率 下落은 1988년 이후의 大規模 銀行增資로 상당규모의 不實債權을 貸損償却 처리하였고 總與信 자체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資料：陳泰弘, 前掲書.

原資料：「中央經濟新聞」, 1991年 7月 20日.

「韓國經濟新聞」, 1991年 9月 18日.

따라서 우리는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負債 - 株式 轉換 方案이 銀行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不實債權 問題와 銀行 自律性 提高를 위한 銀行의 企業株式所有 문제를 하나로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負債의 株式相計措置는 첫째, 國內 大企業의 과도한 貸出比率을 낮춤으로써 企業의 재무구조를 낮출 수 있고 둘째, 銀行이 企業의 大株主가 됨으로써 企業이 장기투자가 필요한 경우나 일시적 資金 압박을 받을 경우, 資金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負債의 株式相計措置는 企業 부실부채의 인수로 銀行이 함께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과 景氣變動에 민감하고 위험도가 높은 實物資產의 보유로 銀行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⁶⁾. 또한 銀行의 과도한 企業株式 所有는 자칫 잘못하면 金融과 産業의 癒着으로 經濟力集中의 가속화와 銀行의 건전성 상실 등의 副作用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¹⁷⁾.

金俊經(1991)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不實債權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부실채권을 償還優先株로 轉換하

16) 郭晚淳, 1993, pp. 5~6.

17) 金俊經, 1991, pp. 55.

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pp. 55~56). 償還優先株란 발행할 때부터 장래의 이익(또는 상환)에 의한 消却이 예정되고 있는 주식으로, 通常企業이 일시적 資金調達을 위해 우선주를 발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각함으로써 企業의 財政負擔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銀行 입장에서 볼 때, 償還優先株로의 전환은 첫째, 銀行이 한시적으로 資産을 주식형태로 보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第三者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銀行資産의 流動性 改善 및 健全化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償還優先株는 기업경영 개선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配當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만약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殘餘財産의 분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은행 수익성 측면에서도 당장의 貸損償却處理보다 유리할 수 있다. 셋째, 償還優先株는 株主로서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株主總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결의취소의 訴(商法 第376條)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은행이 간접적으로 企業經營에 참여할 수 있어 經營革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企業 입장에서 보더라도 첫째, 償還優先株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償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社債와는 달리 기업의 債務償還 壓迫을 해소시킬 수 있고, 자본감소 절차에 의하지 않고 利益으로 상환하여 會社의 자본액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企業 財務構造가 강화될 수 있다. 둘째, 利子費用이라는 固定費用負擔을 회피할 수 있으며, 收益性이 호전될 경우 企業 명성이 회복되어 資金調達が 용이해진다.

3. 與信管理制度 改編方向

與信管理制度는 系列企業群에 대한 偏重與信 문제를 완화하고 系列企業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함으로써 金融資産의 건전성을 제고하

고, 金融資金配分の 均霑化를 통한 經濟力 集中 완화를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金融開放化의 추진은 現行 與信管理制度의 운용목표와 상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上記 목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大企業에 대한 與信規制政策에 대한 새로운 認識轉換과 與信管理制度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經濟의 개방화가 가속됨에 따라 國內企業들이 세계유수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技術集約的 設備投資를 확충시켜 國際競爭力을 제고하여야 하는데, 大企業에 대한 현재의 획일적인 與信規制는 投資를 제약하여 競爭力 向上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도 現行 與信管理制度를 점차 完化하고, 오는 1997년 경까지는 廢止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現行 與信管理制度는 第1金融圈 金融機關을 대상으로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限度 規制, 財務構造 改善, 企業投資, 不動產取得에 대한 事前承認, 業種專門化 誘導 등이 주된 내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銀行法 第30條 第2項에 의하여 同一系列企業群 단위로 金融機關의 與信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5대, 30대 系列企業群 所屬 기업체에 대하여 1) 貸出金の 占有率 제한, 2) 業種別 自己資本 指導比率 설정, 3) 業種專門化 유도(主力業體 선정, 계열기업군의 新規業種 참여억제, 企業投資 및 부동산 취득제한), 4) 自救努力義務 및 非業務用 不動產 賣却義務 부과, 5) 貸出金 事後管理 강화(相互支給保證 制限, 대출금 유용시 제재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金融機關 與信運用 規定, 金融機關 與信運用 細則,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 施行細則 등).

主去來銀行은 對象企業群 및 對象企業體別로 專擔調査役을 두고 기업정보 및 전체 여신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對象企業體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과도한 외부차입으로 인한 財務構造 惡化를 방지하기 위해 系列企業群의 企業投資 및 不

動産取得時 소요자금의 一定比率을 계열기업 처분, 보유부동산 처분, 유상증자 등의 자구노력에 의한 自體資金으로 조달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不動産取得 및 企業投資(기업의 신설, 인수, 합병)에 대한 主去來銀行의 事前承認制度를 운용하고 있다. 經濟의 開放化·國際化 추세에 따라 國內企業이 外國企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與信規制를 완화하여 資金調達이나 企業投資 面에서 競爭力을 갖추어 나가야 하고, 金融機關도 스스로의 책임하에 資產運用을 하며, 金融機關間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與信管理制度는 長期的으로 점차 완화되고 결국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企業들이 최소한 불황기에 있어서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彈力的인 財務構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 자금조달비용이 價格選好 및 市場機能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여건 조성, 2) 불필요한 資金需要의 억제, 3) 金融機關의 自律的 與信 判斷機能의 제고, 4) 기업의 內部資金調達 비중의 제고, 유도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具體的 개선방안으로서는 1) 業種專門化制度의 개선(계열기업군의 비관련업종 처분 촉진; 小分類 體制를 大分類 體制로 개선하고 主力業體 선정제도를 業體基準이 아닌 業種基準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및 2) 卒業概念 도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3) 現行 與信管理制度를 銀行 및 企業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現在와 같은 만성적인 資金超過需要의 상황하에서 與信管理制度가 廢止될 경우에는 大企業 위주의 편중여신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金利自由化가 완료되어 여신의 需給均衡이 이루어져야 하며, 資本自由化로 어느 企業이나 信用度 및 事業性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資金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¹⁸⁾.

둘째, 大企業에 대한 與信偏重 현상의 구조적 원인은 金融機關의 貸出慣行이 엄격한 여신심사에 근거하지 않고 外形的 企業規模, 相互支給保證 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金融機關의 貸出審査能力이 선진화되어 企業의 실체 및 신용도에 입각한 與信運用이 이루어지고, 相互支給保證이 단계적으로 縮小되어야 한다.

셋째, 金融機關의 資産運用에 대한 규제제도인 與信管理制度가 완화된기 위해서는 金融機關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資産運用을 해나가는 金融自律化가 완전히 정착되어야 한다. 金融自律化를 위해서는 金利自由化뿐 아니라 여신심사능력, 대출금의 사후관리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이 효율적으로 정착되어 行政的 規制 없이도 金融資産의 健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가 완화된다면 신용상태 및 교섭력이 우월한 大企業 위주의 與信比重이 크게 증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制度 강화를 통해 금융소의 부문에 대한 制度的 補完이 이루어져 金融運用의 衡平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現行 與信管理制度를 偏重與信 抑制와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誘導를 위한 金融制度로서 단순·簡明하게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經濟力 集中 緩和를 위한 企業投資規制, 業種專門化 및 不動産投機 抑制 등을 위한 현행 제도는 축소, 완화하고 관계법률을 정비하여 대체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經濟力 集中 緩和, 業種專門化 誘導 등 産業政策的 사안은 公正去來法 차원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개선 및 과도한 기업결합 억제 등을 통해 市場競爭體制를 강화하고, 工業發展法 등 산업관계법령에서 大企業의 業種多角化 등을 규제하여 專門化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通貨管理는 신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不動產投機 억제를 위해서는 與信管理制度의 운용이 아니라 土地關聯 稅法의 강화, 金融機關의 信用貸出 擴大를 통한 과도한 不動產保有 需要抑制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金融市場의 價格機能 및 經濟力 集中 緩和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는 시기가 되면, 편중여신 억제를 위한 현행 與信限度管理制度를 銀行의 自己資本을 기준으로 하는 同一人 與信限度規制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誘導는 금융기관이 엄격한 貸出審査機能을 정립하여, 財務構造가 불건전한 企業은 金融去來가 자연스럽게 축소되도록 하는 間接的 統制機能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4. 金融專業企業群 및 金融資本家

金融의 國際化 추세에 따라 國際的 競爭力을 갖춘 金融產業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國際的 競爭力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서 金融機關의 大型化·綜合化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대형화·종합화를 위해 金融專業企業群 및 金融資本家 육성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金融專業企業群이란 同一人(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는 企業群으로서 그 영업범위가 金融業에 집중되어 있는 企業集團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자본가는 금융기업 또는 金融專業企業群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實物產業의 持分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지 않는 同一人을 의미한다.

金融專業企業群 및 金融資本家に 관련된 所有構造의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銀行에 의한 企業의 지배 및 企業에 의한 銀行의 지배가 규제됨에 따라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產業資金이 배제된 金融專業企業群 및 金融資本家가 형성될 필요가 있지만, 金融專業企業群 및 金融資本家가 육성되지 못하였다. 둘째, 金融專業企業群

및 金融資本家가 육성되지 못하여 銀行의 大型化가 제약을 받고 있다. 셋째, 金融專業企業群 및 金融資本家を 우대하는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金融專業企業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母會社의 금융기관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모회사에게 所有制限 規定의 例外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金融資本家を 육성하기 위하여 金融資本家の 金融機關 持分所有에 대해서도 金融資本家에게 소유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金融專業企業群의 구체적 형성 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代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代案은 金融機關間의 相互所有이다. 相互所有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소유규제를 일정기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방법은 資本增大에 의한 金融專業企業群의 육성과 銀行의 大型化가 용이하며, 實物企業의 金融支配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한 金融機關의 부실이 系列 金融機關으로 쉽게 파급되어 金融制度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차단벽(fire wall)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不公正 去來의 발생이 가능하다.

둘째 代案은 子會社制度이다. 즉 個別 金融機關에게 다른 金融機關의 持分所有를 허용하여 그들간에 母會社와 子會社 관계를 형성케 함으로써 金融專業企業群의 형성을 유도한다. 이 방법도 첫째 代案과 마찬가지로 장점을 갖고 있는데, 市中銀行들이 短資社·證券社·리스社 등의 子會社를 보유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자회사제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金融專業企業群을 육성하는 데 더욱 용이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은행의 企業支配가 우려되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으며, 母會社와 子會社間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감독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셋째 代案은 金融持株會社制度이다. 金融持株會社의 설립을 허용

하여 金融持株會社가 子會社인 금융기관들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金融專業企業群의 형성을 유도한다. 金融持株會社에 대한 同一人의 지분소유는 市中銀行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로 제한하고, 子會社 金融機關間의 상호출자를 금지한다. 持株會社制度는 상호소유관계를 보다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金融機關의 현행 업무영역을 존중하면서 각 金融機關이 별도의 持株會社를 설립하고 그 持株會社가 보유하는 자회사를 통해 타영역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금융전업기업군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익숙치 않은 제도이며, 현 법률체계상 持株會社는 稅制上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관계회사간 업무제휴에 의한 不公正去來가 우려되며, 持株會社 설립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 때문에 實現 可能性도 적은 편이다.

第 6 節 要 約

지난 수십 년간 韓國의 經濟發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형성한 요인으로 강력한 政府의 開發指向的 政策을 들 수 있다면, 그러한 정책의 핵심적 영역은 金融部門의 활용이었다. 政府에 의한 일방적인 金融產業 運用은 韓國經濟의 고도성장을 가져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갖가지 弊害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韓國의 金融部門은 오늘의 변화해 가는 經濟環境에 대처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經濟力 集中 완화와 企業競爭力 강화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金融機關과 企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주요 先進國의 경험이 좋은 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는 美國과 日本企業의 경쟁력 차이의 중요한 원인으로 양국에 있어 金融機關과 企業間 관계의 차이를 들고 있다.

日本에서는 金融機關과 企業 사이의 장기적·지속적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美國에서는 기업들이 투자재원을 株式市場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런 株式의 대부분을 단기적 안목으로 투자하는 信託基金, 年金基金 등이 소유하고 있어 經營者들 역시 '짧은 투자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獨逸, 美國, 日本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美國에 비해 獨逸과 日本의 金融機關과 企業間 관계가 밀접하며, 이러한 사정이 所有構造의 問題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金融機關과 企業間 關係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 앞에서 살펴본 日本의 경우에는 銀行의 株式保有가 활성화되어 金融部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企業의 金融負擔을 완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銀行의 株式所有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銀行의 株式所有는 銀行으로 하여금 관련기업의 負債와 株式를 동시에 보유하게 함으로써 企業의 負債使用으로 인한 代理人費用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代理人費用 감소 효과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銀行의 주식소유가 관련기업의 經營權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銀行이 거래하고 있는 企業들의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겠다.

둘째,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負債-株式 轉換 方案이 은행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 문제 중의 하나인 不實債權 問題와 銀行 自律性 提高를 위한 銀行의 企業株式 소유 문제를 하나로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經濟의 開放化·國際化 趨勢에 따라 國內企業이 外國企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與信規制를 완화하여 資金調達이나 企業投資 면에서 競爭力을 갖추어 나가야 하고, 金融機關도 스스로의 책임하에 資產運用을 하며, 金融機關間 자유로운 競爭體制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與信管理制度는 장기적으로 점차 완화되고 결국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갑작스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段階的·合理的으로 制度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金融의 國際化 趨勢에 따라 國際的 競爭力을 갖춘 金融產業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國際的 競爭力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서 金融機關의 大型化, 綜合化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대형화·종합화를 위해 金融 專業企業群 및 金融資本家 육성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第5章 協力的 市場秩序를 위한 勞使關係

第1節 序 論

새로운 經濟秩序의 확립을 위해서는 經濟發展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企業의 內部組織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國內적으로는 民主化의 확대와 사회발전수준의 향상에 따라 기존의 成長過程에서 무시되었던 分配問題가 훨씬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기존의 對立的 視角만으로는 勞使關係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世界經濟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國際市場에서의 경쟁이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企業의 活動을 규정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企業 내부의 노사간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企業構成員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지 않고서는 國際競爭에서 이기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世紀에 접어들면 勞動市場을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人口의 高齡化, 高學力 人口의 증가, 女性의 勞動市場 진출의 일반화, 산업구조의 성숙 등 여러 가지 조건변화가 일어나고 이제까지의 高度成長下에서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1980년대 말부터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현상으로 특히 부문간의 심한 人力需給 不均衡으로 구인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構造的 不均衡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持續的인 産業化에 따라 總就業者 중 被傭者 비중이 크게 증

가하면서 勤勞者의 힘이 양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戰後世代 중심의 신규 근로자의 高學力化 現象으로 근로자의 의식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능동적 참여의식이 높아져 政治的·社會的 영향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勤勞所得 增大에 따른 근로자의 여가선호 및 참여의식 증대로 기존의 權威主義的 勞使關係는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들고 勞使間의 대등한 交渉力에 기초한 團體交渉制度가 정착하는 것이 장기적 추세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共同體的 市場經濟라는 새로운 經濟秩序의 이념에 걸맞는 새로운 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시각의 전환과 政策課題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1980년대 말 이래 나타나고 있는 勞動市場과 고용구조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 勞使關係에 대해 어떤 시각전환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새로운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政策的 과제를 정리하고 정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第2節 分配正義에 관한 論議

새로운 經濟秩序를 모색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다 보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쩍 관심이 높아진 分配正義에 관한 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주제는 이제까지 壓縮成長 과정에 대한 반성이라는 측면과 새로운 效率性의 추구를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分配構造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兩面性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經濟開發 初期段階에서 階層間 相對的 所得隔差가 낮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앞선 계층의 생활수준을 따라잡으려는 욕구가 아직 강렬할 뿐 아니라 高所得層의 致富過程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겹쳐 상대적 격차를 용인함에 있어 대단히 인색한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民主化 추세에 따라 衡平에 대한 國民的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高所得層의 생활상이 가시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데 반해 低所得層 생활수준은 踏步하는 경향이 있어 階層間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相對的 貧困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면서 零細民들을 당혹케 하는 한 가지 요인은 주택값의 급상승과 전세값의 폭등인바, 이와 같은 住居生活 측면의 불안정 요소는 無住宅 庶民들의 勤勞意慾과 건전한 생활자세를 흐트러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中小企業의 경우 기술자 확보수단으로 근로자들에게 住居補助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극한적 대립양상을 보여온 勞使紛糾의 영향이 가세되고, 계급대립·집단이기주의 조장 및 근면·성실의 전통 상실 등이 야기됨으로써 우리 經濟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현 체제를 부정하는 시각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所得과 富의 不均衡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구호적인 개혁조치나 단편적인 정책만 가지고서는 달성될 수가 없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經濟運用의 비전과 哲學이 정립되어야 하고 어떻게 성장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基本戰略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 점에서 所得再分配政策은 狹義의 租稅政策에 의한 교정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 즉 산업·노동·복지정책과의 종합적 고려하에서 기획·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에 있어서의 인식전환을 전제로 할 때 政府의 적극적 介入에 의한 불균형 교정 노력은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衝擊療法보다는 지속적 誘引政策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企業과 勤勞者가 각 經濟主體로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제시해 주고 교통·주택·복지 등 제반 분야에서 社會的 安全網 구축에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移讓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稅制改革 노력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는 가급적 財産所得에 重課稅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勤勞所得과의 형평을 유지한다는 基本方針 아래 꾸준히 수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經濟成長過程의 果實配分에 대한 불만과 이른바 相對的 剝奪感이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반면 效率性和 分配正義에 관한 肯定的인 側面은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 결과 소득불균형 문제의 개선을 꾀하자고 시작한 정부의 所得移轉의 政策이나 勞組의 強性 要求 등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集團利己主義의 강조로 끝나버린 感을 준다. 즉, 당초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財産所得의 不均衡을 확대시켜 전반적인 富의 분배와 그것의 형성과정을 둘러싼 불만감만 더 늘었다고도 볼 수 있다.

金泳三 政府에 들어와 초기부터 강도 높게 진전된 改革드라이브는 이 같은 국민정서의 정치적 구현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分配正義의 실현은 그 자체가 능력과 노력에 따른 機會均等の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바르다는 점에서 분배의 결과에 대한 지나친 형평 욕구가 또 다른 문제를 던져주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經濟理論上 分配正義를 바라보는 시각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가 하면 보수적인 극단론까지 매우 광범한 편이다. 분배되어야 할 총액으로서 總生産額에 대한 각 개인의 공헌, 즉 寄與度에 따라서 소득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貢獻原理가 전통적인 西歐的 見解였다. 그러나 社會的 연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市場介入의 당위성이 강조되면서 勞組의 지위나 政府의 적극적인 역할과 社會保障의 중요성이 동시에 발전되어 왔음이 역사의 추세라고 봐야할 것이다.

分配正義에 관한 객관적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오랜 社會科學的 주제였으나 아직도 보편타당한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客觀的인 해답 자체가 불가능한 과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왜냐하면 公正性이라는 것은 規範的(normative)인 概念이며 규범적인 가치란 개별적인 주관이나 시각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分配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다양한 논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다면 하나는 分配의 結果를 기초로 公正性の 기준을 판단하고자 하며 다른 하나는 分配過程上의 公正性を 기준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社會科學 및 價值哲學의 체계상 前者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롤즈」(J. Rawls)고 後者를 대변하는 學者로는 「노직」(R. Nozick)을 들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롤즈」에 따르면 分配의 결과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國家나 政府가 적절한 再分配政策을 통하여 自身の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부여할 때 分配正義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노직」은 分配의 過程을 중시하여 分配正義가 실현되는 절차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公正한 소유의 원칙에 따라 획득되었거나 둘째, 타인으로부터 公正한 移轉의 원칙에 의거하여 富를 축적하고 資產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合法的인 所有權을 인정해야 하고 國家도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公正한 所有나 移轉의 원칙은 一般的으로 사회의 법체계가 인정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같이 分配正義를 보는 두 갈래의 큰 흐름이 分配正義를 보는 시각과 그것의 교정을 둘러싼 政府의 역할에 관해 전혀 相反되는 處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갈래 모두 자산의 취득과 소유 및 축적이 이루어지는 過程上의 公正性を 확보하려는 노력의 당위성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韓國의 分配構造 改善을 위한 政策方案은 다음과 같은 基本方向을 따라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앞으로의 分配政策은 社會的 및 經濟的 화합분위기를 조성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市場經濟가 그 公正性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個人에게 機會의 均等を 보장한다는 조건과 불의의 産業災害와 같은, 본인 책임이 아닌 불행을 예방하는 한편, 그런 불행이 발생할 경우 社會的 扶助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分配構造의 개선은 이런 조건의 충족이라는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市場經濟의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화합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의 成長戰略이 量的 成長 자체만을 지상목표로 삼아왔다면, 이제는 成長과 分配를 상호조화시킬 수 있는 政策方向을 채택해야 할 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分配政策이 가져올 성장에 대한 肯定的 效果를 극대화하는 한편, 성장에 대한 否定的 效果는 최소화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컨대 低所得層에 대한 지원이 低所得層 자녀의 교육과 건강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長期的으로 韓國經濟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肯定的 效果라 한다면, 과도한 분배정책의 실시로 投資意慾과 投資能力이 저하하게 되는 것은 否定的 效果라 할 수 있겠다. 구체적 정책지침의 차원에서 이러한 효과들을 섬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제고가 절실하다.

또한 韓國의 分配構造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分配政策의 확충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이전에 經濟的·社會的·政治的 前提條件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마련 없이 수행되는 分配政策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物價安定이 최우선인데, 과거의 인플레이 성장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低所得層임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物價安定을 위해서는 住宅 및 傳貴價格의 안정과 농산물 流通構造의 개선, 수입품 가운데서 奢侈品 비중의 억제와 生必需品 비중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 賃金引上이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惡循環의 고리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分配構造 改善 이전에 經濟倫理의 확립과 의식구조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政府의 입장에서는 구조적 腐敗要因의 제거와 각종 認許可制度의 개선 등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企業主義 입장에서는 협소한 사적 이윤의 추구에 몰두한 나머지 企業競爭力 강화라는 長期的 과자에 소홀했던 과거의 행태에 대한 자기반성이 요구된다.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제고가 결국에는 企業 자신에게도 유리하다는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이처럼 經濟倫理의 확립에는 社會指導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지만, 보통시민들에 의한 自生的인 市民運動이 여러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마련을 위한 政府와 企業 및 市民들의 노력이 광범하게 진행되면서, 政府가 分配構造 개선을 위해 자기 역할을 재정립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간다면, 成長과 分配를 調和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의 추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政府는 국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의 협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그리고 政策間 연계를 효율화하면서 수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政府財政의 재분배기능의 강화, 즉 租稅政策을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分配政策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넘어서 산업정책·토지정책·주택정책·금융정책·노동정책 등 다양한 정책차원에서 分配構造의 개선을 꾀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財政의 再分配機能의 측면에서 보면, 먼저 豫算 가운데서 社會開發費라 할 수 있는 부분의 비중이 아직 너무나 작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 豫算部分을 점차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社會保障制度의 제도적 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公共扶助는 관련 복지시설을 결여한 채 약간의 물질적 보조에 그치고 있으며 社會保險에 속하는 각종 제도들도 그 事業運營方式에 대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財政의 再分配 機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租稅制度 運營의 公正性 確立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租稅制度 運營은 종래에는 勤勞所得者에게 불리하고 財産所得者에게는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金融 및 實物資産에 대한 課稅를 강화함으로써 資産分配의 불평등 상태를 완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지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실시되기 시작한 金融實名制는 이러한 점에서 아직 매우 불완전하다. 租稅滲脫과 回避에 대한 엄격한 응징이 불충분한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최근 南美 여러 나라의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 가운데서 租稅制度의 엄격한 운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좁은 의미의 分配政策 이외에도 住宅과 土地政策의 개선이 필수적인 것은 주택 및 土地價格의 상승이 분배구조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課稅는 과도하게 높은 資本利得의 還收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비교적 영세한 土地所有者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土地超過利得稅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같은 일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土地 및 住宅의 장기적이고 安定的 供給對策을 세우는 것이다. 기타 금융, 노동 및 산업정책에서도 政策의 分配的 效果를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第3節 勞動市場의 構造變化

1. 最近 勞動市場의 動向

현재 우리나라 勞動市場에서는 대졸인력과 인문계 고급인력의 취업난 등 일부 부문에서의 만성적인 需給不均衡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의 임금상승 속의 人力難이라는 다소 우려할 만

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많은 신규 勞動力이 생산성 향상과 연결된 기술수준 및 기능수준과 遊離되어 製造業으로의 勞動供給을 忌避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韓國企業이 高附加價值商品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증가된 賃金上昇 壓力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이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도가 가중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최근의 企業現場에서 나타나는 人力難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인력을 어떻게든 製造業으로 유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遊休勞動力의 유인을 위한 각종 대책은 미봉책의 성격이 크다. 보다 근본적으로 勞動力의 量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既存人力의 質을 높여 감소된 勞動供給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政策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人力難이 勤勞者에 의한 노동공급의 축소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 대책없이 勞動力을 확보하려는 대책은 賃金上昇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서 한 企業이 필요로 하는 유효노동력은 勞動力의 量과 주어진 노동력의 質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시 勞動力의 量은 勞動時間과 勤勞者의 數로 나누어지고 勞動力의 質은 근로자의 生産性과 勤勞意慾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근의 人力難은 넓게 보면 勞動時間, 勤勞者의 수 및 勤勞意慾 모두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먼저 勤勞者의 수를 늘릴 수 있는 가능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현재는 經濟活動을 안 하고 있으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潛在的 失業者를 유인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潛在失業者의 대다수는 女性이며, 연령별로는 25~29세 및 30~39세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 계층이 최근의 긴급한 人力難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할 것이며, 이 때문에 勞動力의 質을 높이는 대책이 企業死活의 관건이며 經濟全體로 볼 때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勞動力의 質을 높인다는 것은 勤勞者가 갖고 있는 생산성, 즉 技術

水準을 높이는 것과 勤勞意慾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통해 달성된다. 勤勞者가 고도화되는 產業構造下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 및 기술을 습득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生涯設計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문제의 중요성을 물질자본 혹은 기술 자체에만 집중하는 思考方式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뿐 아니라 그 효과달성도 의문시된다. 한 마디로 최근의 人力難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구태의연한 思考方式으로 賃金이나 억제하고 다시 權威主義的인 자세로 해결하려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勞動市場에 진출하고 있는 이른바 新世代 勤勞者들의 달라진 勤勞觀과 의식성향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民主的이고 個人主義的인 성향을 보이는 데다가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政策方向이 중요한 과제이다.

2. 後期產業社會의 登場과 消費生活의 多樣性

後期產業社會에 있어서 消費市場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消費者의 消費形態가 感性化·高度化되어가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고 상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져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도 後期產業社會의 도래와 동시에 消費者의 消費行態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社會·文化的 배경요인으로는 國民所得 水準의 향상, 價値觀의 변화, 自由時間의 증대, 그리고 新世代의 탄생,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에 따른 新消費層의 출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勞動市場과 商品市場 모두에 근본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로 消費者로서의 勤勞者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文

化的 要因 중의 하나로 國民所得水準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所得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행태도 고도화되어 가는 동시에 다양화되는 추세가 나타난다. 所得水準의 향상에 따라 가계소비지출 중 財貨에 대한 消費支出이 중심이 되는 基礎的 消費支出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향유하기 위한 消費支出이 중심이 되는 選擇的 消費支出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消費趨勢의 변화에 따라 生活消費市場에서는 教育·교양·오락·문화·외식산업 관련부문에서의 市場變化와 成長이 예상된다.

둘째로 所得水準의 향상과 더불어 消費者行態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人間의 價値觀도 농경사회에서는 ‘勤儉 - 節約’의 價値觀으로, 산업사회에서는 ‘消費 - 所有’의 價値觀으로, 후기산업사회에서는 ‘存在 - 自己開發’의 價値觀으로 각각 변화하게 된다. ‘존재 - 자기개발’의 價値觀에 내포되어 있는 人間의 자기개발욕구에는 ① 건강 중시, 안정화 지향의 움직임, ② 감정 중시, 안정화 지향의 움직임, ③ 전문성 중시, 개성화 지향의 움직임이라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

後期産業社會에서 이러한 價値觀의 세 종류는 社會變化를 배경으로 新製品의 탄생, 기술혁신 등으로 이어져 새로운 消費市場을 형성해 간다고 할 수 있다.

後期産業社會를 반영해주는 세번째 특징으로 自由時間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經濟運用의 민주화, 勞動運動의 활성화, 科學技術의 진보 등에 따라 1986년 이후 근로자의 年間 總勤勞時間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人口統計學的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양상으로는 높은 교육수준과 다양한 욕구를 지닌 新世代의 등장, 平均壽命의 상승추세에 따른 老人層 인구의 증가, 그리고 女性의 사회참여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消費市場에서는 새로운 소비층이 출현하게 되며 이를 標的市場(target markets)으로 한 新産業이 탄생하게 된다.

3. 20世紀末의 勞動市場과 新世紀로의 變化

1980년대까지의 高度成長下에서는 외국 선진기술에 의존한 重化學工業化을 통해 철강·석유화학·전력으로 대표되는 제품과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대한 基礎素材産業을 구축하여 거기서 형성된 소재와 기계기술을 사용해 다시 화학, 전기·전자기구, 조선, 자동차 등 다양한 産業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産業化 유형이 歷史的·社會的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産業構造와 여기에 걸맞는 勞動需給과 組織構造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産業構造의 변화가 진전되는 과정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이 효율적인 調整力을 발휘했는가에 대한 평가에는 상당한 유보가 따를 수밖에 없다. 大企業에서는 新規大學卒業者의 정기채용을 통해서 우선적인 勞動力的 흡수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OJT 등으로 기업 내에 효율적인 職業訓練體制를 만들어 왔다. 中小企業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건설, 운수, 서비스분야와 같이 전문적인 직업·기능이 확립되고 있는 다양한 기능별 시장 또는 영세한 사업을 포함한 큰 一般勞動市場이 있다. 이것을 內部勞動市場에 대해서 外部勞動市場이라고 부른다면, 이 外部勞動市場은 內部勞動市場의 주변으로서 중핵이 되는 企業群을 지탱해온 支援部隊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韓國의 勞動市場은 構造的인 變革期를 맞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6·29 이후 나타난 勞動需給上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다. 급속한 勞組의 조직확대와 격렬한 勞使紛糾가 가져온 賃金引上은 勞動需要의 패턴을 크게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노동공급에 있어서도 베이비 붐세대가 成年化함으로써 무한대의 人力供給時代가 끝났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몇 가지 구조적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유통, 정보, 신용, 서비스 등 下流域産業의 비중증대와 上·下

流域産業을 통한 대·중규모기업의 비중 저하와 小規模企業의 비중 증대이다. 이것은 勞動市場에서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문의 비중 상승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大企業과 中小企業 모두에 男子長期勤續者의 비중이 증대하고 모든 企業規模를 통해 內部勞動市場의 형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上流域産業의 양적 확대기에서 下流域産業의 확대기로 전환해 가는 가운데 캐치업형의 産業化를 달성해서 自力으로 市場을 개발해야만 하는 단계에 달해 높은 機動性을 갖는 소규모기업의 활로분야가 확대하고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大企業의 內部勞動市場 시스템이 中小規模의 企業分野로도 넓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勞動市場을 둘러싼 변화를 보면 人口의 急速한 增加時代에서 停止人口의 시대로 가는 한편, 産業社會는 産業構造와 消費構造의 양면에서 성숙단계를 맞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변화 가운데 生活舞臺의 확대, 高學力化, 생활패턴의 다양화, 또는 豊饒 속에서 質의 추구 등을 배경으로 우리들의 勞動觀도 변화해 갈 것이다.

高齡化는 특히 2000년을 넘어 본격화할 기본적인 條件變化이며 勞動市場이 이에 착실히 대응해야 할 중대한 변화이다. 이와 같은 勞動力人口의 고령화는 勞動市場이 넘어야 할 장벽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高齡層의 비중 증대는 家族의 부양을 끝냄에 따라 부양수단으로서의 就業의 의미가 변화해 가는 가운데, 육체적 능력이 감퇴해 가는 데 맞추어 가족, 지역, 사회보장, 또는 생애의 재산형성 등 다면적인 사회적 對應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이와 함께 勞動市場에 있어서도 체력과 능력의 個人差가 심화될 것이므로 직업, 취업형태, 여가편성 등에 선택의 폭을 넓히고, 年齡變化에 대한 段階的 適應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高學力人口의 增加에 대응하여 企業은 이에 대한 새로운 社會的 評價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학력 노동력이 극히 적었던

시대의 組織運營, 人事管理, 賃金體系 등의 구조를 대폭 수정함으로써 이들 勞動者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企業의 業績向上으로 연결시켜 가야 할 것이다.

한편 그러한 조직으로의 종속과는 다른 길을 택해 自立性이 높은 就業形態를 지향하는 노동자도 증가할 것이므로 기존의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그외의 專門資格에 첨가해 企業經營의 필요와 양면에서 원하는 새로운 專門的 서비스직업을 육성해 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복잡·다양화해가는 成熟產業社會의 기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개개인의 생애에 걸친 社會的 關心 고조, 인생변화에 대해 상냥함과 친밀감을 갖고 보답해 갈 수 있는 풍부한 복지서비스 시스템의 형성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公的인 福祉制度가 公평원칙에 묶여 자칫하면 경직적인 것이 되기 쉬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사회 시스템의 형성을 主案으로 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맡아나갈 人材를 육성하는 것도 앞으로의 勞動市場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女性의 고학력화, 취업경험의 누적으로 社會參加 意慾이 강해짐에 따라 女性의 적극적인 就業志向은 앞으로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女性의 취업지향에 대응해서 勞動市場은 家庭과 職業을 양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취업형태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女性의 뛰어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專門職種 형성, 또는 캐리어志向에 부응해서 出產, 育兒 때문에 취업을 중단해도 캐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캐리어 계속시스템에 따라 女性職業人으로서의 학습과 향상의욕을 이끌 수 있는 勞動力의 조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광범한 社會的 條件 整備를 전제로 女性의 적극적인 勞動參加를 추진하고 노동조건과 처우의 公평화를 도모해감과 동시에 교육훈련, 자격제도 등 노동시장 내외의 조건을 확충해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產業은 이제까지의 上流域產業의 기초적인 소재,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확대단계를 넘어 다양한 質을 원하기 때문에 高次元

化解가는 最終消費를 쫓아가면서 下流域의 소프트웨어와 上流域의 하드웨어가 일치되어 전개되어 갈 것이다.

最終消費의 多樣化와 下流域産業의 확대에 따라 情報化의 진전과 함께 이제까지의 上流域을 중심으로 한 內部勞動市場은 보다 강력한 조정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한편 外部勞動市場에서는 다각적인 勞動力의 可動性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組織化가 필요하게 된다. 技術革新은 최종수요의 量과 質의 양면에서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항상 産業과 勞動市場의 구조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高度經濟成長期의 기술혁신은 기초소재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으로 上流域産業의 生産現場 중심에서 大量 量産體制가 주류가 된 技術革新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은 上流域·下流域 産業, 그 위에는 최종소비의 단계까지 정보처리기술로서 횡단적 적응가능성을 갖는 기술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技術革新은 大企業과 동시에 中小企業에서 생산현장의 직접부문과 동시에 事務, 管理, 販賣, 專門·技術的 職業 등의 광범한 間接部門에서 전개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內部勞動市場뿐만 아니라 中小企業 등의 內部調整力이 약한 勞動市場에 있어서도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혁신인 것으로 보인다. 大企業分野에서는 素材나 機器의 공급을 계속하고 있던 곳에서는 最終需要의 확대 ติม포둔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技術革新에 대응해 勞動力을 이동시켜 흡수해갈 수 있는 成長部門을 전개해가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더욱 指向하고 또는 下流域産業과의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깊게 하여, 다른 면에서 新素材의 開發努力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技術革新에의 적극적인 대응은 이러한 成長部門의 개발 노력과 병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中小企業 分野에서는 高學力化에 따라 젊은층에서 블루칼라 指向이 약해지고 서비스부문과 화이트칼라로의

指向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技術勞動者의 공급이 먼저 줄어들고 있다. 물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가 진행되어도 勞動集約的 機能이 여전히 필요한 생산·가공공정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면에서 機能을 계승해가는 것은 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機能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높아갈 것이다. 事務自動化的 전개는 현재 범용 컴퓨터 이용의 확장방향과 마이콤 등의 말단에서의 情報化가 착종하거나 사무업무에 대해 情報處理技術을 적용하기 위한 標準化가 벽에 부딪혀 있지만 시행착오 가운데서도 間接部門과 下流域에서의 새로운 맨머신의 구성이 이루어져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무분야의 기계화는 장기적으로는 진전해갈 것이고 勞動者의 정신위생, 참가의식 또는 사무조직 등의 본래 자세면에서 새로운 공부나 상당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勞動需要構造의 변화에 따라 企業 內的으로는 配置轉換을 통해 내부노동시장에 대응하고 外的으로는 職種과 産業間에서의 勞動移動의 원활화를 도모해가는 外部勞動市場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企業 內에서의 배치전환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他企業으로의 이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그것 때문에 企業 內에서의 대응을 넘는 교육, 훈련시스템과 구인, 구직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技術者의 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외부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정보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가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情報處理를 하는 다양한 機能評價體系를 확립해감과 동시에 專門的 능력개발과 교육, 훈련시스템을 정비하여 새로운 技能勞動分野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第4節 勞使關係에 대한 새로운 接近視角

최근의 勞動市場의 동향과 21세기를 향한 勞動市場의 구조변화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勞使關係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接近視角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최근 勞使關係 불안정의 기본원인은 이제까지 韓國經濟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던 大企業 중심의 輸出爲主 大量加工組立型 生産構造와 이의 副産物인 市場構造 및 産業構造와 分배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韓國經濟가 급속한 工業化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可用資源 중 그래도 國內에서 조달가능했던 良質의 勞動力이 더 이상 값싸게 무한정 공급될 수는 없으며, 이들 勤勞者가 점차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인간다운 삶의 質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특히 젊은 연령층이나 신규로 勞動市場에 진입하는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生産要素로 취급되는 것을 배격하게 되고, 이들의 다소 경직적인 자세를 企業과 勞使關係 제도가 수용하지 못하면서 자주 충돌을 야기해 왔고, 현재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해도 基本的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재연될 蓋然性이 잠재해 있다.

과거 몇 년간의 격렬한 勞使紛糾 過程에서 勞動運動의 일부 지도권 내부에서는 資本主義體制의 모순이 현재 勤勞者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야기했다는 인식 아래에서 勞動運動을 체제혁명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순의 근본원인으로 보았던 資本主義 모순이 資本主義體制가 계속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면서 완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로 理念偏向的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특히 최근 共產主義 經濟의 붕괴가 말해주듯 革命的 해결책이 쉽게 모순 없는 사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이 반발하고 비판해온 社會現實이란

資本主義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 30년간 한국적인 성장과정의 특수성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勤勞者의 다소 무리한 자세에 그 동안 政府나 企業이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때로는 權威主義的인 자세로 대처해왔고 아직도 문제의 본질과 기본 대처방향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지 못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미봉책으로 무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하는 惡循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使用者와 勤勞者 사이에 不信의 골이 깊어져 왔음을 감안하면, 진정한 노사관계 정착이라는 목표 앞에는 아직도 험난한 길이 가로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의 韓國經濟가 과연 質的인 高度化를 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일단 先進國 진입의 量的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이상한 표현이지만, 더 이상의 量的 成長은 內部的인 葛藤構造의 해소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韓國經濟를 이끌어 왔던 政府 主導의 大量 加工組立型 생산기조의 기본전략을 수정하여 高附加價値 중심의 多品種 技術追加型 小量生産體制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勞使關係의 안정과 勤勞者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흔히 기술입국이니 기술투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技術發展은 기술자나 전문인력만이 담당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이는 중대한 인식상의 오류이다. 물론 科學과 技術人力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최종상품에 응용되어 商品市場에 나오는 과정에서 商品 자체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는 勤勞者가 현장에서 축적한 生産技術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이 점에서 최근의 젊은 연령층이 製造業 生産職을 기피하고 서비스, 건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진정 우려할 만한 사실이다. 한 企業에서 技術이 축적되어 商品市場에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무엇보다 많은 勤勞者가 한 직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오랜 기간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같은 분위기의 조성은, 급하면 기계로 대체한다든지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면 된다든지 하는 안일한 자세로는 결코 마련될 수 없는 것이며, 日本商品의 세계적 競爭力의 기초가 과연 무엇인가를 고려해 볼 때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¹⁾.

여기에서 過去の 勞使關係를 회고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대책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즉 아직도 勞使關係 安定의 기틀을 마련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制度的 整備와 經驗蓄積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도에서 勞使關係가 조명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새로운 勞使關係는 새로운 産業構造의 調整과 企業의 所有 및 經營 民主化와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生産形態의 변화는 이제까지의 勞務組織 및 勞使關係 양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勤勞者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및 신상품 개발과정에서의 참여 없이는 企業이 격심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企業 內에서 所有權·經營權·勤勞權 등이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공존공영의 場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은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이어야 하며, 각 企業은 이제와는 차원이 다르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從業員 福祉에 신경을 써줌으로써 많은 勤勞者가 같은 직장에 오랜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단순한 賃金上昇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각 企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勞動의 質과 勤勞意慾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치열해지는 企業間 競爭은 눈앞에 다가올 것이고 政

1) 日本의 終身雇傭制는 勞動市場의 硬直性, 産業構造調整의 機敏性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경제가 보여준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잘 극복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府는 공정한 심판자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勞使兩側이 서로의 존립 기반을 키워나가는 自生力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21世紀를 향한 勞使關係 變化의 기반에 깔려 있는 또 하나의 기저요인으로 個人主義 및 平等主義 지향적인 新世代 勤勞階層의 광범한 등장과 勞動組合運動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앞으로 民主化가 확대되면서 政治理念의 다양화와 遵法意識이 요구될 것이고 따라서 勞動運動에 대한 一般國民의 의식과 지지 또는 비판이 勞使關係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 및 소득계층의 분화에 따른 利益集團의 分化가 심화되고 이익집단간 이해상충을 相互利害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의 설정자로서의 政府에 대한 국민의 信賴確保 및 고도의 政策遂行 能力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부문별 노동력 부족, 소득상승에 따른 勤勞者 意識構造 變化, 민주화의 진전과 성숙된 勞使關係 定着에 대한 새로운 勞動環境과 法制度의 괴리 현상으로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며, 직장생활을 통한 自己發展과 自我實現 欲求가 증대하면서 생애능력개발체제 확립이 요구되어 여가선용을 위한 사내복지시설 확충 및 산업안전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企業의 競爭力을 강화하면서도 國民全體의 삶의 質을 균등히 향상시키기 위한 勞使關係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체는 生産에서의 人的 要素, 인간 그 자체의 능동적·창의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經濟秩序의 정립에 있어 勞動의 役割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도·기술·조직·인간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共同體의 市場經濟의 이념에 걸맞는 새로운 勞使關係像은 人間的이고 民主的이며, 유연성을 갖춘 협조적 勞使關係라고 할 수 있다.

第5節 韓國的 勞使關係模型的 摸索

21世紀를 전망하는 1990年代 韓國 勞使關係의 기본목표는 勤勞者 福祉水準의 향상을 통한 勞使關係의 '安定' 定着과 인력·雇傭政策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응할 雇傭'安定'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두어져야 한다.

21세기를 바라보면서 個人主義 및 平等主義 지향적인 新世代 근로 계층의 광범한 등장과 勞動運動의 활성화라는 여건하에서 勞使協力を 통한 생산효율의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勞使關係의 哲學과 制度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21세기의 韓國的 勞使關係의 철학은 공동체적 市場經濟의 이념에 대응하는 人間性的 尊重과 民主主義 原則에 입각해야 하며 그의 구현을 위한 勞動市場의 유연성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人間性과 民主性의 존중은 신세대 근로계층의 인간적 자아실현 욕구와 평등지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勞使關係制度의 유연성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의 우위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방향은 기업수준에서의 微視的 協力主義(micro-corporatism) 및 國家經濟 수준에서의 巨視的 協力主義(macro-corporatism)의 제도화와 상호균형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

一般的 協力主義 혹은 組合主義로 불리는 이 같은 制度整備의 체계는 前者의 경우 日本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이고 後者の 경우는 유럽 등 西歐에서 발전된 것이다. 韓國的 協力主義 모형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느냐의 논의는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2) 이 같은 논의는 李原德, 「韓國勞使關係의 現實診斷과 새로운 摸索」, 國際文化研究所 주최 토론회 발표논문, 1990. 10 및 朴煥求, 「經濟社會發展과 勞動의 役割: 異論의 接近」, 송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1. 10에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兩者의 調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文化的 토양에 맞게 두 가치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微視的 協力主義는 企業水準에서 勤勞者의 강한 귀속감 또는 從業員의 직업정신과 노사의 이익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勞使가 협의하는 관계를 말한다. 흔히 나타나는 형태가 企業別 勞組體制와 기업수준에서의 勞使協議制인데 이 제도의 골격은 이미 우리의 勞使關係制度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微視的 協力主義는 勞使間에 기업정보의 공유, 합의된 共同價値 또는 목표의 존재, 인간적 가치가 교감되는 기업문화 등이 전제될 때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韓國的 勞使關係模型의 기본은 微視的 協力主義의 기존체계를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되 微視的 協力關係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巨視的 協力主義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³⁾.

微視的 協力主義는 기업단위의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市場狀況 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유연성이 최대 장점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國際競爭이 치열해지고 市場需要變化의 주기가 짧아진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는 競爭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微視的 協力主義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勞使의 企業利己主義로 인한 거시차원의 衡平性 低下問題, 거시적 시각부족으로 인한 國民經濟 方向과의 상충, 주택·토지와 같은 企業外的인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대안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大企業 勞使가 談合하여 중소기업 노사의 협상력 취약을 이유로 利己主義로 나가는 것이 최근의 기업규모에 따른 所得不均衡 隔差擴大의 주요 이유가 된 것을 들 수 있다.

3) 이하 부분은 李原德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은 부분임을 밝혀 둔다.

巨視的 協力主義의 제도화는 먼저 정부 내에 中央勞使運營委員會를 설치하여 노사관계 제도전반에 걸친 仲裁, 調停 및 制度改善에 관한 작업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전국 단위의 勞使政 및 公益團體가 참여하는 協議體 常設機構로 항시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편 政府의 意思決定機構에 관련기구의 代表들을 참석시켜 輿論收斂 과정에서 政府의 政策基本方向이 노사양측에 항상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基本目標를 달성하면서 長期的으로 새로운 協調的 勞使關係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政策課題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1. 積極的 人力政策의 必要性

韓國企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技術開發이다. 그러나 新技術이나 尖端技術의 개발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최근 첨단기술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技術은 기존 제품에 技術이 가미된 工程技術 혹은 現場技術(전문용어로는 다운스트림 工學이라고 부르는 기술)인데 이는 現場 技術者와 技能者의 오래된 경험의 축적에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長期勤續 生産職의 효율적인 고용관리가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 및 급여체계가 유인효과로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基本構圖로서 年俸給을 기본으로 하여 일정 생활수준은 보장을 하고, 인사 및 조직상의 직급과 직위를 분리 운영하여 승급은 하되 職位는 부여하지 않는 職能資格制라는 인사관리제도와 職能級 賃金體系를 도입해볼 만하다.

韓國 企業이 갖고 있는 技術開發의 취약성과 장기근속 및 현장교육의 문제는 바로 企業 스스로가 勤勞者에게 기업에 독특한 企業特

殊的(firm-specific) 기능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韓國企業이 보유하고 있는 生産方式 혹은 生産技術이 自體開發한 기술이 적고 外部에서 도입된 것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日本도 초기 단계에서는 중요 기술을 外部에서 도입했음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도입된 生産施設 혹은 生産技術이 개별 勤勞者에게 體化되는 과정이 우리 企業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는 大企業에서조차 장기근속의 비중이 낮은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주어진 技術로 창조적 응용을 할 수 있으려면 높은 수준의 熟練과 多技能을 갖춘 現場勤勞者가 있어야 하며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에의 歸屬意識을 높이기 위한 僱傭管理와 임금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최근 勞動市場의 變化와 勞使關係의 변화로 企業은 생산물 수요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인력수요 관리가 지나치게 경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企業은 생산물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勞動需要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제까지 과도하게 超過勤勞時間의 확대 등에 의존해 왔다. 僱傭水準의 변화는 보다 長期的인 조절수단이 되어 왔으나 이 같은 관행은 勞組의 확대와 임금지급체계가 경직적인 현실에 비추어 급변하는 經濟環境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거나 경기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企業의 勞動投入 결정에 신속성을 늘리고 勞使關係의 安定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고용, 임금지급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시급히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賃金協商의 범위와 대상을 다소 신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勤勞者에게는 所得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賃金を 생활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基本給의 협상부분과 자신과 동료근로자의 근로노력에 따른 추가적인 成果配分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협상할 수 있게 하고, 企業에게

는 이를 통해 勤勞者의 企業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機會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보다 광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國民經濟的인 要素, 企業經營的인 要素 및 勤勞者의 生活保全的인 要素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하는 중요한 측면이지만, 특히 成果配分的 임금체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의 논리적 근거는 全般的인 기본급의 인상을 통한 勤勞者의 생활개선과 생산성 향상만이 企業 發展의 유일한 길이며, 특히 中長期的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 다시 말해 先進經濟로의 진입여부가 이와 직결되어 있다는 믿음에 있다.

그러나 個別企業의 雇傭管理方式과 賃金體系의 개선만으로는 勤勞者의 자발적 참여를 정착시키기에는 부족하며, 政府次元에서 각종 雇傭情報網의 확충과 雇傭保險을 비롯한 제도보완도 시급하다. 더 나아가서 行政機構나 組織도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大量加工生産을 뒷받침하기 위한 勞動政策이 다분히 勞動統制的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 勞動政策의 핵심은 어떻게 조정을 유연하게 할 것인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勤勞者의 參與를 통한 生産性 增大라는 측면과 勞動市場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현실적 제약조건으로도 합리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共同體的 市場經濟의 주요대상인 企業이라는 조직의 운영에서 근로자는 이제까지의 단순한 근로라는 생산요소의 제공자로서의 수동적인 위치에서 보다 적극적인 企業 및 社會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勤勞者가 조직의 일원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일련의 환경조성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政府가 여기서 말아야 할 주된 역할은 勞動市場의 動向과 產業構造調整에 수반되는 인력 교육과 훈련을 통한 必要人力의 供給을 원활히 하고 企業이 保有人力을 장기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다. 이른바 積極的 勞動市場政策(Active Labor Market Policy)은 政府의 직업알선 및 직업정보망의 확충 등을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勞動市場의 조정을 촉진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현재 生産職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事務職과 갈등을 빚고 있는 企業別 勞組가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자면, 구성원이 事務職으로 확대되고 生産職 중 장기근속자가 中堅管理職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기업 내 基幹人力에 대한 현장훈련과 教育을 企業 스스로가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지원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獨逸의 社會的 市場經濟에서 나타나는 공동결정제는 독특한 獨逸의 教育制度和 職業訓練制度를 기초로 해서 가능했으며, 우리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단시일 내에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企業 內의 職業訓練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基幹技能人力 중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력과 下位事務職間의 구별을 점차적으로 없애면서 生産職과 事務職 勤勞者의 경계를 해소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勞組가 단순히 분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經營層과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에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는 思考가 競爭的 市場經濟에 맞게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

人力需給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人力供給이 수요에 비해 전체 經濟水準에서 부족하다는 人力의 量的 不足問題이고, 둘째는 쓸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人力의 質的 問題이며, 셋째는 經濟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製造業 生産職 部門에 人力이 부족한 반면 일부에서는 供給過剩現象까지 빚는 인력의 構造的 需給不均衡의 문제이다. 이러한 人力 問題는 人力 資源의 外延的 확대대책과 人力활용도의 향상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 人力政策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人力資源의 外延的 擴大는 生産可能人口 중에서 産業人力化되는

비율, 즉 經濟活動參加率의 增大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勞動需要 側面에서 時間制 勤勞 등 유동적 고용형태를 확대하고, 勞動供給 側面에서 女性·高齡者·障礙者 등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支援制度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人力の 活用度を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人力開發을 통해 人力の 質的 向上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技術開發의 성격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최근 첨단기술의 성격과 多品種少量生産 방식으로의 전환을 감안하면, 우리 企業에 특히 중요한 技術은 기존 제품에 技術이 가미된 工程技術 혹은 現場技術인데, 이는 現場技術者와 機能者의 오랜 경험의 축적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生産環境에 적합한 다기능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만이 아니라 長期勤續 生産職의 효율적인 雇傭管理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 및 급여체계가 유인책으로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求人과 求職을 신속히 연결시켜 勞動力 需給의 안정을 꾀하는 직업안정 서비스 기능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며, 構造的 失業을 예방하기 위해 雇傭保險制度의 실시를 통해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雇傭保險制度의 실시와 함께 구조조정에 따르는 기업의 一時解雇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企業에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剩餘人力を 제거하는 한편, 勞組로 하여금 일시해고를 단순히 노조탄압 차원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景氣에 대한 탄력적 대응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成長産業으로 옮겨가기 위한 機會로 파악할 수 있도록 轉職再訓練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生産性 向上을 위한 成果配分制度

이상에서 정리한 人力政策들이 현실화될 수 있으려면, 勤勞者들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에의 歸屬意識을 높이기 위한 雇傭管理와 賃金體系의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勞動市場의 변화와 勞使關係의 변화로

企業은 생산물 수요의 변화에 伸縮的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어 人力需要 管理가 지나치게 경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企業은 生産物 需要變化에 대응하여 勞動需要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제까지 과도하게 超過勤勞時間의 확대 등에 의존해 왔다. 雇傭水準의 변화는 보다 長期的인 조절수단이 되어 왔으나 이 같은 慣行은 勞組의 확대와 임금지급체계가 경직적인 현실에 비추어 급변하는 經濟環境의 變化에 적응할 수 없거나 경기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效率性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企業의 勞動投入 決定에 신축성을 늘리고 勞使關係의 安定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고용, 임금지급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시급히 요청된다.

우리나라에서 成長配分 賃金を 비롯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안적인 賃金體系에 대한 인식은 별로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그 주된 이유는 그 동안의 勞使兩側을 비롯한 一般國民의 관심이 絶對的인 賃金水準의 향상에 두어져 왔고 따라서 政策當局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데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동안 政策當局에 의한 長期的이고 종합적인 賃金政策 및 勞動政策이 勤勞者 및 一般의 신뢰를 받아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長期的인 비전이 이제라도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나라는 임금이 갖는 독특한 성격 - 다시 말해 경제의 각 주체에게 주는 서로 다른 의미 - 과 國家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成長力의 배양을 모두 감안해 賃金政策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勤勞者 생활수준의 개선, 企業의 부가가치 향상, 國家經濟成長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임금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은 논리적 연결고리의 핵심에 生産性 向上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의 성공적인 수행이 勞使關係의 안정과 勤勞者의 自發的인 노력과 직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勞動行政에 관련된 政策課題

個別企業의 고용관리방식과 임금체계 개선만으로는 勤勞者의 自發的 參與를 정착시키기에는 부족하며, 政府 次元에서의 각종 制度的 보완책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行政機構나 組織도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勞動行政上의 여러 政策課題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勞動行政의 中立성과 公平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여기서 政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規則制定者로서의 역할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利益紛爭에 관한 한 政府는 원칙적으로 當事者主義를 고수해야 한다. 그러나 權利紛爭의 영역에 있어서는 迅速한 介入과 公正한 判定으로 규칙의 公正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勞使紛爭에 대한 公權力 介入의 범위, 기준과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勤勞者나 企業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없애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현재의 勞動委員會가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일 뿐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金融分野의 金融通貨運營委員會와 같은 정도의 지위가 확립되어야 한다. 政府로서도 가급적 中立성을 확보하고 분쟁현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면, 이 같은 補完的 裝置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기구가 勞使兩側의 신뢰와 협조 아래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團體交涉制度的 규범 정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勞使關係의 불안정은 여러 勤勞條件과도 관련이 있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측면은 노사간 適正 賃金上昇의 基準에 합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 우리 政府는 賃金上昇이 미칠 부정적 효과만을 강조하여, 지나치게 성급하게 全産業, 全職種에 무차별하게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선호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는 資本主義 市場經濟 原則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勞使의 완벽한 협조나 政府의

강제력 동원 없이는 사실상 실효가 없는 정책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지양하고 임금협상이 각 企業, 각 產業 나름대로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勞使合議를 비교적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企業別 勞組의 장점은 발휘되지 못하고 임금은 다른 企業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제기됨으로써 분류가 불필요하게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점에서 일부 產業에서의 공동교섭의 확대와 함께 차라리 產別勞組의 기능을 부활시켜 최소한 불필요한 분류를 줄이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도 있다.

넷째, 현재의 勞動行政 組織機構는 경제개발 초기인 1960年代 勞動廳 職制와 크게 다를 바 없어 勞動行政 서비스 需要急增에 대응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勞動環境 變化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점점 복잡·다양화되어 갈 勞動行政 內部的 종합조정과 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勞動部의 政策部署로서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또 地方自治制 실시에 따른 地域勞動市場과 地域別 勞使觀의 중요성 대두로 노동행정체제의 합리화 문제가 쟁점화될 것이므로, 전반적인 노동행정의 分權化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일선 지방사무소의 현장처리 능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地方自治團體와 地方勞動行政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다섯째,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勞動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勞動法體系는 제정 당시부터 몸에 안맞는 옷이었기 때문에 名分論으로 전략해 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부작용을 늘려왔다. 現在의 勞動法 중에는 勤勞者에게 불리한 毒素條項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하면 企業의 변화된 經營環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현재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勞動法改正研究會를 활성화시켜 종합적인 勞動法 改正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여섯째, 人力開發을 위해 勞動關係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따로 人力開發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행 月次休暇制度는 教育休暇制度로 대체하여 使用者가 월차수당을 훈련비용으로서 근로자에게 보조하거나, 시설 도입·훈련 요원 보수 등으로 이용하고, 勤勞者는 그 시간을 향상교육·재교육 등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勤勞基準法의 契約期間 條項, 職業訓練基本法의 適用範圍에 관한 조항, 訓練費 負擔에 관한 조항, 下都給 關聯 勞動關係法 조항 등도 재검토할 만하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勞動行政의 效率化·專門化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다양한 복지요구 수용을 위한 政府와 企業의 역할 분담 문제가 제기된다. 産業災害管理의 合理化 등 政府事業의 公社化 또는 民營化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國民의 教育水準 향상 및 民主化·國際化 추세에 맞추어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國民의 참여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勞動行政에 대한 民間의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한 행정부담 경감문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

4. 生産組織構造의 變化

우리의 勞使關係가 不安定하다는 사실은 韓國資本主義의 成長過程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직결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勞使關係를 안정시키는 궁극적 대책은 産業構造調整과 이에 따른 생산공정의 변화 및 所有와 經營의 民主化라고 할 수 있다. 組立加工을 위주로 한 대량생산방식은 西歐가 지난 1세기에 걸쳐 달성한 經濟成長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0여 년간에 압축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 ‘발전의 軸’이었다.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제품생산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자동화된 대규모 기계제작 생산방식이 택해졌고, 勤勞者는 이에 따라 세분화된 단순반복적 작업만을 행할 따름이었다. 生産職 勤勞者는 언제든지 대체가능한 기계부품과 다름 없이 취급되었

고 단지 '숨쉬는 기계'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作業方式과 工場組織에서의 지속적 임금상승은 생산비용을 증대시켜 國際競爭力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현재의 作業組織을 유지한 채 생산직의 전 생애에 걸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급여체계 및 승진체계의 설계나 長期勤續者에 유리한 직제개편 등과 같은 改革措置를 취하면 生産費用을 더욱 상승시켜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作業組織과 工場組織을 유지하는 한 합당한 分配定義의 實現을 위한 지속적 賃金引上이나 職制改編을 통한 勤勞者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國民經濟의 성장과 상충된다.

그렇다고 하여 生産性 向上을 위한 技術革新 投資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현재의 工場組織과 作業組織을 그대로 두고 진행되는 自動化 推進 및 技術革新 投資는 치명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무를 세분화하여 勞動者에게 單純作業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作業組織下에서는 자동화 추진과 기술혁신 투자는 標準化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기존의 방식을 더욱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앞선 先進國들의 歷史的 경험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이다.

우리는 앞선 先進國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는 後發 資本主義 國家로서의 이점을 살려 불필요한 施行錯誤를 줄이고 새로운 作業組織과 工場組織, 즉 産業民主主義型 組織을 도입하여야 한다. 産業民主主義型 조직의 도입 없이는 품질 고급화, 高附加價値의 다품종소량 생산체제의 확립, 機械類 國產化를 근간으로 하는 自立經濟基盤 확충은 성공할 수 없다. 勞動者의 팀워크를 통한 作業場에의 참여, 그리고 經營參與를 통해 勞動者는 언제나 대체가능한 기계부품이 아니라 일을 완성하는 기쁨과 가치를 체득하게 되며, 企業과 社會에 대한 일체감을 가질 것이며 勤勞者의 전 생애에 걸쳐 人間的 삶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長點이 약점화되고 새로운 長點이 개발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勞動運動의 주체들은 生産性和 效率性 증진은 政府와 經營層이 하여야 할 일이고 勞動組合은 공평한 분배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役割分擔의·二分法的 思考方式을 지양해야 하며, 企業側은 勞動者에게 産業民主主義型 공장조직과 작업조직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핵심적 經營決定에 勞動者를 참여시킨다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조직 개편은 우리나라에 産業民主主義型 政治·社會·教育制度 및 文化를 수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韓國的 狀況에서 經濟力 集中의 問題는 기업규모의 量的 擴大와 연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소유와 경영의 未分化 및 경영풍토의 非民主的 要素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勞使關係의 安定化가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서는 경제력 집중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企業內部的 經營構造의 혁신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獨逸의 社會的 市場經濟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共同決定制는 독특한 獨逸의 教育制度和 職業訓練制度를 기초로 하여 가능했으며, 우리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단시일 내에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企業 內의 職業訓練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基幹 技能人力 중 上位職級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력과 下位事務職間의 구별을 점차적으로 없애면서 生産職과 事務職 勤勞者의 境界를 해소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勞組가 단순히 分配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經營層과 마찬가지로 生産活動에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는 思考가 競爭的 市場經濟에 맞게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

第6章 要約과 結論

이 章에서는 本 報告書에서 進行的 研究의 內容을 要約·定理한 다음 綜合的인 結論을 내리고자 한다.

第1章 ‘새로운 經濟秩序의 模索’의 內容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世紀를 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國際化와 自由化라고 볼 수 있고 企業으로서는 世界化, 政府로서는 機能의 複合化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념의 쇠퇴와 國境 없는 經濟의 進展은 이제 舊時代的인 資本家와 勞動者의 對立, 政府와 企業의 關係, 議會民主主義를 통한 市民과의 關係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즉 이제는 資本家 또는 그 代理人인 經營者와 勤勞者의 對立보다는 한 企業의 모든 構成員과 競爭企業의 모든 構成員 사이의 對立이 더욱 전면에 나타나게 되고, 서로 다른 민족국가에 屬하는 企業들이라도 이해를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연합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企業이 차지하는 國家經濟的 位置나 政府와의 關係 혹은 企業내부의 組織문제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企業의 規模擴大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혹은 企業의 所有構造나 意思決定構造, 즉 經營上 問題가 있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다가오는 새로운 世紀를 준비하는 작업은 政府, 企業所有者, 上位經營層, 中間 事務職 및 生産職 勤勞者 모두의 의지가 반영되고 이해가 조정됨으로써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競爭力 強化와 衡平 增進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변화된 상황에 걸맞는 政府와 企業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經濟秩序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共同體的 市場經濟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한 制度나 生産體制를 일컫는 개념이라기보다는 包括的인 經濟秩序와 社會的 合議形成過程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概念定義가 쉽지 않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논의 전개를 위해 정의를 내려 본다면, “市場經濟에 바탕을 두고 民主的인 合議形成과 參與를 통해 공동체의 利益과 福祉增進을 꾀하고 公共善의 추구를 위해 민주적인 政府나 團體가 市場機能을 補完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경제질서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共同體的 市場經濟의 요체는 기업의 所有分散을 유도해 나가고 경영체제를 보다 民主的이고 參與的인 형태로 정착시키면서 企業從事員들의 조직에의 歸屬意識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經濟秩序의 마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經濟秩序에서는 經濟的 自由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개인의 經濟的 自由가 사회적 안정 및 사회적 공정성과 相馳될 경우에는 민주적인 政府가 操縱者의 역할을 하되 엄격하게 그 권한을 제한하고 항상 法律과 制度에 의거하여 恣意的 介入을 삼가야 한다¹⁾. 共同體的 市場經濟를 구체적으로 시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제도와 정책의 방향에 대한 整備作業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정비작업은 다음 몇 가지 基本原則을 갖고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市場經濟의 暢達과 競爭의 促進이다. 市場機構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하여 經濟主體들의 利益追求가 최대한 보장되고 장려되어

1)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自由主義 原則과 다른 점은 經濟主體들의 행동양식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다. 예컨대 日本의 경우 기업이라는 조직이 노사간의 대립적인 관계라는 인식보다는 共生的 關係라는 인식이 더욱 지배적이다. 이러한 勞使協調主義는 단순한 制度的 問題라기보다는 그 社會의 傳統的 價値觀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韓國社會에서의 共同體的 市場經濟의 형성에 있어서도 ‘한국적’이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야 한다. 市場機構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政府는 경제적 機會를 均等하게 보장하고 公正競爭을 保障하여 獨寡占의 弊害를 막아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둘째, 앞으로 政府가 제대로 할 일은 바로 經濟의 安定이라는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經濟가 명실상부한 國際化時代로 접어들면서 經濟安定의 중요성이 이제는 國家生存을 위한 열쇠가 되고 있다. 政府의 巨視經濟政策의 운용범위가 크게 줄어들면서 民間部門과 市場의 활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셋째, 새로운 企業經營 및 所有構造 추진과 協調的 勞使關係의 모색이다.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의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大規模의 新株公募를 통한 規模의 擴大가 불가피하다. 동시에 株式所有의 分散을 통한 經濟力集中의 緩和가 필요하며, 기업내부 構成員들 사이의 관계를 협조적 관계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福祉國家의 건설을 위한 政府의 적극적인 役割이다. 즉 앞으로의 경제운영에 政府가 일선에서 직접 지시·통제는 하지 않지만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에 政府의 역할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21세기를 내다볼 때, '共同體的 市場經濟'라는 새로운 經濟秩序를 창출해 나가지 않고서는 韓國經濟는 더 이상 발전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經濟秩序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適正한 水準에서 經濟成長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새로운 經濟秩序를 창출함으로써 건전한 經濟成長을 도모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적정한 經濟成長을 이룰 수 있어야 새로운 經濟秩序의 창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經濟秩序의 정립과 적정한 經濟成長의 유지라는 두 목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의 움직임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둘 중의 어느

한 목표를 도외시하고 다른 한쪽만을 추구하는 經濟運營은 필연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經濟運營 方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國際經濟秩序의 變化過程이다. 韓國經濟가 單一市場化되는 世界經濟 속에서 外國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아시아경제권에서 日本에 종속당하지 않으며 군사대국 中國의 압력까지 이겨내어 독립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先進工業國으로 발전하여 경제력을 배양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이 先進工業國으로 발돋움하려면 급변하는 國際經濟秩序 속에서 韓國에 가장 알맞는 위치를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發展戰略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第2章 ‘政府의 役割과 產業 發展戰略의 方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經濟秩序로서의 공동체적 시장경제는 당연히 지난 30여년간의 政府主導型 成長第一主義에서 벗어나 政府의 役割과 政府와 企業間 關係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市場經濟의 역동성과 효율성은 經濟主體의 合理的 利己心과 自由競爭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市場機構의 진정한 活性化를 위해서는 經濟主體들의 이익 추구가 최대한 장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市場經濟의 창달을 위한 政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經濟的 機會均等과 公正競爭의 보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政府의 경제운용 방식은 시장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經濟의 量的 成長이나 質的 發展을 함께 고려할 때 앞으로의 개발전략이 民間主導의 成長戰略이어야 한다면 民間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企業活動에 대한 政府의 規制가 가급적 縮小되어야 한다. 그러나 政府의 역할이 무차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經濟가 개방될수록 정부의 역할에서 企業 및 產業次元의 微視的 產業政策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民間이 담당하기 어려운 技能人力 養成, 基礎科學 研究, 情報通信 및 社會間接資

本 投資를 政府가 담당해야 하고,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극소화하여 國家的 競爭力을 유지하도록 하는 産業政策 차원의 조정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위계질서와 인화단결을 중시하는 우리의 傳統的 價値觀에 비추어 國家가 權威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利益集團의 利害對立을 調整하는 방식의 經濟運用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民主的 正統性을 가진 政府가 강력한 指導力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과거와 같은 강요된 협조와 통제가 아닌 自發的 協助에 의한 經濟運用이어야 한다.

政府와 民間部門의 시장간의 역할분담을 논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주제가 바로 政府規制의 緩和問題이다. 일반적으로 政府規制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관심은 정부규제의 증대에 따라 資本主義 經濟의 본래의 목적인 市場의 자유스런 활동이 저해되어 經濟 全體의 성과가 저하되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政府의 경제관련 규제를 크게 經濟的 規制와 社會的 規制로 분류할 때 경제적 규제의 개선은 경쟁촉진을 위한 進入制限 緩和와 특히 認許可 要件의 客觀化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社會的 規制의 경우 주요 논점은 달성하려는 社會的 目標의 適正성과 規制手段의 效率性이다. 社會的 規制에 대한 논의의 중점은 설정된 기준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합리화와 시장기능의 도입에 두어져야 한다. 과거 經濟政策의 방향이 소수 정책담당자의 개인적 소신에 크게 좌우되었다면, 이제는 政策決定의 民主化, 즉 소수에 의한 정책결정의 지양 및 다수 의견을 반영하는 政策決定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政策決定에서의 공개성과 객관성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政府規制의 완화와 관련하여 현재 방만하게 확산되어 222개에 달하는 각종 政府傘下機關의 統廢合과 公企業의 民營化는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새로운 상황에 걸맞는 政府의 위상을 위해서나 財政의 효율성 모두를 감안할 때 조속하게 정비되어야 할 일이다.

이제까지의 産業發展 전략은 업종을 불문하고 대규모 生産設備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産業構造의 고도화와 그로 인한 成長을 주도해 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大量加工組立型 生産構造는 부족한 生産設備의 도입과 당장 필요한 中低價商品 생산을 위한 生産기술의 습득만 特化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고가품생산에 위한 技術力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核心部品과 素材 및 資本財產業의 취약 등 長期的으로 競爭力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애로요인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産業發展 戰略은 우리가 여하히 國際競爭構造下에서 低技術陷穽(low technology trap)에 빠지지 않고 이제까지 유지해 온 競爭力을 갖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政府와 企業의 새로운 協業關係가 필요하다는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基本的으로 産業政策의 決定過程이나 企業의 활동과 관련한 기본풍토는 시장중심의 규제완화라고 말할 수 있으나 政府와 企業間의 전략적인 제휴를 바탕으로 戰略産業을 중점적으로 育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第3章 ‘새로운 企業像의 定立을 위한 考察’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企業經營은 市場이라는 資本主義의 일차적 조절기능을 가지고서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다. 資本主義가 발전할수록 企業은 이제 단순히 利潤을 追求하는 경제주체가 아니라 公器化되었기 때문에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監査와 統制를 적절히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있다. 물론 이것이 經營者 權力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행사하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된다. 따라서 企業을 改革한다는 말은 ‘巨大株式會社에 대한 사회의 적절한 統制’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경영자 권력에 대해 사회가 유효하고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現代企業과 우리가 안고 있는 社會問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企業도 外部性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責任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기업의 社會的 責任'에 관련된 부분이다.

둘째는 企業投資의 私的 部門과 公的 部門의 均衡에 관한 문제이다. 앞에서 지적된 外部性의 처리나 公共財의 배분 등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체제는 너무나도 빈약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現實과 理想에는 커다란 괴리(the real-ideal gap)가 존재할 뿐더러 現代 產業社會의 근본문제가 되어 버렸다. 셋째는 보다 거시적인 문제접근 방식으로서 資本主義 經濟制度의 歷史的 矛盾에서 기업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접근방법(radical approach)이다.

다음으로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企業이 社會的 責任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이러한 태도가 社會는 물론 企業에게도 결국에는 利益이 된다는 立場에서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크게 세 유형, 즉 1) 道德的 次元 2) 企業의 利益 3) 社會 內의 相互依存性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反對論의 論旨는 贊成論의 논지와 정확히 正反對의 내용을 갖는다. 즉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 企業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社會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반대론의 요지이다. 反對論의 주요 논거는 크게 세 가지, 즉 1) 責任主體性에 대한 의문 2) 利潤極大化에 대한 요구 3) 社會的 責任聯關의 費用이라는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처럼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라는 문제는 매우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어서 일면적인 판단과 일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틀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企業과 社會 양자에 모

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적절한 한도를 정하고 企業의 社會的 活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첫째 방법은 法律에 의한 規制이다. 法律에 의한 정부규제는 企業의 倫理性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法 자체의 硬直性, 抽象的 一般性, 또 社會的 問題發生과 法律制定 사이의 時差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법률에 의한 규제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企業內部로부터의 變化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1) 經營者들에게 집중된 權限을 일부 株主들에게 移讓하는 企業民主主義 方案 2) 理事會構成員들 사이의 權力移動 方案 3) 企業 內部規定의 確立 4) 經營構造의 變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새로운 기업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 先進外國의 경험에서 많은 示唆點을 얻을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日本의 株式會社에 대해 살펴보았다. 株式會社의 주인이 주주라는 것은 日本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단순한 법률상의 개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日本의 企業은 從業員의 結合體라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日本의 株式의 法人 所有에서 보여지는 특색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회사나 금융기관의 관계에서 서로 주식을 보유하는 소위 「주식의 法人相互保有」이다. 상호보유관계에 있는 法人株主는 經營의 內容이나 配當에마져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自身이 소유하고 있는 企業의 經營 의사에 충실히 따른다. 그리하여 經營이 자본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의 日本企業의 실태인 것이다.

따라서 日本의 大企業은 제도적·법률적으로는 株式會社이지만 그 경제적 실체에 대해 말한다면, 도대체 株式會社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특이한 일본기업과 그 같은 기업을 중핵으

로 하는 특징적인 日本의 經濟體制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概念이 제기되고 있다.

株主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發言權도 작은 데 비해, 企業의 從業員(社員)은 완전히 반대이다. 종업원 집단은 歐美企業의 주주를 대신하는 日本大企業의 根幹的 部分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에서 행해지고 있는 終身雇傭制와 年功處遇制는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 관행으로서 오늘날에는 일종의 社會的 規範性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용관행이 초래하는 직접적 효과와 그것이 광범하게 사회일반에 보급됨으로써 생기는 2次的인 規範意識에 의해, 日本의 企業과 從業員의 사이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日本企業은 결집된 從業員 集團이 주체적으로 그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그것을 위해 여러 가지 레벨에서의 意思決定過程에의 從業員의 광범한 參與를 인정하고, 반면 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投資家 등의 介入을 배제하고 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日本企業은 「종업원이 지배하고, 종업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日本企業은 企業人의 結合體라고 할 수 있다.

第4章 ‘金融機關과 企業과의 關係：所有構造를 中心으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이후 韓國金融의 특징은 흔히 ‘官治金融’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한국 ‘官治金融’의 핵심은 經濟成長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不均衡 開發戰略을 뒷받침하기 위해 國內資金의 동원과 배분을 中央 執權化하는 것이었다. 성장정책으로서의 금융정책은 低金利政策과 政策金融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이러한 성장정책으로서의 金融政策은 金利間 격차와 특정부문에 대한 우선적 자금배정을 통해 불균형 발전을 현실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官治金融이 경제의 고도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한 動力으로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문제는 그것이 각종 對內外的 不均衡 構造의 형성이라는 또 하나의 극복해야 할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政府主導에 의한 경제발전 모델하에서 金融部門과 實物部門은 서로 짝을 맞추어 성장해 왔으며, 양 부문의 非效率性 問題는 하나로 얽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金融產業의 改編이란 사실상 大企業集團 중심의 韓國經濟構造 전체의 개편문제, 결국 새로운 經濟秩序의 확립 문제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韓國經濟는 지난 30여 년간 괄목할 만한 壓縮成長을 통해 나름대로 先進經濟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왔다. 이 압축과정은 강력한 政府의 통제하에 수출을 위한 單純加工型 大量生産體制와 인플레이션戰略의 추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제 지난 30여 년간 韓國經濟의 성장을 뒷받침한 세 가지 축이 모두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國內外的인 狀況變化로 새로운 경제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첫째, 政府와 企業間의 관계와 정치세력과 정부간의 관계가 基本的으로 변화하고 있어 더 이상 主要 經濟政策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일방적인 指示型은 유효하지도 않고 실현성도 적어졌다. 둘째, 새로운 商品의 개발속도가 빨라지고 國際市場에서의 競爭이 치열해진 데다, 主從商品에서의 부가가치 제고 노력의 필요성 때문에 單純加工組立型 生産體制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게 되었다. 셋째, 地球村經濟의 급속한 진전과 국제화의 파고를 이겨내려면 우리 경제체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넷째, 經濟의 複雜化로 인하여 政府와 企業間 정보수집능력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며, 따라서 政府規制의 실효성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美國과 日本의 産業競爭力에 대한 최근의 한 研究(MIT의 보고서, Made in America)는 일본의 경쟁력이 우세한 원인으로서는 양국간 企業 金融慣行의 差異를 들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美日間 競爭力の 차이는 기업의 財務行態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財務行態의 차이는 다시 기업의 所有構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經濟力 集中 緩和와 企業 競爭力 強化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產業政策 논의에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經濟秩序의 창출이라는 큰 틀 속에서의 경제발전이라는 新經濟의 成敗는 金融機關과 企業間 관계와 각각의 所有構造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金融機關과 企業間 關係와 所有構造의 問題를 여러 선진국들이 어떻게 해결해왔는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獨逸, 美國, 日本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美國에 비해 獨逸과 日本의 金融機關과 企業間 關係가 밀접하며, 이러한 사정이 소유구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金融機關과 企業間 關係의 바람직한 方向은 무엇일까.

첫째로, 앞에서 살펴본 日本의 경우에는 銀行의 株式保有가 활성화되어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의 주식소유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은행의 주식소유는 은행으로 하여금 관련기업의 負債와 株式을 동시에 보유하게 함으로써 企業의 부채사용으로 인한 代理人 費用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로,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負債-株式 轉換 方案이 銀行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 문제 중의 하나인 不實債權 問題와 銀行 自律性 提高를 위한 銀行의 기업주식 소유 문제를 하나로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經濟의 開放化·國際化 추세에 따라 國內企業이 外國企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與信規制를 완화하여 資金調達이나 企業投資面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고, 금융기관도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산운용을 하며, 금융기관간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與信管理制度는 장기적으로 점차 완화되

고 결국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金融의 國際化 趨勢에 따라 國際的 競爭力을 갖춘 金融產業의 育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서 金融機關의 大型化·綜合化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대형화·종합화를 위해 金融專業企業群 및 金融資本家 육성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第5章 ‘協力的 市場秩序를 위한 勞使關係’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經濟秩序를 모색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다 보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쩍 관심이 높아진 分配正義에 관한 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주제는 이제까지 壓縮成長 過程에 대한 反省이라는 측면과 새로운 效率性의 추구를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分配構造가 改善되어야 한다는 양면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分配正義를 보는 두 갈래의 큰 흐름이 分配正義를 보는 시각과 그것의 교정을 둘러싼 政府의 역할에 관해 전혀 상반되는 처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갈래 모두 資產의 取得과 所有 및 蓄積이 이루어지는 過程上의 公正性을 확보하는 노력의 당위성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勞動市場과 勞使關係는 표면적으로는 지난 5~6년간의 급격한 변화 후의 調整局面을 보이는 가운데 政府·企業 및 勞組團體가 각기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부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大卒人力과 人文系 高級人力의 就業難 등 일부 부문에서의 만성적인 需給不均衡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며, 製造業 部門의 임금상승 속의 人力難이라는 다소 우려할 만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1990年代 들어 우리나라도 後期產業社會의 도래와 동시에 消費者의 消費行態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社會的·文化的 배경요인으로는 國民所得水準의 向上, 價值觀의 變化, 自由時間의 增大, 그리

고 新世代의 誕生, 高齡化, 女性의 社會進出 增大에 따른 新消費層의 出現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모두에 근본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最終消費의 다양화와 下流域産業의 확대에 따라 情報化의 진전과 함께 이제까지의 上流域을 중심으로 한 內部勞動市場은 보다 강력한 조정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한편 外部勞動市場에서는 다각적인 勞動力的 可動性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조직화가 필요하게 된다. 技術革新은 최종수요의 量과 質의 양면에서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항상 産業과 勞動市場의 구조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勞動市場의 동향과 21세기를 향한 勞動市場의 구조변화를 고려할 때, 安定的인 勞使關係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基本的인 接近視角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최근 노사관계 불안정의 기본원인은 이제까지 韓國經濟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던 大企業 中心의 輸出 위주 大量加工組立型 生産構造와 이의 副產物인 시장구조 및 산업구조와 분배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競爭力을 강화하면서도 국민 전체의 삶의 質을 균등히 향상시키기 위한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체는 生産에서의 人的 要素, 인간 그 자체의 能動的·創意的 役割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經濟秩序의 정립에 있어 勞動의 役割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도·기술·조직·인간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共同體的 市場經濟의 理念에 걸맞는 새로운 勞使關係像은 人間的이고 民主的이며, 유연성을 갖춘 協調的 勞使關係라고 할 수 있다.

韓國的 勞使關係模型의 기본은 微視的 協力主義의 기존체계를 그 대로 발전시켜 나가되 미시적 협력관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巨視的 協力主義의 長點을 살려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微視的 協力主義는 기업단위의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市場狀況 變化에 능동적

으로 對應할 수 있는 강한 柔軟性이 최대 장점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수요변화의 주기가 짧아진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는 競爭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巨視的 協力主義의 제도화는 먼저 政府 內에 中央勞使運營委員會를 설치하여 노사관계 제도전반에 걸친 仲裁, 調停 및 制度改善에 관한 작업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전국 단위의 勞使政 및 공익 단체가 참여하는 協議體 常設機構로 항시 관련 利害當事者間的 對話 채널을 열어놓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공동체적 市場經濟의 주요대상인 기업이라는 조직의 운영에서 勤勞者는 이제까지 단순히 근로라는 생산요소의 제공자로서의 受動的인 位置에서 보다 積極的인 企業 및 社會의 構成員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勤勞者가 조직의 일원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일련의 환경조성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政府가 여기서 맡아야 할 주된 역할은 勞動市場의 動向과 產業構造調整에 수반되는 人力敎育과 訓練을 통한 必要人力의 供給을 원활히 하고 기업이 保有人力을 長期化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또한 아직도 다분히 경직되어 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賃金協商의 범위와 대상을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에게는 소득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임금을 생활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基本給의 협상 부분과 자신과 동료 勤勞者의 근로노력에 따라 즉, 자신의 성과에 따른 추가적인 成果配分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협상할 수 있게 하고, 企業에게는 이를 통해 勤勞者의 企業에 대한 所屬感과 勤勞意慾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個別企業의 雇傭管理方式과 賃金體系 개선만으로는 勤勞者의 자발적 참여를 정착시키기에는 부족하며, 정부 차원에서 각종 制度的 補完策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행정기구나 조직도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우리는 앞선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는 後發 資本主義國家로서의 이점을 살려 施行錯誤를 줄이고 새로운 作業組織과 工場組織, 즉 産業民主主義型 組織을 도입하여야 한다. 産業民主主義型 조직의 도입 없이는 品質 高級化, 高附加價値의 多品種少量 生産體制의 확립, 機械類 國産化를 내용으로 하는 自立經濟基盤 확충은 성공할 수 없다.

參 考 文 獻

- 姜哲圭·崔廷杓·張志祥, 『財閥: 成長의 主役인가 貪慾의 化身인가』, 경실련 문고, 비봉출판사, 1991.
- 姜鎬珍, 『韓國의 經濟力集中: 問題點과 課題』, 國民經濟教育研究所, 1992. 4.
- 經濟企劃院,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1991. 11.
- 公正去來委員會, 『新經濟 5個年計劃 公正去來部門 報告書』, 1993.
- 金融產業發展委員會, 『金融制度 改編 研究』, 1993. 5.
- 金鍾錫, 『民主化時代의 政府役割』, 『民主化時代의 產業政策 方向』, 高麗大學校 經濟研究所, 1993.
- 朴英哲, 『世界속의 韓國經濟』, 『思想』, 사회과학원, 1992 봄.
- _____, 『2000年代를 향한 經濟의 發展戰略』, 1992.
- 朴英哲·金秉柱·朴在潤, 『金融產業發展에 관한 研究 1985~2000』, 韓國開發研究院, 1986.
- 司空壹·L.P. 존스,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연구총서 45, 韓國開發研究院, 1981.
- 三星經濟研究所, 『企業財務 側面에서의 美日 競爭力 差異의 原因 및 이의 示唆點』, 1992. 7.
- 鮮于錫浩, 『韓國企業의 競爭戰略과 企業構造 改善』, 『民主化時代의 產業政策 方向』, 1993.
- 宋丙洛, 『韓國經濟論』(제3판), 博英社, 1994.
- 劉承旻, 『우리나라 企業集團의 所有, 經營構造와 政策 對應』, 『韓國開發研究』, 제14권 1호, 1992 봄.
- 李奎億, 『經濟力集中』, 『韓國開發研究』, 제12권 1호, 韓國開發研究院, 1990 봄.
- 李奎億·李成舜,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연구보고 85-02, 韓國

- 開發研究院, 1985. 9.
- 李奎億·李在亨, 『企業集團과 經濟力集中』, 연구보고 90-04, 韓國開發研究院, 1990. 6.
- 李根植, 「金融」, 邊衡尹(編), 『韓國經濟論』(개정판), 유평출판사, 1989.
- 李丙洛, 「業種專門化의 背景과 向後 展望」, 『經濟研究』, 第一經濟研究所, 1993.
- 李愚寬, 「銀行의 監視機能과 企業 - 金融의 새로운 關係」, 『民主化時代의 產業政策 方向』, 1993.
- 林雄基, 『企業所有構造와 資本市場 發展』, KIS 연구조사보고 1988-A-05, 韓國信用評價(株), 1988. 9.
- 全國經濟人聯合會, 「與信管理制度 改編方向에 관한 意見」, 1991. 3.
- 鄭炳杰·梁英植, 『韓國財閥部門의 經濟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92. 7.
- 鄭雲燦, 『金融改革論』, 법문사, 1991.
- 趙東成, 『韓國財閥 研究』, 每日經濟新聞社, 1990.
- 趙 淳, 「韓國經濟發展 40年: 그 特性과 問題點」, 『韓國의 經濟發展: 評價와 새 構想』,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제14회 경제학 심포지엄 자료집, 1988.
- _____, 「韓國經濟의 發展戰略」, 『思想』, 사회과학원, 1992 봄.
- 陳泰弘, 『銀行의 株式所有와 企業의 資金調達』, 韓國經濟研究院 研究調查資料 81-92-12, 1992. 10.
- 韓國經濟研究院, 『經濟力集中에 관한 視角과 認識』, 1986.
- 韓國科學技術院, 『우리나라 產業政策의 새로운 패러다임』, 1993.
- 韓國信用評價(株), 「經濟力集中 무엇이 問題인가」, 『신평포럼』, 1989. 5.
- _____, 『財閥分析 報告書』, 1990.
- 韓國銀行, 「經濟力集中 問題와 對策 方向」, 『調查統計月報』, 제38

권, 1984. 9.

韓大禹, 「經濟環境 變化와 大企業의 所有, 支配構造 變貌」, 『韓銀調查月報』, 1989. 7.

韓利憲, 『公正去來制度 確立을 위한 政府政策의 方向』, 1993.

奧村宏, 『法人資本主義』, 御茶の水書房, 1983.

Attali, Jacques, *Millenium: Winners and Losers in the Coming World Order*, Random House, 1991.

Demsetz, Harold & Kenneth Lehn,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1985.

Galbraith, J.K., *The Anatomy of Power*, Himish Hamilton, 1984.

Garten, Jeffrey, *A Cold Peace: America, Japan, Germany and the Struggle for Supremacy*, A Twentieth Century Fund Book, 1992.

Headley, E.M., *Antitrust in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Jones, L.P., "Jaebul and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n Development: Issues, Evidence and Alternative," in *Macro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 Development Issues*, Edited by Il Sakong, KDI, 1987.

Krugman, Paul, *The Age of Diminished Expectations*, MIT Press, 1990(張鉉俊 譯, 『期待遞減의 時代: 1990年代의 美國經濟』, 청계연구소, 1991).

Leipziger, D. & P. Petri, "Korean Industrial Policy: Legacies of the Past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IBRD 보고서, 1992.

Morck, R., A. Schleifer & R.W. Vishny, "Management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Sept. 1988.

Porter, M. 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The Free Press, 1990.

Reich, Robert, *The Work of Nations: Preserving Ourselves for 21st Century Capitalism*, Alfred A. Knoff(ed.), New York, 1991.

Russel, B., *Power*, New York, 1938.

Schonfield, Andrew, *Modern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Thurow, Lester, *Head to Head: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92.

Vittas, Dimitri Alfred A. Knoff(ed.), *Banking Systems Abroad*, London; Inter-Bank Reaserch Organization, 1978.

Zysman, John, *Governments, Markets and Growth*,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附錄 1〉 不健全債權 管理에 대하여

1. 우리나라 銀行의 不健全債權 管理

金融機關의 자산을 去來處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거래실적 등 諸般事項을 勘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정상’, ‘要注意’, ‘고정’, ‘回收疑問’,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金融機關 經營指針 제 7 조~제 11 조). 不健全債權 관리를 위하여, 不實企業에 대하여는 기업과의 別途契約에 의거하여 직원을 상주 파견하여 資金管理·擔保管理 등 부분적인 관리 또는 企業經營에 일부 참여하거나, 기업체의 運營權을 讓受 또는 信託받아 직접 企業經營 전반에 참여하거나, 當該 企業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會社整理節次가 개시될 경우 金融機關이 當該 企業體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6개월 이상 연체된 貸出金の 경우에는 企業公사에 回收委任하여 回收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기업의 대표자·기업주 등에 대하여 出國禁止 또는 稅務調査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金融機關 與信業務 取扱指針).

또 金融機關에 대한 채무를 일정기간 동안 연체하는 기업체는 黃色去來處(要注意 去來處) 또는 赤色去來處(要警戒 去來處)로 구분하고, 金融機關에 손실을 초래케 한 기업체 및 그 기업체의 대표자나 실질적인 株主 등 특수관계인은 金融不實 去來者로 구분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정보교환대상으로 삼고 있다(金融機關의 不良去來處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재규약 등).

2. 美國 銀行의 不健全債權 管理

원리금, 원금 또는 이자의 불입금이 미납되거나 만기에 償還이 이

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은행의 回收要請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同 與信을 回收不能 債券으로 간주한다. 뉴욕 州의 경우 만기일 후 90일 이내에 回收되지 않는 여신을 不健全債權으로 간주한다.

不健全債權 管理를 위한 은행의 특정부서나 聯邦 또는 州의 기구는 없다. 다만 여신에 대한 回收不能 判定이 내리면, 미결제 원금을 貸出金 計定借邊에, 대손충당금 計定貸邊에 기재함으로써 貸損處理한다.

또한 去來處의 상태가 나빠지는 징후가 나타나면, 當該 貸出을 감찰대상으로 분류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 Loan Workout Department로 移管하여 보력강화, 기한연장, 이자지급연기, 제한적인 계약의 재체결 등 貸出金の 回收를 위한 노력을 한다. 은행의 Loan Department의 정상적인 回收努力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Legal Department나 외부 변호사에게 債權回收를 위하여 移管한다.

與信情報交換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은행을 위한 대출 및 기업의 정보를 수집, 기록하는 중앙조직은 없으나 수수료를 받고 同 業務를 수행하는 Dun & Bradstreet, Robert Morris Associates와 같은 민간사업회사 등이 있다. 이들 信用情報管理機關은 그 산하에 전국적인 地域信用調査局을 소유 또는 회원관계로 전산망을 연결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3. 獨逸 銀行의 不健全債權 管理

不健全債權 管理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사항이다. 통상 不健全債權이란 기일 도래 후 償還 또는 改善되지 아니한 貸出金 및 3개월 이상 이자연체가 발생된 貸出金을 의미하는데,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은행이 공동으로 syndicated loan 방식으로 구제금융을 追加 供與하는 것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촉진을

위한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再建을 도모한다. 그러나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은행은 不健全債權을 상각하고 債權補填에 노력한다. 부실기업 정리를 정부가 주도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는 없다.

2개월 동안의 여신취급액이 1,000,000DM 이상일 경우 이를 聯邦銀行에 보고하고, 聯邦銀行은 1,000,000DM 이상 여신정보의 집중 및 교환센터로서 전산처리된 정보내용을 해당은행에 통보해 준다. 이때 同一인이 수개 은행으로부터 借入했을 경우 관련은행에 同一인의 總借入金額 및 關聯銀行數만 통보해 주고 은행별 차입액은 비밀 보장사항으로 취급하여 따로 통보하지 않는다.

不良去來處에 대한 정보관리는 다음과 같다. 어음이나 수표가 不渡處理된 경우 그 발행인, 보증인 또는 배서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바, 이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업 협동조합에서 종합관리한다. 그 밖의 不良去來處에 대한 정보는 金融機關 自體信用調査機能에 의하여 파악한다.

民間信用調査機關으로서의 SCHUTA 등 3, 4개사의 民間信用調査 專擔會社가 있으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일은행들은 이러한 民間信用調査機關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자체 신용조사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4. 日本 銀行의 不健全債權 管理

日本の 경우 資産健全性の 분류기준은 4단계로 되어 있다. 즉 정상적인 자산을 I 분류, 신용상태불량 등으로 回收에 通常 이상의 위험이 내포된 것은 II 분류(우리나라의 '고정'에 해당),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III 분류(우리나라의 '回收疑問'에 해당), 回收不能으로 단정된 것은 IV 분류(우리나라의 '추정손

실'에 해당)로 하고 있고, 大藏省의 승인이 있으면 貨損處理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與信情報管理 실태는 다음과 같다. 8대 신용정보센터가 협의를 통해 정보를 상호교환하는데, 소비자 금융업계가 설립한 全國信用情報센터聯合會, 日本全國銀行聯合會가 설립한 個人信用情報센터, 日本크레디트産業協會가 설립한 信用情報센터 및 其他 信用情報 關聯機關이 포함된다.

〈附錄 2〉 戰後 日本의 財閥解體와 金融機關

1. 日本의 財閥解體時 金融機關에 대한 特別處分

日本의 財閥解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은행을 포함한 金融機關이 持株會社 지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持株會社는 원칙적으로 解體對象에 포함되어야 했으나, 一般商業銀行(commercial bank), 投資信託銀行(trust bank), 損害保險會社(property insurance company) 및 生命保險會社(life insurance company) 등의 金融機關들은 持株會社 指定에서 제외되어 해체를 면했다.

2次大戰 前의 재벌에서 이들 金融機關이 차지했던 비중을 고려하면, 이 같은 조치는 이후 재벌이 해체되고 다시 기업집단이 생겨나는 과정과 직접 연결되어, 戰後 日本의 經營構造와 所有構造의 발전을 규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2次大戰 前 日本의 10대재벌 중에서 상위 4대재벌(Big 4)과 나머지 6개 중소재벌(Other 6)의 가장 큰 차이점인 規模와 성장률을 결정했던 것은 바로 재벌그룹이 一般商業銀行을 소유했느냐의 與否였다.

즉, 4대재벌은 각각 一般商業銀行, 信託銀行 및 保險會社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6개 재벌 중 한 財閥만이 一般商業銀行을 소유했었고 4개 재벌이 保險會社를 보유했었으나 信託銀行은 중소재벌의 경우 보유하지 못했다.

여기서 金融機關을 保有한 財閥이 사업확장을 위한 용자를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4대재벌은 빠른 성장을 기록했고 특히 金融機關이 재벌의 한 부서였던 재벌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이 현상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Hadley는 은행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金融機關들이 持株會社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했는 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이유에 대해, (1) 美國에서는 金融機關이 산업 및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당시의 연합군사령부 실무자의 주된 견해로서, 美國의 실정과 日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점과 (2) 日本政府가 이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金融機關을 持株會社로 지정하는 데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Hadley, E. M., *Antitrust in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財閥解體 과정에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재벌계 은행들이 財閥解體가 일단락된 후, 系列融資 및 주식의 相互保有를 통해 戰後 재벌의 再編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系列融資는 戰後 계열기업의 막대한 자금수요를 메꿔주는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었고 주식의 相互保有는 戰前에 재벌의 가족 및 持株會社가 보유했던 주식들이 持株會社整理委員會(HCLC : Holding Company Dissolution Commission)를 통해 공개 분산된 후 재벌을 다시 再編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株式 相互保有는 財閥解體 前에 존재했던 金融機關의 주식을 相互保有하거나 증자시 실권주를 구입하거나 증자시 발행된 緣故主義 割當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韓國戰爭이 끝나는 1953~54년 경부터 기업집단은 다시 再編되고,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의 再建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戰後 기업집단의 구축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2. 戰後 日本의 企業集團과 金融

가. 企業集團의 一般的 特徵

戰後의 기업집단은 戰前의 재벌과 비교하여 人的 및 物的 결집력이 크게 약화된 일종의 企業聯속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즉 소유에

의한 산하기업의 통제는 戰前의 財閥에 비해 정도가 아주 낮아졌으며, 은행과 무역회사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戰前 持株會社의 重役會議과 같은 의사결정의 중심체 대신 社長會라는 비교적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멤버기업의 사장들끼리의 협의체가 형성되어 經營構造도 質的인 변화를 겪었다.

戰後 기업집단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가장 상징적인 기구가 社長會다. 여기서는 기업집단내의 공동관심사, 즉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국내외 경제상황분석 및 계열사간의 意見調整과 해외시장의 정보교환 및 신기술에 대한 의견교환, 새로운 정부규제에 대한 대책, 新事業의 共同進出 등, 이른바 기업집단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경영의 메리트를 極大化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社長會는 戰前 재벌의 持株會社 重役會議가 갖고 있던 중앙집권적인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즉 각 멤버기업들은 서로 협조는 하되 독립경영을 원칙으로 한다. 社長會의 주요 멤버기업은 金融機關, 貿易會社, 建設 및 不動產會社로 金融機關은 기업집단 내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무역회사는 기업집단간의 거래를 촉진시키고 건설 및 부동산회사는 건설과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식이다.

所有를 통한 結束關係는 戰前의 財閥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으나, 계열사 사이의 株式相互保有는 戰後 기업집단을 결속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株式相互保有는 1965년 이후 외국인 자본투자 자유화가 본격화되자 계열사가 외국인 투자가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계열사주식의 약 3분의 2가 다른 계열사에 의해 소유되었다.

이 같은 株式相互保有를 통한 결속은 戰前의 財閥 持株會社를 통한 주식소유로 계열회사를 일방적·수직적으로 통제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계열사간의 相互支配體系가 사실상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1974년을 기준으로 보면 당시 계열사주식의 66.2%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이 중 은행 및 증권회사 등 金融機關이 35.1%, 非金融멤버企業이 27.1%, 外國會社 2.4%, 投資信託 2.4%로 나누어져 있다. 이 같은 법인에 의한 교차소유를 일컬어 法人資本主義라고 부르고 있다.

社長會와 相互保有 외에 기업집단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는 동일 기업집단 내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依存, 임원의 파견을 통한 인적 결합,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의 공동출자, 공동의 상표사용 및 신규사업으로의 共同進出 등이 있다.

1974년중 동일 기업집단 내 借入依存도는 22%였는데 1981년에는 19%로 줄어들었다. 미쓰이·미쓰비시·야쓰다 등 6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임원 중 70%(1974년 현재)가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기업에서 옮겨온 사람들이다. 멤버기업들이 기업집단 내 貿易會社를 통하여 판매하거나 구입한 비율은 멤버기업들 전체 販賣·購入額의 약 30%(1975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日本企業 上場株式의 所有分布 狀況

日本에서는 2차대전후 실시된 인위적인 財閥 및 持株會社의 解體를 통하여 광범위한 株式分散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所有者別 株式分布 狀況도 企業의 比重이 1945년의 24.7%에서 1949년에는 5.6%로 크게 減少한 반면 個人的 比重은 52.0%에서 68.5%로 增加하였다. 이 중에서 10,000주 이상 소유한 巨額所有者의 比重도 48.7%에서 34.8%로 하락해 財閥家族과 持株會社의 보유株式이 分散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경제구조의 再編이 이루어지면서 企業規模의 大型化가 추구하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金融機關의 기업주식보유가 늘어나고 기타법인간의 相互出資도 증가해 기관에 의한 株式集中化가 계속 진전되었다.

〈附表 1〉 日本의 所有者別 株式分布 狀況

(單位 : %)

	1949	1970	1987
機 關	30.9	56.8	72.8
銀行·信託銀行	—	15.4	24.3
生命保險會社	9.9	11.1	13.2
損害保險會社	—	4.0	4.3
其他金融機關	—	1.8	2.8
證 券 機 關	12.6	1.2	2.5
企 業	5.6	23.1	24.9
政府·公共團體	2.8	0.2	0.8
外 國 人	—	3.1	3.6
個 人 · 其 他	69.1	40.1	23.6
合 計	100.0	100.0	100.0

- 註 : 1. 全 上場企業을 대상으로 함.
 2. 株式數 기준임.
 3. 1987년은 株式單價數기준임.

資料 : 日本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88. 12.
 東京證券去來所, 「東證要覽」, 1988.

그 결과 個人所有株式의 비중은 1949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이래로 계속 낮아져 1987년에는 23.6%에 그치고 있는 반면, 金融機關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소유의 비중은 1949년의 30.9%에서 1987년에는 72.8%로 크게 높아졌다. 金融機關의 內譯을 살펴보면 도시은행 및 信託銀行이 24.3%, 生命保險會社가 13.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을 비롯한 일반기업의 소유비중이 24.9%로서 은행과 기업이 機關株主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所有株式의 規模別 分布를 보면 점점 더 大株主의 比重이 커져왔음을 알 수 있는데 10,000주 이상 所有者의 比重이 계속 증가하여 1987년중 88.4%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00,000주 이상 所有者의 比重이 1987년중 77.2%로 엄청나게 커졌음을 알 수 있다.

〈附表 2〉 日本의 所有株式數別 株式分布 狀況

(單位：%)

	1949	1970	1987
1,000주 미만	35.5	1.4	7.7
1,000~4,999	24.2	16.9	
5,000~9,000	5.5	8.5	4.0
10,000~99,999		10.8	11.2
10,000주 이상	34.8	62.4	77.2
합 계	100.0	100.0	100.0

註：〈附表 1〉과 동일.

資料：韓大禹, 「經濟環境 變화와 大企業의 所有·支配構造 變貌」, 신은조사월보 1989. 7.

〈附表 1〉과 동일.

3. 日本 大企業의 所有 및 支配構造

가. 10大 株主로 본 現況과 特徵

10大 株主의 平均持分率은 195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1980년대 중반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持分率別 分布는 25~50%대가 꾸준히 증가하여 1987년 현재 200대 기업 중 166개사를 차지하고 있으나 50% 이상 소유한 기업의 비중은 197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持分率이 25% 미만인 企業은 持續적으로 감소하여 1987년 현재 12개사에 불과하다. 200대 기업 중 資產規模가 큰 기업일수록 金融機關의 비중이 크고 작은 企業의 境遇에는 일반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附表 3〉 日本 200大 企業 10大 株主 持分率別 分布狀況

(單位：個社)

持 分 率	1966	1976	1987
75 ~ 100 %	2	4	1
50 ~ 75 %	23	32	21
25 ~ 50 %	131	148	166
0 ~ 25 %	44	16	12
合 計 (平均指率分)	200 (35.3%)	200 (38.8%)	200 (33.7%)

註：1987년에는 10大 株主 중 일본증권결제회사를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6 個社는 9大 株主까지를 포함한 수치임.

資料：1. 三戶浩, 「日本企業의 所有構造」, 1983.

2. 東洋經濟新報社, 「企業系列總覽」, 1989.

〈附表 4〉 日本 200大 企業 10大 株主 分布狀況

(單位：%)

	1966	1976	1987
金 融 機 關	67.8	61.2	82.6
銀 行	28.1	30.1	46.0
都 市 銀 行	16.2	20.1	20.2
長 期 信 用 銀 行	3.1	3.8	5.8
信 託 銀 行	8.0	5.6	19.5
其 他	0.8	0.6	0.5
生 命 保 險 會 社	17.7	22.3	30.3
損 害 保 險 會 社	5.4	6.1	5.2
證 券 機 關	15.5	1.7	0.5
其 他 金 融 機 關	1.1	1.0	0.6
企 業	24.0	30.2	14.5
政 府 · 公 共 團 體	0.5	1.5	0.5
個 人	7.0	5.0	1.4
其 他	0.7	2.1	1.0
合 計	100.0	100.0	100.0

註：1. 〈附表 3〉과 동일.

2. 持分率 基準임.

資料：〈附表 3〉과 동일.

1966~76년 기간에는 1950년대 전반 증권공황의 수습책으로 생겨난 증권동결기관인 日本共同證券 및 日本證券保有組合이 보유한 주식이 완전히 처분됨에 따라 증권회사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信託銀行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1976~87년 기간 동안에는 信託銀行의 비중이 5.6%에서 19.5%로, 生命保險會社의 비중이 22.3%에서 30.3%로, 장기신용은행의 비중이 3.8%에서 5.8%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중 30.2%에서 14.6%로 크게 감소했고 개인의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持續적으로 減少해 왔다.

나. 第1株主의 現況과 特徵

第1株主의 平均持分率은 1956~76년 동안에는 8.1%에서 11.4%로 계속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87년에는 7.5%로 減少하는 趨勢로 反轉되었다. 이는 10대 株主의 平均持分率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것이라고 유추가 가능하다.

〈附表 5〉 日本 200大 企業의 第1位 株主 分布狀況

(單位：個社)

	1966	1976	1987
金 融 機 關	133	126	128
銀 行	38	65	54
都 市 銀 行	27	51	25
長 期 信 用 銀 行	8	9	3
信 託 銀 行	1	4	26
其 他	2	1	—
生 命 保 險 會 社	39	57	68
損 害 保 險 會 社	7	3	6
證 券 機 關	48	—	—
其 他 金 融 機 關	1	1	—
企 業	51	52	59
政 府 · 公 共 團 體	4	6	5
個 人	9	13	7
其 他	3	3	1
合 計	200	200	200

資料：〈附表 3〉과 동일.

第1株主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기관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쉽게 드러난다. 즉 1987년중 都市銀行이 第1株主인 경우가 200대 기업 중 25개사, 信託銀行 26개사, 生命保險會社 68개사, 一般企業이 59개사로 기관이 第1株主인 경우가 200대 기업 중 178개사로 89%라는 놀라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個人이 第1株主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이 비제조업이거나 기업의 역사가 짧은 경우로 1987년 현재 7개사로 全體의 3.5%에 不過하다.

結論的으로 1950년대 이후 다시 시작된 株式集中化 과정에서 個人大株主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持分이 분산되어 온 반면 機關株主의 경우에는 오히려 持分의 집중이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 最大株主의 現況과 特徵

最大株主란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金融機關, 기업 및 개인 등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株主로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간주하고, 이들의 持分率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附表 6) 日本 200大 企業의 最大株主 持分率別 分布狀況

(單位: 個社, %)

持 分 率	1956	1966	1976
完 全 所 有(100%)	—	—	—
過半數所有(50% 以上)	5(2.5)	9(4.5)	10(5.0)
少數所有(10 ~ 50%)	52(26.0)	96(48.0)	140(70.0)
10% 未滿 所有	143(71.5)	95(47.5)	50(25.0)
合 計	200(100.0)	200(100.0)	200(100.0)

註: 1. 10大 株主의 協調關係를 고려하여 同一企業集團 또는 親族의 所有比率을 합산함.

2. () 안은 構成比임.

資料: 三戶浩, 「日本大企業의 所有構造」.

가장 큰 特徵은 최대지주의 持分率이 10% 미만으로 사실상 지배적 소유자가 없는 형태의 기업은 1956년의 143개사에서 1976년에는 50개사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한편 과반수 이상 소유하여 實

質的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한 형태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이 증가한 형태는 10% 이상 50% 미만으로 52개사에서 140개사로 증가했다.

所有主體別 最大株主 現況을 보면 複數法人에 의한 소유가 1956년에 전체의 16.0%에서 1976년에는 48.5%에 달하는 97개사로 급격히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財閥解體가 이루어지기 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親族과 關聯會社에 의한 소유지배 형태의 기업은 財閥解體措置에 따라 급격히 減少했다가 1960년대 이후 조금씩 增加하여 1976년에는 200대 기업 중 22개사로 늘어났다.

〈附表 7〉 日本 200大 企業의 最大株主 主體別 分布推移

(單位：個社，%)

最大株主	1956	1966	1976
親族	15(7.5)	19(9.5)	22(11.0)
單一法人	10(5.0)	25(12.5)	24(12.0)
複數法人	32(16.0)	57(28.5)	97(48.5)
公共機關·其他	—(—)	4(2.0)	7(3.5)
支配的所有者無	143(71.5)	95(47.5)	50(25.0)
合計	200(100.0)	200(100.0)	200(100.0)

註：1. 10大 株主의 協調關係를 고려하여 同一企業集團 또는 親族의 所有比率를 합산함.

2. () 안은 構成比임.

3. 支配的所有者無는 最大株主의 지분율이 10% 미만임.

資料：〈附表 6〉과 동일.

親族 및 關聯會社에 의한 지배가 늘어난 기업은 급성장한 기업이 대부분으로 건설업이 8개사, 상업이 7개사 등으로 非製造業이 중심이다.

라. 所有 및 支配構造의 一般的인 特徵

戰後 日本 大企業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進化過程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特徵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所有分散이 進行됨과 동시에 機關의 所有集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株式

集中化라고 부를 수 있는데 戰前과는 달리 金融機關을 중심으로 機關이 기업의 最大所有主로 등장한 사실이 특징적이다.

企業集團에 속하는 企業의 경우에는 점차 동일집단에 속하는 金融機關 및 기업이 複數로 나타나고 이들이 지배적 소유자로 발전했다. 公共的 性格이 강한 기업이나 거대기업의 경우에는 機關保有株式의 所有增大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소유자가 없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경영자가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株式保有의 目的이 기업지배에 있지 않고 相互安定株主의 확보를 통한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에 있었다. 複數法人을 중심으로 기관이 기업의 最大株主가 되는 경향이 진전된 것은 주로 國內의 他資本間은 물론이고, 자본자유화 이후 외국자본의 기업주식매수에 의한 企業經營權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企業集團에 속하는 기업은 주로 동일 기업집단 내 기업간의 相互出資를 통하여 이들을 安定株主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과 公共的 性格이 강한 기업 등은 生命保險會社, 長期信用銀行 또는 中立性이 강한 獨立大企業을 安定株主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親族所有 및 單一法人所有 形態에서는 所有가 곧 지배지만 상호소유 형태인 複數法人 所有에서는 所有가 단순히 지배를 의미할 수가 없다. 기관의 주식소유 증대로 종래와 같은 親族에 의한 所有集中과 이에 입각한 광범위한 경영지배가 排除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내에 낮은 수준의 폭넓은 相互出資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持株會社와 같은 강력한 지배기구도 존재하지 않으며 社長會도 개별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에 깊숙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

日本の 6대 기업집단에 있어 社長會에 속해 있는 개별기업의 他法人에 대한 平均持分率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간의 支配從屬 關係를 찾아보기 어렵다. 동시에 社長會도 기업집단 전체의 집단적인 경영을 위한 기구로 기능하지 않는다.

企業集團 內 系列融資에 있어서도 동일집단 내 金融機關에 대한

借入金 依存率이 6대 기업집단의 경우 1975년의 22.9%에서 1987년에는 19.1%로 감소하고 있어 동일집단 내의 金融機關과 기업간의 용자면에서의 結合度도 낮아지고 있고 金融機關間의 借入金 依存率이 平準化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銀行 및 生命保險會社 등의 金融機關이 大株主로 등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소유주와 피소유주간의 협조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즉 被所有企業은 상호협조관계하에 소유자지배의 가능성이 없는 이들 기관을 安定的인 大株主로 확보하여 기업의 독립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所有主體가 創業者 및 親族에서 株式分散에 의한 지배적 소유자 상실을 통해 기관으로 진화한 데 상응하여, 經營者도 親族에서 관공서 및 기업의 출신으로, 다시 機關株主 出身으로, 마지막으로 社内 出身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附表 8〉 日本 200大 企業 所有主體와 經營者 出身 構成(1976年)

(單位: 個社, %)

所有	經營	親族 出身	官公署 出身	關聯會社 出身	機關株主 出身	社内 出身	合計
親族	族	19 (86.4)	—	—	—	3 (13.6)	22 (100.0)
單一法人		3 (12.5)	1 (4.2)	—	10 (41.7)	10 (41.7)	24 (100.0)
複數法人		12 (12.4)	4 (4.1)	2 (2.0)	18 (18.6)	61 (61.9)	97 (100.0)
公共機關		—	3 (42.9)	—	—	4 (57.1)	7 (100.0)
支配的所有者無		10 (20.0)	2 (4.0)	—	5 (10.0)	33 (66.0)	50 (100.0)
合計		44 (22.0)	10 (5.0)	2 (1.0)	33 (16.5)	111 (55.5)	200 (100.0)

註: 1. 10大 株主의 協調關係를 고려하여 同一企業集團 또는 親族의 所有比率를 합산함.

2. () 안은 構成比임.

資料: 〈附表 6〉과 同一.